

05-10-57

中國의 對臺灣 政策 史料集  
(1979~2000)



통 일 부



## 일 러 두 기

이 사료집은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각종 정책·성명·제의 뿐만 아니라 兩岸間 교류·협력 관련 규정·법률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록체계는 총 83건의 문건을 주요 정책·성명, 출입국·세관, 교통·통신, 언론·문화, 경제일반, 지적 소유권, 사법일반, 치안·군사,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실었으며, 기본 목차 외에 「분야별 내용체계」와 「시기별 내용체계」 목차를 별도로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중국과 대만의 黨·政·연구소·사회단체 등의 통일관련 기구 및 단체와 1911-2000년 기간중 중국·대만 간 주요 사건 일지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年表를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양안 간의 교류·협력은 1979년 중국의 「三通」(通郵·通航·通商) 제의로부터 비롯되어 1987년 대만의 대륙방문 허용 조치를 계기로 하여 이후 양적·질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교류·협력 제의에 있어서 ① 1979년 개혁·개방정책 표방과 對美 국교수립 이후 선언적·공세적 차원, ② 1987년 대만의 대륙방문 일부 허용 이후 實事求是의 차원, ③ 1993년 양안간 최초의 당국자 회담인 「汪辜會談」 이후 실무적 차원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관련 문건도 이 3개시기에 걸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료집은 이러한 양안간의 교류·협력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黨·政 등 관계기관이 제기한 각종 문건을 國務院公報·人民日報·新華通迅 등 관련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발췌·정리·번역한 것으로 중국 양안 발전과정 연구에는 물론 남북한간 제반 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 정책 수립에도 참고자료로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史料集이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실천적 구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0월

통 일 부  
정 보 분 석 국





# 차 례

분야별 내용체계	vi
시기별 내용체계	xi

## I. 주요 정책 및 성명

□ 대만동포에게고함 (全國人大 常委會: 1979.1.1)	3
□ 대륙거주대만동포에대한정책지시 (中共 中央: 1981.9.28)	8
□ 조국평화통일실현방침에관한정책 (全國人大 常委會: 1981.9.30)	13
□ 대만이주대륙친척에관한정책통지 (中共 中央: 1981.11.26)	16
□ 장경국국민당주석에게보내는편지 (全國人大 常委會: 1982.7.24)	18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2.12.4)	22
□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을환영하는담화 (國務院: 1987.10.14)	24
□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발표관련담화 (臺盟,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1987.10.17)	26
□ 장경국국민당주석서거관련담화 (中共 中央 總書記: 1988.1.14)	28
□ 장경국서거관련국민당에보내는조건 (中共 中央: 1988.1.14)	30
□ 장경국서거관련장경국부인에게보내는조건 (中國國民黨 革命委員會: 1988.1.14)	31
□ 대만당국의대륙거주대만동포귀향허용관련담화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1988.6.29)	32
□ 중국양안관계와평화통일문제에관한담화 (中共 中央 臺灣工作辦公室: 1991.6.7)	34
□ 양안간연락및회담제도에관한합의 (海峽兩岸關係協會 / 海峽交流基金會: 1993.4.29)	38
□ 왕고회담공동합의 (海協會長 / 海基會會長: 1993.4.29)	41
□ 대만문제와중국의통일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新聞辦公室: 1993.8.31)	43
□ 조국통일대업의완성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분투하자 (中共 中央 總書記: 1995.1.30)	67
□ 조국통일대업완성은전체중국인민의공동염원이다 (國務院 總理: 1996.1.30)	75
□ 하나의중국원칙과대만문제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新聞辦公室: 2000.2.21)	82

---

## II. 출입국 · 세관

---

<input type="checkbox"/> 대만적십자회와의합작에관한건의 (中國紅十字會: 1981.10.2)	107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여행접대방법에관한통지 (國務院 辦公廳: 1987.10.16)	109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표시관련담화 (中國旅行社: 1987.10.19)	111
<input type="checkbox"/> 대륙방문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구체방법 (香港中國旅行社: 1987.10.21)	113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휴대물품완화에관한규정 (海關總署: 1987.10.23)	117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관련신규방법 (公安部 出入境管理局: 1987.10.26)	119
<input type="checkbox"/>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에대한접대업무 (國家旅游局: 1987.11.2)	121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출입경수화물품에관한관리규정 (海關總署: 1987.11.3)	122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친척방문에관한협조제공 (中國紅十字會: 1987.11.5)	126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교류중제기되는몇가지문제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89.9.15)	127
<input type="checkbox"/>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 (國務院: 1991.12.17)	131

---

## III. 교통 · 통신

---

<input type="checkbox"/> 대륙과대만간해운업무의회복발전에관한제의 (交通部: 1979. 8.18)	143
<input type="checkbox"/> 대만체신당국과의통우 · 통전협상에관한제의 (郵電部: 1980.1.24)	146
<input type="checkbox"/> 대만해협양안항로개설에관한3개항결정 (中國民航總局: 1981.10.2)	147
<input type="checkbox"/> 대만과의통항준비에관한5개항결정 (交通部: 1981.10.3)	149
<input type="checkbox"/> 대만과의통우 · 통전에관한6개항결정 (郵電部: 1981.10.7)	151
<input type="checkbox"/> 대만해양부문과의정상연락체계수립에관한6개항결정 (國家海洋局: 1981.10.16)	153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체신·통신이용문제에관한규정 (郵電部: 1987.12.2)	155
<input type="checkbox"/> 대만의「양안직항문제와진망설명서」발표관련담화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92.9.23)	157
<input type="checkbox"/> 양안등기우편물조회·보상사무에관한합의 (海協, 中國通信學會郵政專業委員會 / 海基會: 1993.4.29)	160
<input type="checkbox"/>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 (交通部: 1996.8.19)	163
<input type="checkbox"/>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관한방법 (對外貿易經濟合作部: 1996.8.21)	166

---

#### IV. 언론·문화

---

<input type="checkbox"/> 대만올림픽위원회주석에게보내는편지 (中國奧委會: 1979.11.27)	173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문화예술교류에관한6개항결정 (文化部: 1981.10.22)	175
<input type="checkbox"/> 대만과학기술부문에제기한6개항건의 (中國科學技術協會: 1981.10.28)	177
<input type="checkbox"/> 대만학술계와정상연계수립에관한제의 (中國科學院: 1981.11.23)	178
<input type="checkbox"/>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1987.11.1)	180
<input type="checkbox"/> 대만당국의미국유학대륙학자·학생초청환영성명 (中國留美學者學生聯誼會聯合會: 1988.3.19)	182
<input type="checkbox"/> 대만기자의대륙취재시주의사항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89.9.15)	184
<input type="checkbox"/>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96.12.1)	187

---

#### V. 경제 일반

---

<input type="checkbox"/> 대륙과대만간통상촉진에관한4개항건의 (對外經濟貿易部: 1981.10.6)	193
<input type="checkbox"/> 대만금융·보험계에대한건의 (中國人民銀行, 中國銀行: 1981.10.10)	195
<input type="checkbox"/> 대만과수산산업을공동발전시킬데관한4개항결정 (國家水產總局: 1981.10.20)	197
<input type="checkbox"/>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의보험에관한규정 (中國人民保險公司: 1987.10)	199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에대한외화태환서비스제공관련통지 (中國銀行: 1987.11.4)	201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휴대외화사용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國家外匯管理局: 1987.12.30)	202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 (國務院: 1988.7.3)	205
<input type="checkbox"/> 대만투자자대우문제에관한담화 (對外經濟貿易部: 1989.1.23)	210
<input type="checkbox"/> 양안경제·무역교류촉진에관한5개항원칙 (對外經濟貿易部: 1991.7.2)	212
<input type="checkbox"/>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 (全國人大 常委會: 1994.3.5)	216

---

## VI. 지적 소유권

---

<input type="checkbox"/> 홍콩·마카오·대만작가의원고료청산에관한통지 (國家版權局: 1987.11.16)	221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작품판권문제에관한잠정규정 (國家版權局: 1987.12.26)	222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대륙방문특허신청에관한규정 (中國專利局: 1988.1.8)	223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작품판권보호에관한규정 (國家版權局: 1988.4.20)	225
<input type="checkbox"/> 대륙과대만·홍콩·마카오판권무역계약심의방법에관한통지 (國家版權局: 1988.11.2)	228
<input type="checkbox"/> 대만·홍콩·마카오작품출판및도서복사에관한규정 (國家新聞出版署: 1988.11.21)	229
<input type="checkbox"/> 대만·홍콩·마카오작가의도서검증계약심의등기번호제시에관한통지 (國家新聞出版署, 國家版權局: 1989.2.17)	231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제조업자등록상표동등대우에관한정책 (國家工商局: 1989.2.22)	232

---

## VII. 사법 일반

---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법률서비스업무제공에관한몇가지규정 (司法部: 1987.11.5)	237
<input type="checkbox"/> 대만이주자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전범죄행위불추소에관한공고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1988.3.14)	238

<input type="checkbox"/> 대만이주자와대륙잔류배우자간의혼인관계문제처리의견에관한통지 (民政部, 司法部: 1988.6)	239
<input type="checkbox"/> 양안혼인문제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民政部: 1988.6)	241
<input type="checkbox"/> 대만관련민사안건처리에관한몇가지법률문제 (最高人民法院: 1988.8.6)	245
<input type="checkbox"/> 대만이주자의역사적범행불추소에관한공고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1989.9.9)	248
<input type="checkbox"/>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 (海協, 中國公證員協會 / 海基會: 1993.4.29)	251
<input type="checkbox"/>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中國公證員協會: 1993.5.29)	254

---

## VIII. 치안 · 군사

---

<input type="checkbox"/> 대금문 · 소금문등도서포격정지에관한성명 (國防部: 1979.1.1)	261
<input type="checkbox"/> 대만및금문마조제도선전물살포정지에관한결정 (中國人民解放軍: 1986.3.21)	263
<input type="checkbox"/> 대만동포의대륙방문후안전등문제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公安部: 1988.3.17)	264
<input type="checkbox"/> 1962년2개「통지」의집행정지에관한공고 (中國人民解放軍 駐福建部隊: 1988.9.11)	265

---

## IX. 기 타

---

<input type="checkbox"/> 대만과의기상연계수립에관한결정 (中央氣象局: 1981.10.2)	269
<input type="checkbox"/> 대만의료관계당국과의합작에관한4개항결정 (國家醫藥管理總局: 1981.10.5)	271
<input type="checkbox"/> 대만각계노동자의대륙방문을환영하는공개장 (中華全國總工會: 1981.10.12)	272
<input type="checkbox"/> 화교및홍콩 · 마카오 · 대만동포의기증물자관리감독방법 (海關總署: 1989.12.26)	274
부 록 : ◆ 중국 · 대만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277
◆ 중국 · 대만 관계 연표(1911~2000년)	301

## 분야별 내용체계

### I. 주요 정책 및 성명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헌법	중화인민공화국헌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2. 12.4
성명·담화	대만동포에게고함	진국인대 상위회	1979. 1. 1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을 환영하는담화	國務院	1987.10.14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발표관련담화	臺盟, 中華全國臺灣同胞 聯誼會	1987.10.17
	장경국국민당주석서거관련담화	中共 中央 總書記	1988. 1.14
	대만당국의대륙거주대만동포귀향허용관련담화	中華全國臺灣同胞 聯誼會	1988. 6.29
	중국양안관계와평화통일문제에관한담화	中共 中央 臺灣工作辦公室	1991. 6. 7
연설	조국통일대업의완성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분투하자	中共 中央 總書記	1995. 1.30
	조국통일대업완성은전체중국인민의공동업원이다	國務院 總理	1996. 1.30
정책	대륙거주대만동포에대한정책지시	中共 中央	1981. 9.28
	조국평화통일실현방침에관한정책	全國人大 常委會	1981. 9.30
	대만이주대륙친척에관한정책통지	中共 中央	1981.11.26
	대만문제와중국의통일(통일백서)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新聞辦公室	1993. 8.31
	하나의중국원칙과대만문제(통일백서)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新聞辦公室	2000. 2.21
회담	양안간연락및회담제도에관한합의	海峽兩岸關係協會 / 海峽交流基金會	1993. 4.29
	왕고회담공동합의	海協會長 / 海基會會長	1993. 4.29
편지·전보	장경국국민당주석에게보내는편지	全國人大 常委會	1982. 7.24
	장경국서거관련국민당에보내는조건	中共 中央	1988. 1.14
	장경국서거관련장경국부인에게보내는조건	中國國民黨 革命委員會	1988. 1.14

## II. 출입국 · 세관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출입경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여행접대방법에관한 통지	國務院 辦公廳	1987.10.16
	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표시관련담화	中國旅行社	1987.10.19
	대륙방문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구체방법	香港中國旅行社	1987.10.21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관련신규방법	公安部 出入境管理局	1987.10.26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에대한접대업무	國家旅游局	1987. 11.2
	해협양안교류증제가되는몇가지문제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89. 9.15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	國務院	1991.12.17
세관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휴대물품완화에관한 규정	海關總署	1987.10.23
	대만동포의출입경수화물품에관한관리규정	海關總署	1987. 11.3
적십자	대만적십자회와의합작에관한건의	中國紅十字會	1981. 10.2
	대만동포의친척방문에관한협조제공	中國紅十字會	1987. 11.5

## III. 교통 · 통신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교통	대만해협양안항로개설에관한3개항결정	中國民航總局	1981. 10.2
	대만과의통항준비에관한5개항결정	交通部	1981. 10.3
	대만해방부문의정상연락체계수립에관한6개 항결정	國家海洋局	1981.10.16
	대만의「양안직항문제와전망설명서」발표관련 담화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92. 9.23
수송	대륙과대만간해운업무의회복발전에관한건의	交通部	1979. 8.18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	交通部	1996. 8.19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관한방법	對外貿易經濟合作 部	1996. 8.21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통신	대만체신당국과의통우·통전협상에관한제의	郵電部	1980. 1.24
	대만과의통우·통전에관한6개항결정	郵電部	1981. 10.7
	대만동포의체신·통신이용문제에관한규정	郵電部	1987. 12.2
	양안등기우편물조회·보상사무에관한합의	海協, 中國通信學會郵政 專業委員會 / 海基會	1993. 4.29

#### IV. 언론·문화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언론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1987. 11.1
	대만기자의대륙취재시주의사항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89. 9.15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1996. 12.1
문화·체육	해협양안문화예술교류에관한6개항결정	文化部	1981.10.22
	대만올림픽위원회주석에게보내는편지	中國奧委會	1979.11.27
교육·학술	대만과학기술부문에제기한6개항건의	中國科學技術協會	1981.10.28
	대만학술계와정상연계수립에관한제의	中國科學院	1981.11.23
	대만당국의미국유학대륙학자·학생초청환영성명	中國留美學者學生 聯誼會聯合會	1988. 3.19

#### V. 경제 일반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투자	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	國務院	1988. 7. 3
	대만투자자대우문제에관한담화	對外經濟貿易部	1989. 1.23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	全國人大 常委會	1994. 3. 5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무역	대륙과대만간통상촉진에관한4개항건의	對外經濟貿易部	1981. 10.6
	양안경제·무역교류촉진에관한5개항원칙	對外經濟貿易部	1991. 7. 2
금융·보험	대만금융·보험계에대한건의	中國人民銀行, 中國銀行	1981.10.10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의보험에관한규정	中國人民保險公司	1987. 10
외환	대만동포에대한외태환서비스제공관련통지	中國銀行	1987. 11.4
	대만동포의휴대외화사용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國家外匯管理局	1987.12.30
수산	대만과수산산업공동발전시킬데관한4개항결정	國家水產總局	1981.10.20

## VI. 지적 소유권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판권	홍콩·마카오·대만작가의원고료청산에관한통지	國家版權局	1987.11.16
	대만동포의작품판권문제에관한잠정규정	國家版權局	1987.12.26
	대만동포의작품판권보호에관한규정	國家版權局	1988. 4.20
	대륙과대만·홍콩·마카오판권무역계약심의방법에관한통지	國家版權局	1988. 11.2
검열	대만·홍콩·마카오작품출판및도서복사에관한규정	國家新聞出版署	1988.11.21
	대만·홍콩·마카오작가의도서검증계약심의등기번호제시에관한통지	國家新聞出版署, 國家版權局	1989. 2.17
특허·상표	대만동포의대륙방문특허신청에관한규정	中國專利局	1988. 1. 8
	해협양안제조업자등록상표동등대우에관한정책	國家工商局	1989. 2.22

## VII. 사법 일반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사법	대만동포법률서비스업무제공에관한몇가지규정	司法府	1987. 11.5
	대만이주자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전범죄행위불추소에관한공고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1988. 3.14
	대만관련민사안전처리에관한몇가지법률문제	最高人民法院	1988. 8. 6
	대만이주자의역사적법행불추소에관한공고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1989. 9. 9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혼인	대만이주자와대륙잔류배우자간의혼인관계문제처리의견에관한통지	民政部, 司法部	1988. 6
	양안혼인문제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民政部	1988. 6
공증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	海協, 中國公證員協會 / 海基會	1993. 4.29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中國公證員協會	1993. 5.29

### VIII. 치안 · 군사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치안	대만동포의대륙방문후안전등문제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公安部	1988. 3.17
군사	대금문 · 소금문등도서포격정지에관한성명	國防部	1979. 1. 1
	대만땃금문마조제도선전물살포정지에관한결정	中國人民解放軍	1986. 3.21
	1962년2개「통지」의집행정지에관한공고	中國人民解放軍 駐福建部隊	1988. 9.11

### IX. 기 타

분야	관련문건	발표기관	일자
기상	대만과의기상연계수립에관한결정	中央氣象局	1981. 10.2
의료	대만의료관계당국과의합작에관한4개항결정	國家醫藥管理總局	1981. 10.5
노동	대만각계노동자의대륙방문을환영하는공개장	中華全國總工會	1981.10.12
기증	화교및홍콩 · 마카오 · 대만동포의기증물자관리감독방법	海關總署	1989.12.26

## 시기별 내용체계

### I. 1979년 1월 1일 중국의 「대만동포에게 고향」 발표 이후

발표기관	관련문건	일자
全國人大 常委會	대만동포에게고함	1979. 1. 1
國防部	대금문·소금문등도서포격정지에관한성명	1979. 1. 1
交通部	대륙과대만간해운업무의회복발전에관한제의	1979. 8.18
中國奧委會	대만올림픽위원회회주석에게보내는편지	1979.11.27
郵電部	대만체신당국과의통우·통전협상에관한제의	1980. 1.24
中共 中央	대륙거주대만동포에대한정책지시	1981. 9.28
全國人大 常委會	조국평화통일실현방침에관한정책	1981. 9.30
中國民航總局	대만해협양안항로개설에관한3개항결정	1981. 10.2
中國紅十字會	대만적십자회와의합작에관한건의	1981. 10.2
中央氣象局	대만과의기상연계수립에관한결정	1981. 10.2
交通部	대만과의통항준비에관한5개항결정	1981. 10.3
國家醫藥管理總局	대만의료관계당국과의합작에관한4개항결정	1981. 10.5
對外經濟貿易部	대륙과대만간통상촉진에관한4개항건의	1981. 10.6
郵電部	대만과의통우·통전에관한6개항결정	1981. 10.7
中國人民銀行, 中國銀行	대만금융·보험계에대한건의	1981.10.10
中華全國總工會	대만각계노동자의대륙방문을환영하는공개장	1981.10.12
國家海洋局	대만해양부문과의정상연락체계수립에관한6개항결정	1981.10.16
國家水產總局	대만과수산업공동발전시킬데관한4개항결정	1981.10.20
文化部	해협양안문화예술교류에관한6개항결정	1981.10.22
中國科學技術協會	대만과학기술부문에제기한6개항건의	1981.10.28
中國科學院	대만학술계와정상연계수립에관한제의	1981.11.23
中共 中央	대만이주대륙친척에관한정책통지	1981.11.26
全國人大 常委會	장경국국민당주석에게보내는편지	1982. 7.24
全國人民代表大會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82. 12.4
中國人民解放軍	대만및금문마조제도선전물살포정지에관한결정	1986. 3.21

II. 1987년 10월 14일 대만의 「대만주민 대륙 친척방문 허용」 발표 이후

발표기관	관련문건	일자
國務院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을환영하는담화	1987.10.14
國務院 辦公廳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여행접대방법에관한통지	1987.10.16
臺盟, 中華全國臺灣同胞 聯誼會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발표관련담화	1987.10.17
中國旅行社	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표시관련담화	1987.10.19
香港中國旅行社	대륙방문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구체방법	1987.10.21
中國人民保險公司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의보험에관한규정	1987. 10
海關總署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휴대물품완화에관한규정	1987.10.23
公安部 出入境管理局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관련신규방법	1987.10.26
中華全國新聞工作 者協會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1987. 11.1
國家旅游局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에대한접대업무	1987. 11.2
海關總署	대만동포의출입경수화물품에관한관리규정	1987. 11.3
中國銀行	대만동포에대한외화태환서비스제공관련통지	1987. 11.4
司法部	대만동포법률서비스업무제공에관한몇가지규정	1987. 11.5
中國紅十字會	대만동포의친척방문에관한협조제공	1987. 11.5
國家版權局	홍콩·마카오·대만작가의원고료청산에관한통지	1987.11.16
郵電部	대만동포의체신·통신이용문제에관한규정	1987. 12.2
國家版權局	대만동포의작품판권문제에관한잠정규정	1987.12.26
國家外匯管理局	대만동포의휴대외화사용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1987.12.30
中國專利局	대만동포의대륙방문특허신청에관한규정	1988. 1. 8
中共 中央 總書記	장경국국민당주석서거관련담화	1988. 1.14
中共 中央	장경국서거관련국민당에보내는조진	1988. 1.14
中國國民黨 革命委員會	장경국서거관련장경국부인에게보내는조진	1988. 1.14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대만이주자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전범죄행위불추소에관한 공고	1988. 3.14

발표기관	관련문건	일자
公安部	대만동포의대륙방문후안전등문제에관한기자질문에답변	1988. 3.17
中國留美學者學生 聯誼會聯合會	대만당국의미국유학대륙학자·학생초청환영성명	1988. 3.19
國家版權局	대만동포의작품판권보호에관한규정	1988. 4.20
中華全國臺灣同胞 聯誼會	대만당국의대륙거주대만동포귀향허용관련담화	1988. 6.29
民政部, 司法部	대만이주자와대륙잔류배우자간의혼인관계문제처리 의견에 관한통지	1988. 6
民政部	양안혼인문제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1988. 6
國務院	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	1988. 7. 3
最高人民法院	대만관련민사안전처리에관한몇가지법률문제	1988. 8. 6
中國人民解放軍 駐福建部隊	1962년2개「통지」의집행정지에관한공고	1988. 9.11
國家版權局	대륙과대만·홍콩·마카오판권무역계약심의방법에관한통지	1988. 11.2
國家新聞出版署	대만·홍콩·마카오작품출판및도서복사에관한규정	1988.11.21
對外經濟貿易部	대만투자자대우문제에관한담화	1989. 1.23
國家新聞出版署, 國家版權局	대만·홍콩·마카오작가의도서검증계약심의등기번호제시 에관한통지	1989. 2.17
國家工商局	해협양안제조업자등록상표동등대우에관한정책	1989. 2.22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대만이주자의역사적범행불추소에관한공고	1989. 9. 9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해협양안교류증대되는몇가지문제	1989. 9.15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대만기자의대륙취재시주의사항	1989. 9.15
海關總署	화교및홍콩·마카오·대만동포의기증물자관리감독방법	1989.12.26
中共 中央 臺灣工作辦公室	중국양안관계와평화통일문제에관한담화	1991. 6. 7
對外經濟貿易部	양안경제·무역교류촉진에관한5개항원칙	1991. 7. 2
國務院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	1991.12.17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대만의「양안직항문제와전망설명서」발표관련담화	1992. 9.23

### Ⅲ. 1993년 4월 27일 싱가포르 「汪辜會談」 개최 이후

발표기관	관련문건	일자
海協, 中國通信學會郵政 專業委員會 / 海基會	양안등기우편물조회·보상사무에관한합의	1993. 4.29
海協, 中國公證員協會 / 海基會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	1993. 4.29
海峽兩岸關係協會 / 海峽交流基金會	양안간연락및회담제도에관한합의	1993. 4.29
海協會長 / 海基會會長	왕고회담공동합의	1993. 4.29
中國公證員協會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관련기자질문에대 한답변	1993. 5.29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新聞辦公室	대만문제와중국의통일(통일백서)	1993. 8.31
全國人大 常委會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	1994. 3. 5
中共 中央 總書記	조국통일대업의완성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분투하자	1995. 1.30
國務院 總理	조국통일대업완성은전체중국인민의공동업원이다	1996. 1.30
交通部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	1996. 8.19
對外貿易經濟合作 部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관한방법	1996. 8.21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1996. 12.1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新聞辦公室	하나의중국원칙과대만문제(통일백서)	2000. 2.21

---

## I. 주요 정책 및 성명

---





# 대만동포에게고함

## 告臺灣同胞書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1979년 1월 1일

친애하는 대만동포 여러분!

오늘은 1979년도 새해 아침입니다. 우리는 조국대륙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대표하여 동포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문안과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명절 때일수록 혈육이 그리워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는 더욱 우리의 혈육들인 대만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도 조국과 대륙의 혈육들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불행하게 분리되어 나간 후부터 우리들은 소식이 끊어지고 내왕이 단절되었으며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혈육들이 상봉할 수 없어 민족과 국가와 인민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동포들과 전 세계의 중국인들은 모두 다 이런 가슴 아픈 상태를 하루빨리 끝마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중화민족은 위대한 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문명과 인류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였는데,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옛날부터 중국의 不可分の 한 부분이었습니다. 중화민족은 강대한 생명력과 응집력을 갖고 있

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여러번 타민족의 침입과 내부 분쟁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을 장구하게 분열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근 30년간의 대만과 조국의 분단은 인위적인 것이고, 우리 민족의 이익과 염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은 대만에서 살든지, 대륙에서 살든지 간에 누구나 중화민족의 생존·발전과 번영에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 민족의 전도에 관계되는 조국통일이라는 이 중대한 과업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분단된 국면을 하루빨리 종결짓지 못하고 조속히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선조들을 대하고 자손 후대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마음이 같을 진데 黃帝의 자손이라면 그 누가 민족의 천고 죄인으로 되려 하겠습니까?

근 30년래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지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국제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각국 인민들과 정부들에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날로 강대해지고 있는 조국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루빨리 지금의 분단상태를 종결짓고 힘을 합친다면 인류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대만동포들을 포함한 중국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과 국가들의 공동의 희망입니다.

오늘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인심의 흐름이고 대

세의 방향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하나의 중국만을 승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일 평화친선조약이 체결되고 중·미 국가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조류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금 조국의 안정과 단결된 형세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지금 대륙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4개 현대화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이 조속히 조국에 귀환하여 건국 위업을 공동으로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영도자들은 반드시 현실적 실정을 감안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것이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만의 현 상태와 대만 각 계층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정책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만 인민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대만의 각 계층 인사들도 고향과 고국에 대한 그리운 정과 동질감, 귀환의 염원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통일에 유리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민족의 염원을 거역하고 역사적 조류를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700만 대만 인민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며 대만 당국에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대만당국은 일관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왔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의 입장이고 협력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나라를 사랑하며, 한 집안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조국통일에서는 누구나 책임이 있습니다. 대만당국이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귀중한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정부는 이미 오늘부터 금문 등 도서에 대한 포격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인민해방군에 하달하였습니다. 지금 대만해협에서 여전히 쌍방이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처하여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만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군사대치 상태를 끝마침으로써 쌍방이 어느 한 범위에서 거래하고 접촉하는데 필요한 전제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장기간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륙과 대만의 동포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쌍방에 각종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사는 많은 교포들이 귀국하여 관광하고,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척에 있는 대륙과 대만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울타리를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쌍방이 조속히 通航·通郵를 실현함으로써 쌍방 동포들이 직접 접촉하고 소식을 전하고 혈육과 친구들을 만나고 관광하고 학술·문화·체육·기술공정 견학을 진행하도록 할 것을 희망합니다.

대만과 조국대륙은 원래 경제적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와서 불행하게도 경제연계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조국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만의 경제도 날로 번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역을 발전시키고 有無相通하고 경제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간의 수요로서 어느 측에나 유익할 뿐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만동포들!

위대한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전도는 우리에게 속하기도 하고 당신들에게 속하기도 합니다. 조국의 통일은 역사가 우리 세대에게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시대가 전진하고 있고, 형세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 사명을 완수하면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미증유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발전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진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합시다!

\* 1978년 12월 26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대만동포에게 고향》을 토의·통과하였다.

## 대륙거주대만동포에대한정책지시

### 關於落實居住在祖國大陸臺灣同胞政策的指示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1981년 9월 28일

영광스러운 애국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대만동포들은 장기간 내려오면서 중화민족의 생존·발전·번영과 통일에 탁월한 기여를 하여왔다. 지금 조국대륙에는 1만 7,000여명의 대만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혁명열사들의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으며, 「2·28」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나라를 거쳐 조국대륙에 와서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며 지금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우리 위대한 조국의 부강과 통일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다.

아직 조국통일 위업이 완수되지 못하여 대만동포들이 고향을 멀리 떠나 있는데, 그들은 마땅히 당과 정부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장기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특히 10년 내란기간에 林彪·江青 반혁명집단이 대만동포들중에서 많은 억울한 사건, 가짜 사건을 만들어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다.

당중앙위원회 제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대만동포에 대한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적지 않은 일을 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반향이 좋다. 그러나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아직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억울한 사건·가짜 사건을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대만동포들이 응분의 신임과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도 배려를 받지 못하고 가족 자녀들이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대만이 조국에 귀환되어 조국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80년대 3대 과업의 하나이다. 조국대륙에 있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바,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조국대륙에서 사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당의 기본정책은 동등하게 대하고 여러 면에서 우선적으로 돌봐주는 것이다. 정책을 관철하고 생활을 안배해주어야 한다. 이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한다.

1.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조국대륙에서 사는 대만동포들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관심을 돌려주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 생활·근무·자녀취학 등 각 방면에서 그들이 봉착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잘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들 중에 入黨·入團을 요구하는 선진분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도와주어야 하지, 그들의 가정문제와 역사문제를 당분간 해명할 수 없다하여 입당·입단 조건을 확실히 구비한 대만동포들을 조직에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만동포들에 대하여 사업상 신임해주고 그들의 특기를 발휘시키고 지금의 근무부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절하여야 한다. 저명인사와 특수한 기여가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적절히 안배해 주어야

한다.

조국대륙에서 살고 있는 高山族 동포는 150호 가구도 안 되는데, 그들에 대하여는 더욱 돌보아주고 그들의 생활습관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2. 대만은 중국의 한 지방이므로 대만의 친척·친구 관계는 「해외관계」인 것이 아니라 「국내관계」이다. 대만 친척과 친구를 「해외관계」라 부르고 일률로 정치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이런 「해외관계」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잘못 대우해준 것은 당장 시정해주어야 한다. 「대만관계」때문에 퇴직·이직 당했거나 降職 당한 것은 사정을 감안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직위를 회복해주고 원래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어떤 오류나 죄를 범하였는데 「대만관계」때문에 가중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과중하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재수사를 진행하여 실사구시적으로 다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대만관계」때문에 농촌에 내려간 사람에 대하여는 가급적으로 도시에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만동포 가운데 억울한 사건, 가짜사건에 대하여 모두 재심사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잘못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정해주고, 부분적으로 잘못 처리된 사건은 그 잘못 처리된 부분을 시정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누명을 벗겨주고, 黨籍·團籍을 그릇되게 제명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적·단적을 회복해주고, 그릇되게 공직을 제명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을 회복해주고, 그릇되게 강등·降職 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 직급, 원 직무를 회복해주고 권속·자녀가 연루 받았을 경우에는 그들의 소재 단위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억울한 사건을 시정한 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공제한 봉급을 지급해주고 빼앗은 주택을 되돌려



주고 수사압수·강점당한 물건은 되돌려 주어야 하며, 원 물건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잘 설득하고 적당하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4. 전 華北軍政大學, 華東軍區 대만간부훈련단과 中南民族學院의 개별적 대만동포 간부들이 농촌으로 추방되어 갔는데, 간부 본인과 그 배우자·미성년자녀를 도시로 올려와서 배치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1명의 자녀를 도시에 들어오게 허용하여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활이 어려운 대만동포들에 대하여는 각종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현지의 중등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할 능력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대만동포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돌봐주고 경로시설·보육시설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을 배치해주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주택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

6. 부부쌍방의 일방이 원적지가 대만일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입대·진학·취업할 때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대만동포 청년들의 학습·취업문제를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7. 대만동포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으므로 각 省·市·自治區에서 정책 실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지표를 해결해야 한다.

8. 각 省·市·자치구 당위원회에서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정책관철 사업을 금년도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삼고, 이 일을 전문 담당하는 지도부를 내오고, 짧은 기간 내에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해당 간부들에게 대만동포정책에 관한 교양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대만동포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의 중대한 의의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대만동포들에게 정치사상사업을 잘 진행하여 당과 국가에서 이미 지금 그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은 향후에 점차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해방군 내에서 대만동포정책을 관철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군대의 각급 정치부문에서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국평화통일실현방침에관한정책

### 臺灣同胞回歸祖國實現和平統一的方針政策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葉劍英 / 1981년 9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葉劍英은 오늘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조국에 귀속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 정책에 대하여 천명하였는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2주년이 되는 국경절 전날이며, 또한 신해혁명 70주년 기념일도 곧 맞이하게 되는 때이다. 나는 우선 대만동포와 홍콩·마카오 동포들을 포함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친절한 문안을 드린다.

1979년 元旦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대만동포에게고함」을 발표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방침을 제시하여, 대만동포와 홍콩·마카오동포들을 포함한 전 중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해외교포들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대만해협에는 완화의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제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대만을 조국에 귀속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정책을 진일보 천명하려 한다.

1. 중화민족이 분단되어있는 불행한 상태를 조속히 끝마

치기 위하여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양당이 대등하게 담판을 진행하고 제3차 합작을 진행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공동으로 완수할 것을 건의한다. 쌍방이 사람을 파견하여 접촉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할 것이다.

2. 해협양안의 각 민족 인민들은 서로 소식을 전하고 혈육들이 만나고 무역을 진행하고 이해를 증진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쌍방이 공동으로 通郵·通商·通航과 친척방문·관광을 하고 학술·문화·체육 교류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협약을 맺을 것을 건의한다.

3. 국가가 통일된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군대를 그대로 둘 수 있다.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사무를 간섭하지 않는다.

4.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며, 생활양식을 변경하지 않으며,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개인 재산·가옥·땅·기업소유권·합법상속권과 외국투자를 침범하지 못한다.

5. 대만당국과 각 계층 대표 인사들이 전국적 정치기구의 지도직무를 맡고 국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6. 대만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곤란에 봉착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정황에 근거하여 보조해준다.

7. 대만의 각 민족 인민들, 각 계층 인사들이 조국대륙에 와서 정착해 생활하려 할 경우, 타당하게 배치해주고 차별하지 않으며 왕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8. 대만 工商界 인사들이 조국대륙에 와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경제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 합법적 권익과 이윤을 보호한다.

9. 조국통일 앞에서는 누구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대만

의 각 민족 인민들, 각 계층인사, 군중단체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건의를 제기하고 국가의 방침을 함께 상의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만을 조국에 귀속시키고 조국통일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 이 세대들의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역사적 사명이다.

조국의 통일과 부강은 조국대륙 각 민족 인민들의 근본이익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만 각 민족 동포들의 근본이익이며, 이것은 극동과 세계의 평화에 유리하다.

우리는 광범한 대만동포들이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전 민족의 대단결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 촉진하고 민족의 영예를 공동으로 향유할 것을 바란다. 홍콩·마카오 동포들과 해외교포들이 계속 노력하고, 교량의 역할을 발휘하고, 조국통일에 힘을 이바지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국민당 당국이 「두개 중국」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민족의 大義를 중히 여기고 서로 지난날의 상한 감정을 풀고 우리와 손잡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공동으로 완수하고 중화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선조들을 위하여 영예를 빛내고 자손후대를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빛나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길 것을 바란다.

\* 『신화통신』 1981년 9월 30일

## 대만이주대륙친척에관한정책통지

### 關於進一步落實去臺人員在祖國大陸親屬政策的通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1981년 11월 26일

대만에 간 사람들의 친척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중앙에서 1979년에 원칙적 규정을 만들었다. 이제 각 지방에서 반영한 문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 규정을 재천명하고 보충한다.

1. 대만에 간 사람들의 조국대륙 친척에 대한 당의 정책은 차별시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진학·취업·입대 및 社會救濟 향유 등 면에서 대만에 친척이 있다 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入黨·入團을 요구하는 그들 중 선진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친척이 대만에 있다고 하여 문밖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표현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이 대만의 친척들과 정상적으로 내왕하고 통신하고 송금하는 것을 지지·격려하여야 한다.

2. 「문화대혁명」 중 대만에 간 사람들의 친척이 대만의 친척 때문에 그릇되게 처리 받은 것은 모두 재심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억울한 사건, 가짜 사건은 일률로 시정하여야 한다.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명을 씻어주어야 하며, 공직에서 제명당한 사람은 그 공직을 회복시켜주고, 강등·降職을 당한 사람은 원래의 급과 대우를 회복해 주고 공제한 봉급은 돌려주어야 한다. 黨·團에서 제명당하고 강제로

退黨·退團 당한 사람은 당적·단적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농촌으로 추방된 간부와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원래 단위에서 데려가 배치하거나 해당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배치해 주어야 하며, 나이 많고 신체가 약한 사람은 정년 이직·퇴직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농촌으로 추방된 도시주민은 부근의 중소도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강점한 개인가옥과 수사몰수 및 강점한 재물은 돌려주어야 하며, 이미 분실되어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배상해주고 잘 해석해주어야 한다.

3. 「문화대혁명」 이전에 대만의 친척관계 때문에 그릇되게 처리 받았을 경우에는 중앙의 해당규정에 따라 재심사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기타 오류 또는 죄행을 범하였는데 대만의 친척관계 때문에 가중하게 처리 받았을 경우에는 실사구시적으로 다시 심사·결정하고 先後 사업을 잘해야 한다.

대만에 간 사람의 친척이 「문화대혁명」 이전에 농촌으로 추방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중의 특기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특기에 따라 직장을 배치해주고 상응한 직함을 주어야 한다. 영향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각급 통일전선 공작부문에서 적당하게 배치해 주어야 한다. 농촌에 추방된 사람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조사·요해하고 확실히 어려운 사람은 적절히 돌봐주어야 한다.

4. 해방초기에 정부에서 대리 관리한 대만 이주자들의 개인가옥은 상황이 복잡하고 관계범위가 넓고 문제가 많은 바, 도시건설총국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해결책을 내와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기 바란다.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대만에 간 사람들의 친척이 재산권을 계승하려 할 경우에는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인이 돌아와 정착할 경우에는 구실을 대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돌려줘야 한다.

## 장경국국민당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 致蔣經國先生信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廖承志 / 1982년 7월 24일

經國 동생에게:

지척 사이를 둔 것이 천양지간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남경에서 종종히 만난 후 어느덧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 친구로 같이 놀고 모스크바에서 재미있게 보낸 옛일들이 어제 일 같이 눈앞에 선합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 유감스럽습니다. 최근에 존체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됩니다. 나이 일흔이 넘으면 병에 시달리기 쉬운 법인데 스스로 몸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3년 이래 우리 당에서는 거둬 國共 양당이 담판을 진행하고 옛날의 원한을 버리고 조국통일 위업을 같이 완수할 것을 창의를 왔습니다. 동생은 수차 “접촉하지 않고, 담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왔는데 이제 내가 나서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대부터 깊은 교분을 이어온 사이인데 국가이익과 개인정분을 봐서라도 내가 나서서 진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천추에 길이 빛날 업적입니다. 대만은 결국에는 조국에 귀환될 것인데 하루빨리 통일되면 각방에 다 유리합니다. 대만의 동포들이 安居樂業할 수 있고 양안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골육분단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대만의 선배들과 대만에 간 사람들도 각각 알맞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정세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하여도 유리합니다. 동생은 일찍이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고 만세의 명예를 추구하련다”는 말로 자기를 격려하였는데, 만일 동생의 손으로 이 위업을 완수한다면 필연적으로 전국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을 것이며 나라에 공훈을 세우고 靑史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이른바 「죄인」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작은 섬에 계속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長久之計가 못됩니다. 머리 밝은 동생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훗날에 보자고 미룬다면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잘못이 동생한테 갈 것입니다. 게다가 평화통일은 전적으로 내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甘言利說은 우리 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世人이 다 아는 바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되는데, 동생이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선생이 창립한 중국국민당은 온갖 艱難辛靑를 겪고 무수한 선열들이 용감무쌍하게 싸워 끝끝내 청나라를 뒤엎고 民國을 창립하였습니다. 그 빛나는 업적은 이미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國共 양당은 두 번 합작하여 매번마다 국가와 민족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합작은 손 선생이 영도하였는데, 그때 우리가 어렸어도 얼마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합작은 동생의 부친이 맡아 했는데 우리들이 참여하였는지라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복잡다단하지만 전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합작하면 국가에 유리하고 분열하면 민족의 元氣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동생이 대만에서 집정하고 있는데 3차 합작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쌍방의 지도자들이 동창·친구 사이이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담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른바 '투항' 이니 '굴복'이니 '손해'니 '속는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봄에 있어서는 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국가 민족이익을 최고 준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三民主義로 중국을 통일한다"고 운운하는 주장은 이미 현실적이 못되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명석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三民主義의 진수에 대하여 우리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대만의 「經濟繁榮, 社會民主, 民生樂利」 등등에 대해서도 대만 諸公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貴黨의 입장에서 고려하더라도 만일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단호히 평화담판을 진행하여 국가의 통일을 실현한다면 양당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하면서 중화진흥의 위업을 공동으로도모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대만에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당의 흥망성쇠와 관계되므로 동생이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친의 영령이 고향에 돌아가서 先人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동생의 大作을 읽고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선친을 慈湖에 임시 안치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奉化나 南京이나 慮山 등 고향에 옮겨와 동생의 효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생은 최근에 "효도하는 마음을 민족감정으로 승화시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기여하련다"고 말했는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왜 통일위업에 나서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선친과 동생이 역사 앞에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

고 개인으로 말해도 그렇게 해야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이 死後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은 운명의 탓이 아니며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千秋의 공훈과 죄는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며 대만의 각 계층에서 의논이 많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앞날은 많지 않은데 길게 끌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동생이 잘 결단을 내리고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넓은데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욱 옛일이 그리워지는데 동생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대만을 방문하여 여러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재난 끝에 형제를 만나니 옛날의 상한 감정이 한 웃음에 없어지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를 생각하니 하고 싶은 말을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인께 안부 전해주시고 方良, 緯國과 여러 조카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廖承志

1982년 7월 24일

# 중화인민공화국헌법

## 中華人民共和國憲法

---

全國人民代表大會 / 1982년 12월 4일

### 서 언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임무이다.

### 제1장 총 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둘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 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국가통일과 전국 각 민족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제3장 국 가 기 구

###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3)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

### 제3절 국무원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 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을 환영하는 담화

### 就臺開放臺灣同胞到大陸探親發表的談話

국무원 / 1987년 10월 14일

국무원 관련분야 책임자는 대만당국이 대만동포들의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신화사 기자와 회견을 갖고 대만당국이 상기 조치를 취한 것은 양안 인민들의 내왕에 유리하며 대만동포들이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해협양안의 인민들이 자유 내왕하고 교류를 넓히고 혈육들이 갈라져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줄곧 주장하여 왔다. 대만의 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을 방문하고 관광하는데 대하여 조국의 정부와 대륙의 인민들은 줄곧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는 대륙에 와서 친척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모든 동포들을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의 왕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편리를 제공해주고 돌보아 줄 것이다.

양안동포들의 친척방문은 당연히 허용해야 하며,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륙동포들이 대만에 가서 친척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서로 내왕하며 친척을 방문하는 동포들에 대하여 사리에 맞지 않게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대만 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

를 취하기 바란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15일

## 대만당국의대만동포대륙친척방문허용발표관련담화

### 就臺灣當局開放臺灣同胞赴大陸探親一事發表的談話

臺灣民主自治同盟 ·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 1987년 10월 17일

대만민주자치동맹 總부의 책임자는 오늘 대만당국의 대만동포 대륙친척방문 개방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당국은 수차 연기하다가 끝내 10월 15일에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다고 공식 선포하였다. 대만당국이 양안 내왕에서 허용한계를 넓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만섬 내외 동포들이 장기간에 걸쳐 귀성의 권리를 쟁취한 결과이며, 이것은 양안 혈육들이 한자리에 모이려는 염원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및 관광을 하는 동향인과 동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40년간 갈라져 온 혈육들의 쓰라린 마음을 알고 있는 바, 혈육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대륙에는 臺灣籍 동포들이 2만 7,000여명 있는데 그들 모두가 대만에 혈육이 있고 동창생들이 있다. 우리는 귀성할 권리가 있고 귀성해 성묘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40년이나 기다렸는데 대만당국에서 우리가 친척을 방문하고 성묘하러 가는 데 계속하여 장애를 설치하지 말기 바란다. 친척을 방문하고 성묘하고 인간의 도의를 다하는 면에서 양안의 동포들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만에 돌아가



친척을 방문하고 성묘할 준비가 되어있다. 양안동포들의 친척 방문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안의 관계부문에서 평등·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적당한 방식으로 협상할 것을 건의한다.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의 책임자는 오늘 대만의 고향사람들이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당국은 10월 15일 마침내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을 개방한다고 선포했다. 일찍이 통과되어야 할 이 결정이 비록 늦게 통과되었지만 조국대륙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만사람들은 여전히 환영을 표시한다. 양안 혈육들의 상봉의 날을 우리들은 눈이 빠지도록 애타게 38년이나 손꼽아 기다려왔다.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는 대만인들로 구성된 민중단체로서 다년간 해내외에서 온 많은 대만 고향사람들을 접대해왔다. 지금 우리는 더욱 많은 대만 고향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러 면으로 준비를 하였다. 향우들이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을 하고 관광하고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는 과정에서 만일 무슨 곤란이나 불편한 일에 봉착하게 되면 현지의 대만동포연의회를 찾아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는 대륙의 대만사람들은 고향의 혈육들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고 대만에 돌아가 혈육들과 상봉해서 흥금을 털어낼 수 있기를 손꼽아 고대하고 있는 바, 대만당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에 순응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해협양안의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기대한다.

## 장경국국민당주석서거관련담화

### 發表談話悼念蔣經國逝世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趙紫陽 / 1988년 1월 14일

중공중앙 총서기 趙紫陽은 오늘 담화를 발표하여 중국국민당 주석 蔣經國의 불행한 서거에 애도를 표시하고 평화적 조국통일방침은 불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중국국민당 주석 장경국 선생이 불행하게 서거한데 대해 우리는 침통하게 애도한다. 장경국 선생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국가의 통일을 주장하고 역사 앞에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양안관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당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침과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천명한다. 우리는 새로운 국민당 지도자가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세를 판단하고 민심에 순응하며 해협 양안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좋은 추세를 계속 전진시키고 우리나라의 분단상태를 조속히 종말 짓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만인민들은 통일을 바라고 분열을 반대하며, 최근년간에 홍콩·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과 같이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國共 양

당의 평화적 담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우리는 대만 각 계층 인사들과 함께 國是를 논의하고 조국통일과 중화진흥의 대업을 완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만의 정세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하고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인민들이 安居樂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新華通訊』 1988년 1월 14일

## 장경국서거관련국민당에보내는조전

### 中共中央電唁蔣經國逝世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1988년 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국민당 중앙위원회에 전보를 보내어 장경국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臺北

중국국민당 중앙위원회:

중국국민당 주석 장경국 선생이 불행하게도 서거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한 우리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장경국 선생의 가족에게 충심으로 위문을 표시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988년 1월 14일

\* 『新華通訊』 1988년 1월 14일

## 장경국서거관련장경국부인에게보내는조전

### 電信蔣經國病逝

---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앙명예주석 屈武 / 1988년 1월 14일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중앙명예주석 屈武는 오늘 臺北 장경국부인 方良 여사에게 전보를 보내 장경국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제 저녁에 經國 동생이 병으로 서거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하고 슬픔에 잠겨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생동안 나라를 사랑해 온 經國이 다시 재능을 발휘해 조국통일위업에 진력할 것을 바랐는데 뜻밖에 돌아가니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나와 經國은 두 집안이 가까운 사이고 둘이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때 소련에서 같이 공부하고 溪口에서 이별의 말을 나누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양안이 분단되어 오랫동안 소식이 통하지 못했지만 그리운 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친척방문을 개방하는 일을 보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뜻밖에 經國이 나 먼저 돌아가 永訣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보로 조문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옥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대신 經國의 영전에 향을 피워 고인이 고이 잠드시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라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합니다.

\* 『新華通訊』 1988년 1월 14일

# 대만당국의대륙거주대만동포귀향허용관련담화

## 就臺胞返鄉探親發表的談話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 1988년 6월 29일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책임자는 6월 29일에 친척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27일에 우리는 국민당 당국의 대만동포 대륙친척방문 허용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대만사람들의 조국대륙친척방문을 열성적으로 환영한다고 표시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국민당 당국이 방문관련 제한을 진일보 취소하고 대륙에 거주하는 대만동포들의 대만친척방문을 허용하기 바란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최근에 국민당 당국은 대륙의 대만동포가 대만에 奔喪하러 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해협양안 인민들의 왕래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며 환영을 표시한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죽은 후에야 奔喪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만의 대륙출신 동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으며, 그들이 드디어 대륙에 와서 혈육들과 상봉하게 된대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조국대륙에 있는 대만동포들도 마찬가지로 40년간의 분단의 고통을 겪어왔는데, 그들도 애타게 혈육을 그리워하고 있고 귀향하여 친척방문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향의 늙은 부모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대륙에 있는 대만동포들도 모두 나이가 많은데 정녕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고향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국민당의 협박에 의하여 대륙에 온 대만출신 노병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대만친척 방문을 바라고 있는데 오늘 여전히 자기 고향 밖에서 거절당하면서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출발한다면 무엇 때문에 대등하지 않은 장애를 설치하고 지역적으로 제한하는가?

우리는 대만의 언론계와 관련 조직들이 대륙거주 대만동포의 귀향과 친척방문을 위해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국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민심에 순응하도록 독촉하고, 40년간 기대해온 대륙거주 대만동포들의 귀향·친척방문 꿈이 하루빨리 실현되고, 대륙의 대만출신 노병들이 고향 땅을 밟는 그 날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人民日報』 1988년 6월 30일

## 중국양안관계와평화통일문제에관한담화

### 就海峽兩岸關係與和平統一問題發表

中共中央 臺灣工作辦公室 / 1991년 6월 7일

중공중앙 대만공작관공실 책임자는 오늘 해협양안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침정책 추진과 해내의 동포들의 공동 노력 하에 근년에 양안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전반적 정세가 평화적 조국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중화민족 진흥의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공산당은 전국의 여러 당파·단체·각 계층 인사들과 같이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분투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一國兩制」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이다. 전 중국인민들의 근본이익을 취지로 삼고 역사와 현실을 존중한 이 방침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홍콩·마카오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과정에서 성과적으로 적용되었다. 「一國兩制」란 한 국가 내에 두 가지 다른 정치·경제와 사회제도를 실시하며 누구도 상대방을 먹어치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침에 따라 대만과 조국대륙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에 대륙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만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며 현행 정치·경제 및 사회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활양식도 변경하지 않는다. 대만



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사법독립을 향유하여 북경에 가지 않고 終審權을 가지며,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대만당국과 유관부문 그리고 대만인민들의 이익을 실제로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大計이고 장기적인 방침이다.

우리가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을 주장하면서 무력사용의 포기를 승낙하지 않는 것은 결코 대만인민들을 대상해서가 아니라, 조국통일과 '대만독립'을 간섭하는 외국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래에 대만섬 내에서 '대만독립' 활동이 창궐하여 해내외 동포들의 깊은 주의를 야기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국가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고 대세의 흐름이다. '대만독립'은 민족의 이익과 역사조류에 어긋나므로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兩個中國'이나 '一國兩府' 그리고 '臺灣獨立'에 대한 그 어떤 기도나 행동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만독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중국은 하나이며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일부 조치들을 취한데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에 대만당국은 「동원반란평정시기」를 중지한다고 선포하고 「동원반란평정시기임시조항」을 폐지하였다. 「동원반란평정시기」와 「임시조항」은 본래 불법적인 것이므로 일찍이 폐지되었어야 했다. 비록 이제 와서 중지하여도 현실을 직시하고 적의를 줄이는 행동이며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당국은 여전히 '적대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해협양안의 서로 대등한 '정치실체'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대륙 轉變'을 환상하고 있

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공산당 반대와 화해거절의 입장을 개변하여 적의를 진정 없애고 언행을 통일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실제 일들을 하고 표리부동하고 통일위업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양안관계의 진일보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진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정책주장에 근거하여 나는 권한을 위임받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해협양안의 관계 부문과 수권단체 또는 인사들이 직접三通과 쌍방교류를 실현할 문제를 조속히 협상하여 왕래를 확대하고 연계를 밀접히 갖고 민족경제를 번영시키고 양안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직접三通과 쌍방교류에 유리한 대만당국의 주장과 조치를 모두 환영한다.

(2)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은 대표를 파견하여 접촉함으로써 양안의 적대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맺고 평화통일을 점차 실현하기 위한 담판을 진행하는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지하는 전제 하에 대만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기타문제들도 토의할 수 있다. 협상에 양안의 기타 정당·단체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

(3) 중공중앙은 국민당 중앙책임자와 국민당 중앙이 수권한 인사가 대륙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먼저 와서 돌아보고 의견을 교환해도 되며 우리는 모두 열성적으로 환영하고 예의로 접대할 것이다. 만일 국민당이 중공대표를 초청한다면 우리는 대만에 가서 국가의 기본방침을 같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 국민당이 이에 대해 엄숙하게 잘 고려하기 바란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해내외 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신성한 사명이다. 우리는 대만동포들과 조국대륙의 각 민족동포, 홍콩·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이 애국통일의 기치 하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천추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분투하기를 희망한다.

\* 『新華通訊』 1991년 6월 7일

# 양안간연락및회담제도에관한합의

## 兩會關係與會談制度協議

海峽兩岸關係協會·海峽交流基金會 / 1993년 4월 29일

해협양안관계협회(이하 「海協」이라 약칭)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이하 「海基會」라 약칭)는 협상을 거쳐 다음과 같은 연락 및 회담제도와 관련한 합의를 보았다.

### 1. 회 담

海基會 이사장과 海協 회장은 실제 수요에 따라 쌍방의 동의를 거친 후 쌍방 회의사무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며 장소 및 유관 문제는 따로 협상·결정한다.

海基會 부이사장과 海協 상무부회장, 또는 쌍방의 비서장은 원칙적으로 반년에 한번 씩 쌍방 회의사무와 관련하여 양안에서 교대로, 또는 협상·결정한 제3의 장소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양안의 부비서장·처장·주임급 인원은 매 분기마다 주 관업무에 대해 양안의 한 장소를 선택하여 회담한다.

### 2. 사무 협상

쌍방은 양안 교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데 동의한다.

### 3. 전문 소조

쌍방은 실무수요에 따라 각기 경제소조와 종합사무소조를 설립하는데 동의한다.

### 4. 긴급 연락

쌍방은 긴급사건의 연락인으로 각자의 부비서장을 지정하여 서로 연락하고 타당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 5. 출입국 편의 제공

쌍방은 협상·결정한 쌍방회의 사무인원들이 본 합의서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하고 통관할 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따로 협상·결정한다.

### 6. 합의 이행과 변경 및 종결

쌍방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합의를 변경 또는 종결할 경우에는 쌍방의 협상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

### 7. 미정 사항

이 합의서에서 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적당한 방식으로 따로 협상·결정한다.

### 8. 서명 효력 발생

본 합의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본 합의는 4월 29일에 서명하며, 4부를 만들어 각자 2부

씩 소지한다.

해협양안관계협회

會長

汪道涵

唐樹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董事長

辜振甫

邱進益

# 왕고회담공동합의

## 汪辜會談共同協議

海協 회장 汪道涵 · 海基會 회장 辜振甫 / 1993년 4월 29일

재단법인 海峽交流基金會(이하 「해기회」라 약칭) 辜振甫 이사장과 海峽兩岸關係協會(이하 「海協」이라 약칭) 汪道涵 회장은 각기 본회를 대표하여 금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은 민간 · 경제 · 실무 · 기능적인 성격의 회담이며, 海基會 邱進益 부이사장과 海協 상무부회장 唐樹備, 부회장 겸 비서장 鄒哲開 등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금년도 협상의제

쌍방은 금년 내에 「유관 규정을 어기고 상대방 지역에 진입한 인원을 송환하는 문제 및 그 관련 문제」, 「해상에서의 밀수 · 강탈 등 범죄활동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 「해상에서의 양안 어업분쟁에 대한 협상 · 처리 문제」, 「양안 지적소유권 보호」 및 「양안 사법기관의 상호 협조(양안 해당 법원 사이의 연계와 협조)」(잠정) 등 의제를 가지고 실무적 협상을 진행하기로 확정한다.

### 2. 경제 교류

쌍방은 모두 양안의 경제교류를 강화하여 서로 보완하고 이익을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대만상인의 대륙투자 권익 및 관련 문제, 양안 공상계 인사의 상호 방문 등 문제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데 동의한다.

### 3. 에너지자원 개발 및 교류

쌍방은 에너지자원 개발과 교류를 강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상하는데 동의한다.

### 4. 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쌍방은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양안 언론계 교류 및 과학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데 동의한다. 금년 내에 청소년 재능콩쿠르와 상호 방문을 진행한다. 청년들의 교류, 언론매체 책임자와 우수한 기자들의 상호방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인원의 상호 방문, 과학기술 연구출판물의 교환, 과학기술 용어의 통일과 제품규격 표준문제의 탐구를 추진하고 컴퓨터와 기타 산업의 과학기술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계속 협상한다.

### 5. 서명 효력 발생

이 공동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이 공동합의서는 4월 29일에 서명하고, 4부로 만들어 각기 2부씩 소지한다.

해협양안관계협회

會長

汪道涵

唐樹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董事長

辜振甫

邱進益



# 대만문제와중국의통일

##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新聞辦公室 / 1993년 8월 31일

### 머 리 말

국가보전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이며 국제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유엔헌장은 유엔과 그의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각국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국가통일과 영토보전 그리고 정치독립의 일부 또는 전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유엔헌장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근대사는 피 침략·분할·능욕의 역사인 동시에 중국인민이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그리고 민족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해 온 역사이다. 대만문제의 발생과 진전과정은 모두 이러한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대만은 지금까지 여전히 대륙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태는 하루아침에 매듭지어 질 수 없으며, 중화민족이 겪고 있는 상처 또한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고, 중국인민의 국가통일과 영

토보전을 위한 투쟁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을 것이다.

대만문제의 현상은 어디에 있고,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정부의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명백히 설명하고자 한다.

## 1.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

대만 땅은 중국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중국 제1의 큰 섬으로서 대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대만은 자고이래 중국에 귀속되어 왔다

대만의 옛 명칭은 夷洲, 流求이다. 많은 역사책과 문헌은 중국인민이 일찍이 대만을 개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삼국시대 오나라의 沈瑩이 지은 「臨海水土志」 등에 이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에 관한 세계 최초의 기록이다. 서기 3세기와 7세기에 삼국시대의 孫·吳 정권과 隋나라 조정은 모두 만여 명을 대만에 파견하였고, 17세기에 들어선 이후로는 중국인민의 대만에서의 개척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어서 17세기 말에는 대륙에서 대만으로 들어가 개척한 자가 10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리하여 서기 1893년(청조 光緒 19년)에 이르러서는 그 총수가 50만 7,000여 호, 254만여 명에 달하여 200년 동안 2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가지고 들어가 대만 전 지역에 대한 개발속도를 크게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

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대만도 중국의 기타 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이 개척하여 정착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대만사회의 발전은 시종 중화문화의 전통을 이어 왔으며, 일본 침략 50년 기간 중에도 이러한 기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대만의 개척발전사는 현지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국인민의 피땀과 지혜가 응집되어 있다.

중국의 역대정부는 대만에 행정기구를 수립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다. 일찍이 서기 12세기 중엽, 宋朝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澎湖에 주둔시키고, 팽호지구를 福建省 泉州 晉江縣 관할로 분할하여 귀속시켰다. 元朝 정부는 澎湖에 행정관리기구인 「巡檢司」를 설치하였으며, 明朝 정부는 16세기 중·후기에 일시 폐지되었던 「巡檢司」를 부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팽호에 군대를 증파하였다. 1662년(淸 康熙 元年)에 鄭成功이 대만에 「承天府」를 설치한 이후 淸朝 정부는 점차 대만에 행정기구를 증설하면서 대만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다. 1684년(淸 康熙 23년)에는 「分巡臺廈兵備道」와 「臺灣府」를 설치하여 그 아래에 「臺灣」(현 臺南), 「鳳山」(현 高雄), 「諸羅」(현 嘉義) 3개현을 두고 이를 복건성 관할로 하였다. 1714년(淸 康熙 53년)에 청 정부는 관원을 파견하여 대만지도를 측량 제작하고 섬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1721년(淸 康熙 60년)에는 「巡視臺灣監察御史」를 증설하고 「分巡臺廈兵備道」를 「分巡臺廈道」로 개칭하였는데 그 후 다시 「彰化縣」과 「淡水廳」을 증설하였다. 1727년(淸 雍正 5년)에는 「分巡臺廈道」를 「分巡臺灣道」(후에 다시 「分巡臺灣兵備道」로 개칭)로 고치고 「澎湖廳」을 증설하면서 「臺灣」을 공식적인 통일 명칭으로 정하였다. 1875년(淸 光緒 元年) 淸 정부는 대만 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시 「臺北府」 및 「淡水」, 「新竹」,

「宜蘭」 3개 縣과 「基隆廳」을 증설하였다. 1885년(청 光緒 11년)에 청 정부는 정식으로 대만을 1개 省으로 승격시키고 柳銘傳을 초대 巡撫로 임명하였으며, 행정구역은 3府 1州 11縣 5廳으로 확대하였다. 柳銘傳은 재임기간 중 철도 부설, 광산 개발, 전선 설치, 상선 건조, 기업 창설, 학교 건설 등으로 대만의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을 크게 진전시켰다.

1945년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후에 중국정부는 대만성의 행정관리기구를 다시 되찾았다.

### 해협양안의 중국인은 외국의 대만점령을 반대하여 장기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5세기 후기부터 서방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를 대대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1624년(明 天啓 4년)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은 대만 남부를 침략하여 점령하였고, 1626년(明天啓 6년)에는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대만 북부를 침입하였으며, 1642년(明 崇禎 15년)에는 네덜란드가 다시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대만 북부를 점령하였다. 이에 양안 동포들은 외국 식민주의자들의 대만 침략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포함한 각종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1661년(청 順治 18년) 鄭成功은 군중들을 이끌고 대만에 진군하여 다음해에 대만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을 축출하였다.

1894년(청 光緒 20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는 「甲午戰爭」을 일으켰다. 다음해 청 정부는 전쟁에 패배하여 일본의 위협 하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적인 「馬關條約」을 체결하고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는데, 북경에서는 대만을 포함한 18개성 1,000여

명의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대만 할양을 반대하는 上書를 발표하였고, 대만 전역에서는 방성대곡과 함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상인들은 철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대만 군사 업무를 관할하던 청나라 장군 劉永福 등은 대만동포와 함께 대만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대에 목숨을 걸고 대항하였다. 중국대륙 동남부의 각 지역 주민들도 이 투쟁에 참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군대를 결성하여 대만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침략에 반항하였다. 일본의 대만점령 기간 중에도 대만동포들은 끊임없이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초기에는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 유격저항을 7년 동안이나 하였다. 이어 辛亥革命에서 청 정부가 전복된 이후에 대만동포들은 대륙동포와 함께 전후 10여 차례의 무장봉기를 하여 금세기 20~30년대에는 반일항쟁 군중운동이 대만전역에서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1937년 중국인민은 전국적인 항일전쟁을 시작하였고, 중국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통해 “중·일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협정·계약을 파기한다”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선포하였는데, 이로써 「馬關條約」은 폐지된 것이다. 또한 이 포고문은 “중국은 장차 臺灣·澎湖·東北 4省 토지를 수복할 것”이라는 점도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민은 8년간의 간고한 항일전쟁을 통해 1945년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고 잃었던 대만을 수복하였다. 대만동포는 축포를 터트리고 춤을 추며 조상에 제사지내면서 조국의 위대한 품으로 되돌아 온 것을 경축하였다.

국제사회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공인하고 있다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쇼 투쟁의 일부로서 세

계인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은 독일·일본·이탈리아의 파시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과 동맹을 결성하였다. 1943년 12월 1일 중·미·영 3국이 체결한 「카이로선언」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태평양에서 약탈하거나 점령한 일체의 섬을 반환하고, 중국에서 강점한 만주·대만·펑호열도 등도 중국에 반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5년 7월 26일 중·미·영 3국이 서명(후일 소련 참가)한 「포츠담선언」도 “카이로선언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였다. 동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항복문서」는 “우리는 중·미·영 3국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후일 소련이 참가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 중의 조항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년 10월 25일 동맹국의 대만성 항복접수 의식이 臺北에서 거행되었는데, 항복접수 주관대표인 중국정부는 “오늘부터 대만 및 펑호열도는 정식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고, 모든 토지·인민·政事는 중국의 주권 하에 두며, 이로써 대만·펑호는 다시 중국의 주권 관할 아래로 귀속된다”고 선언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57개 국가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중국은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하였다.

## 2. 대만문제의 유래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법률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미 중국에 복귀되었다. 대만문제가 다시 발생한 까닭은 중국국민당이 일으킨 반인민 내전과 관련이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세력의 개입 때문이다.

### 대만문제와 국민당이 일으킨 내전

중국의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과 기타 애국역량의 지지 하에 중국국민당은 중국공산당과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였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 양당은 응당히 계속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중화민족의 대업을 이루어야 했으나 蔣介石을 수반으로 한 국민당 집단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국 인민의 평화염원과 독립·민주·부강한 신중국의 강렬한 희망을 저버리고 國·共 양당이 체결한 「雙十協定」을 파기하면서 전국적 규모의 반인민 내전을 일으켰다. 국민당 집단이 이러한 반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3년여의 인민해방전쟁을 통해 마침내 南京의 「중화민국」 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되었다. 국민당 집단의 일부 軍政 인원들은 대만으로 패주하여 당시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대만해협 양안의 분단상태를 조성하였다.

### 대만문제와 미국정부의 책임

제2차 세계대전 후 당시 동서 양대 진영의 대치 상태에서 미국정부는 그들의 전 세계 전략 및 자국 이익을 고려하여 자금과 무기·인원을 동원, 국민당 집단의 내전을 전력 지

원함으로써 중국인민의 해방사업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미 국무성이 1949년 발표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백서와 애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애치슨의 서한에서는 “중국 내전의 결과가 미국의 통제능력에서 벗어난 점이 애석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코 우리들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중국내부의 각종 역량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역량을 통제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당시 미국정부는 중국내전의 와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新中國에 대한 고립·억제정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전쟁 발발 후에는 순수 중국 내정에 속하는 해협 양안관계에 대해 무장 간섭을 하였다. 1950년 6월 27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 제7함대에 대만침략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할 것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 제7함대는 대만해협을 침입하고 제13항공대는 대만에 진주하였다. 1954년 12월 미국은 또한 대만당국과 소위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臺灣省을 미국의 “보호” 하에 두었다.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대만해협에 장기간의 긴장 대치정세를 조성하였고, 대만문제는 이때부터 중·미 양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대만해협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중·미 양국 간의 쟁점해결 모색 과정은 중국이 '5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대화를 개시하면서 부터이다. 1955년 8월부터 1970년 2월까지 중·미 양국은 136차례 걸쳐 대사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대



만해협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화와 신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대중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양국관계도 해빙의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대만당국의 대표를 축출하는 제 2758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72년 2월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미 쌍방은 상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대만해협 양안 모든 중국인의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1978년 12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수교 3원칙, 즉 대만과의 斷交, 「공동방위조약」 폐지, 대만 내 미군철수를 받아들였는데, 이로써 중·미 양국은 1979년 1월 1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수교 공동성명에서 “아메리카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미국인민은 장차 대만인민과 문화·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중·미 관계의 정상화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중 수교 3개월도 안되어 미국 의회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키고 미 대통령이 이를 서명·발효시켰다. 이 「대만관계법」은 미국 국내입법 형식으로서 미·중 수교성명 및 국제법 원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인민의 권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미국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대만에 무기판매와 중국 내정간섭을 계속하여 대만과 중

국대륙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미 양국정부는 1982년 8월 17일 협의를 달성하여 중·미 관계에 관련되는 세 번째 공동성명(약칭 「8·17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정부는 이 성명에서 “대대만 무기판매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판매무기의 성능 및 수량은 수교 후 몇 년간 제공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축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미국정부는 성명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 위반행위를 부단히 자행하였다. 심지어 미국정부는 1992년 9월 대만에 F-16 고성능 전투기 150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미국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중·미 관계의 발전과 대만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 책임이 있다. '70년대 이래 미국 조야의 많은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상기 3개 공동성명도 모두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를 크게 찬양하고 있으나 미국의 어떤 인사는 중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만문제의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인민과 중국인민이 우호적이라고 믿고 있다. 양국관계의 정상적 발전은 양국 인민의 장기 이익에 부합되며 공동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미 양국은 모두 어렵게 얻어 낸 3개 공동성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약 쌍방이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며 대세를 중시한다면 역사가 남긴 대만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

을 것이며, 중·미 관계도 반드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다.

### 3. 중국정부의 대만문제 해결 기본방침

대만문제 해결과 국가통일의 실현은 전체 중국인민의 장엄하고도 신성한 사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중국정부의 대만문제 해결 기본방침은 「평화통일, 一國兩制」이다.

####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침의 형성

일찍이 '50년대 중국정부는 이미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할 것을 구상하여 왔다. 1955년 5월 周恩來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인민은 대만문제를 전쟁과 평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중국인민은 가능한 조건이라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1956년 4월 毛澤東 주석도 “평화는 고귀한 것이며, 애국에는 너와 내가 없고 선후 분별이 없다”는 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외국세력의 간섭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주장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70년대 말부터 국제 및 국내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은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당과 국가의 중점 업무방향을 현대화 경제건설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협 양안의 중국인과 홍콩·마카오 동포 및 해외 화교 모두는 양안이 손을 잡고 협

력하여 공동으로 중화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기를 갈망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중국정부는 전체 국가민족의 이익과 앞날을 고려하고, 역사와 현실 존중, 實事求是 및 각방면의 호혜 원칙을 감안하여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침을 제시하였다.

197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함」을 발표하여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방침을 엄숙히 선포하고, 양안이 군사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국가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대만의 현상태와 대만 각계 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표시하였다.

1981년 9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葉劍英은 담화를 발표하고 진일보된 대만문제 해결 방침과 정책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국가의 통일 실현 후에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안의 집권당인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이 대등한 담판을 벌일 것을 제의하였다.

1982년 1월 11일 중국의 지도자 鄧小平은 葉劍英의 상술한 담화가 사실은 「1개 국가, 2개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통일 실현의 대전제 하에서 국가의 주체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83년 6월 26일 鄧小平은 대만과 대륙 간의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진일보된 구상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조국통일이라고 지적하고, 양안의 통일과 대만특별행정구 설치 문제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천명하였다.

1992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江澤民은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평화통일, 一國兩制」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국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과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하여 조건을 성숙시켜 양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점차 평화통일을 위한 담판을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선언하며, 협상 시 양안의 기타 정당·단체 및 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평화통일, 一國兩制」의 기본점

「평화통일,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론과 실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중국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불변의 기본 국책이다. 이 방침은 다음과 같은 기본점을 갖고 있다.

#### (1)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세계상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정부는 북경에 있다. 이것은 세계가 다 공인한 사실이며, 또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언행도 단호히 반대하며, 「두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하나의 중국, 두개의 정부(一國兩府)」는 물론, 「대만독립」을 초래하는 일체의 기도와 행동에도 반대한다. 해협 양안의 중국인민은 모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을 주장하며, 국가의 통일을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확정적이고 불

변의 것으로서 소위 '自決'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두 제도의 공존(兩制並存)

「하나의 중국」 전제 하에서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는 장기간 서로 공존하고 공동 발전하면서 누가 누구를 먹어치우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대만의 현실과 대만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기초한 것으로서, 장차 통일 후 중국 국가체제의 일대 특색이 있는 중요한 발상이다.

양안의 통일실현 뒤에도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제도는 변하지 않으며, 생활방식도 변하지 않고,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개인재산, 주택, 토지, 기업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화교와 외국인의 투자 등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3) 고도의 자치(高度自治)

통일 후에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중국의 다른 일반省·區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것이다. 대만특별행정구는 대만에서의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 사법권과 終審權 보유, 黨·政·軍·經·財 등의 업무에 있어서 자치 관리, 외국과의 상업 및 문화 등의 협정 체결, 어느 정도의 외교업무 향유, 자기의 군대 보유가 가능하며, 대륙은 군대와 행정인원을 파견하여 대만에 주둔시키지 않는다. 특별행정구 정부는 대만 각계의 대표인사들과 국가 정권기구의 지도적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전국적 사무관리의 업무에 참여할 수도 있다.

## (4) 평화적 담판(和平談判)

접촉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통일을 실현

하는 것은 전체 중국인의 공통된 희망이다. 양안 인민은 모두 중국인으로서 만약에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분열되어 서로 군대가 대치하고 골육상잔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양안의 동포 모두에게 지극히 불행한 것이다. 평화통일은 전 중화민족의 대단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전 중국의 진흥과 부강에도 유익한 것이다.

적대상태의 종식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양안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접촉과 담판을 하여야 한다. 「하나의 중국」 전제 하에서 담판의 방식, 참여 당파·단체 및 각계 대표인사, 그리고 대만 측에서 관심을 갖는 기타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문제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다. 양안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양안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통일실현이 전이라도 쌍방이 상호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안 간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직접적인 通郵·通商·通航을 하여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평화통일은 중국정부의 기존 방침이다. 그러나 모든 주권 국가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고 보전할 권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내부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어느 외국 또는 중국의 분열을 기도하는 자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없다.

여기 분명히 지적하지만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內政에 속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적 협의를 거쳐 형성된 독일문제나 조선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만문제는 독일이나 조선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없

다. 중국정부는 독일문제와 조선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여 왔다. 대만문제는 당연히 양안간의 협상을 통해 「하나의 중국」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해야만 한다.

#### 4. 대만해협 양안관계의 발전과 장애

대만해협 양안의 목전의 분열상태는 중화민족의 불행이다. 모든 중국인은 이러한 비통한 국면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양안 인민들의 정상적 왕래와 국가의 통일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동시에 양안간의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정치방면에 있어서는 정책 조정을 통해 양안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하였는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대만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추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군사방면에서는 주도적으로 양안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金門島 등 도서에 대한 포격을 중지함과 동시에 福建지역 해안의 몇몇 진지와 관측소를 경제개발구와 관광구로 전환하였다.

경제방면에 있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만상인의 대륙투자와 무역활동을 환영하는 한편, 이를 위해 우대조건 제공과 함께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였다.

기타 인적 교류·우편통신 및 과학기술·문화·체육·학술·언론교류 등의 방면에 있어서도 중국정부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양안간 제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인 「海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와 접촉을 통해 양안 인민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중국정부의 대대만 정책 및 조치는 대만동포와 홍콩·마카오동포, 그리고 해외 화교로부터 더욱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되었다. 많은 대만동포들은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대만당국도 최근 몇년간 이에 상응한 대대륙정책을 조정하고 유화적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대만민중의 대륙 친척방문 허용과 양안 간 교류 제한조치의 완화, 간접무역의 확대, 양안 동포간의 전화통화·우편교류·송금수속의 간소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상호 교류와 왕래에 유리한 것으로서 최근들어 양안간의 경제무역이 신속히 발전되고 인적 교류와 각 방면의 교류활동도 부단히 증대되고 있다. 1993년 4월 개최된 「汪辜會談」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측 대표가 4개항의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양안관계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중요한 일보를 내딛었다. 대만해협은 40여 년 간 볼 수 없었던 화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이다.

반드시 지적할 사항은 대만당국이 양안관계에 다소 유연해졌으나 현행 대륙정책은 아직도 양안관계 발전 및 국가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중국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협상을 거절하면서 심지어는 양안 간 교류의 진일보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만섬 안에서의 「대만독립」 주장이 나날이 확대되어 양안관계 발전 및 국가의 평화통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만독립」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역사적 근원 및 국제적 요인이 있다. 대만당국은 평화적 담판의 거절과 교류·왕래의 제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二重承認」 및 「兩個中國」 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만독립」 활동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동포가 요구하는 대만의 주체적 관리에 대한 희망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나 이는 극소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만독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만독립」 분자들은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외국에 의존하여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망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근본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만독립」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제세력은 중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대만당국의 반공정책과 대만내의 분열세력을 지지하여 중국의 평화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중국인민의 민족감정에 엄중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부분의 대만동포가 국가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대다수 대만 조야의 정치세력도 국가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양안 인민의 공동 노력 하에 이상에서 밝힌 장애와 저항은 반드시 제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안관계도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5. 국제업무 중 대만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문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인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서 유엔 및 세계 각국의 보편적 승인을 얻었다. 국가주권의 유지와 국가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국제업무 중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 왔으며, 대만동포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하여 왔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각국 정부와 인민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정부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정책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중국 수교국과 대만간의 관계 문제

현재 중국과 수교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국제법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와 대만문제에 대한 정식 협의를 달성하거나 또는 양해를 얻었으며, 대만과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하였다. 국제법에 의하면 하나의 주권국가에는 하나의 중앙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발전과 대만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대만이 외국과 민간차원의 경제·문화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대만당국이 국제사회에서 소위 「실무외교」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일부 국가와

공식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이중승인」(雙重承認)을 목표로 「두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

세계상의 절대다수 국가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맺은 협의와 양해를 각 별히 준수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정부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또한 일부 어떤 국가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시 맺은 약속을 위반하여 대만과 공식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통일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는 유관 국가의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 (2) 국제조직과 대만간의 관계 문제

모든 국가의 주권은 완전한 것으로서 분할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국제조직에서 국가주권 행사와 전체 중국을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대만당국이 일부 주권국가들만이 참가하는 국제조직에서 소위 「一國兩席」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두개의 중국」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작태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러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은 대만 동포와 해외교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근본 이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만 중국정부는 유관 국제조직의 성질·규정 및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중국정부가 동의하고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만이 일부 국제조직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유엔 산하의 모든 기구는 주권국가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부 간 국제조직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 이후에 유엔 산하의 모든 기구도 정식 결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대만당국의 대표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조직에서 중국 대표권의 문제는 이미 완전한 해결을 보았으며, 대만의 유엔 재가입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대만당국의 일부 인사는 다시 유엔에 복귀하려고 제멋대로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의 분열을 기도하는 일종의 망상적 행동으로서 법리상이나 실제상으로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각국 정부와 유엔의 산하 조직이 대만의 이러한 기도를 잘 파악하여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

기타 정부 간 국제조직에는 원칙적으로 대만이 참가할 권리가 없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경제기구에 대만이 참가하는 문제는 중국정부가 유관방면과 달성한 협이나 양해에 따라 가능하다. 이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참가하며, 대만은 중국내 하나의 지역으로서 「中國臺北」(TAIPEI, CHINA)의 명칭으로 참가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수한 경우로서 기타 정부 간에 구성된 국제조직 및 국제활동에서 모델로 작용할 수는 없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관방면과 달성한 협이나 양해에 의하면, 민간성격의 국제기구에 중국의 국가적 조직이 「中國」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에 대만의 상응하는 조직은 「中國臺北」(TAIPEI, CHINA) 혹은 「中國臺灣」(TAIWAN, CHINA)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 (3) 중국 수교국과 대만간의 通航 문제

한 국가의 영공은 그 나라 영토와 분리할 수 없는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1919년 공포한 「파리항공협정」과 1944년 체결한 「시카고협정」은 모든 국가는 자기의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모든 항공사는 비록 개인 항공사일지라도 대만과 通航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에 관련되는 정치문제로서 일반적 민간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영 항공사도 당연히 대만과의 통항이 불가하며, 만약 민간 항공사가 대만과 통항을 하려면 반드시 그 국가의 정부는 중국정부와 협상을 하여야 한다.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 그 민간 항공사는 대만의 민간 항공사와 상호 운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상술한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이미 영국·독일·캐나다 등의 민간 항공사와 대만의 민간 항공사간의 통항을 동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이전에 대만과 통항한 일부 국가는 중국정부와 협상을 거쳐 대만과의 정부 성격의 통항을 민간 상업차원의 통항으로 변경한 뒤 계속 운항할 수 있다.

### (4) 중국 수교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문제

중국정부는 어떠한 국가든지 대만에 무기·장비를 판매하거나 무기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과 수교한 국가는 주권존중, 영토보전,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형식이나 구실로도 대만에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국제관계 준칙의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특히 세계평화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대국

은 유엔 안보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만해협 양안관계가 날로 완화되고 있는 정세 하에서 일부 국가는 스스로 국제협약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대만에 무기판매를 하여 해협양안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통일 사업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이롭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인민은 당연히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제업무 중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상호 주권존중 및 영토보존,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는 각국 정부가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과의 관계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맺 음 말

중국의 통일은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중국의 통일이 실현된 후 양안은 손을 맞잡고 협조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동으로 중화민족을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 「하나의 중국」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대만동포는 장차 조국의 기타 지역의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대만문제는 줄곧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불안정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다. 중국의 통일은 중국 자신의 안정과 발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각국의 진일보한 우호협조관계 강화에도 유익하고, 아·태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유익하다.

중국정부는 국가주권 보호 및 영토보전의 정의로운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 각국 정부와 인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조국통일대업의완성을촉진하기위하여계속분투하자

### 爲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鬥

중공중앙 총서기 江澤民 / 1995년 1월 30일

동지들, 그리고 친구들!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은 얼마 전 1995년도 양력설을 즐겁게 쇠고 이제 또 乙亥年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에 즈음하여 북경에 있는 대만동포들과 해당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안관계의 전망과 조국의 평화통일 대업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을 삼가 대표하여 2,100만 대만동포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드리며 대만동포들이 새해에 행복하고 萬事如意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입니다. 100년전, 1895년 4월 17일에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을 일으켜 부패한 청나라 정부를 강박하여 치욕스러운 「馬關條約」을 체결하고 대만과 澎湖列島를 강제로 빼앗아감으로써 대만인민들은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 식민지배 하에서 반세기나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인민들은 이 치욕의 역사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전에 중국인민들은 세계인민들과 같이 일본제국주의를 싸워 이김으로써 대만과 핑호열도는 다시 중국영토로 귀환되었고 대만동포들은 이때로부터 식민지배의 쇠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1949년 이후 대만은 다시 조국대륙과 분단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전면적 진흥을 촉진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중국 사람들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숭고한 목표입니다.

1979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대만동포에게 고함」을 발표한 이래 우리는 「和平統一·一國兩制」의 기본방침과 대만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鄧小平 동지는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동시에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一個國家·兩種制度)의 위대한 구상의 창조자입니다. 덩소평 동지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實事求是적 차원에서 시대적 특색을 가진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논단과 사상을 제시하고, 조국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방침을 확립하였습니다.

덩소평 동지는 중화민족의 자손이라면 모두가 조국의 통일을 바라며 분열은 민족의 의사에 어긋나므로 문제의 핵심은 조국통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입니다. 「두개의 중국」(兩個中國)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따위는 허용할 수 없으며 '대만독립'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만문제는 평화적 방식이든, 비평화적 방식이든 두 가지 해결방식 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內政이므로 외국이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적 방식으로 담판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려 하나, 또한 동시에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승낙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것을 승낙한다면 평화통일이 불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무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하나의 중국, 두개의 제도」(一國兩制)를 실시하여 국가의 주체는 사

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대만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먹어치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대방이 나를 먹어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 대만의 사회·경제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활양식을 변경하지 않으며 대만에서의 외국투자와 민간거래를 포함한 대만과 외국간의 민간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입법권과 사법권(終審權 포함)을 향유하며 자기의 군대를 두고 당·정부·군대 등 부문을 모두 자체로 관리합니다. 중앙정부는 대만에 군대와 행정인원을 파견하지 않을 뿐더러 중앙정부에 대만측 배정인원을 남겨둘 것입니다. 십여년 사이 「和平統一·一國兩制」 기본방침의 지도하에 해협 양안 동포, 홍콩·마카오 동포와 해외교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양안 간 인원왕래와 과학기술·문화·학술·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양안 경제가 서로 촉진하고 보완하고 이익을 주는 국면이 지금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안의 직접 「三通」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광범한 대만동포들, 특히 대만 상공업자들의 강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미래 경제발전의 실제적 수요로 되고 있습니다. 양안의 실무협상은 이미 진전을 가져왔고, 「汪辜會談」은 양안관계가 역사적인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만 섬 내의 분리경향이 발전되고 ‘대만독립’ 활동이 창궐해 지고 있는데 대해 모든 중국 사람들이 경각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부 외국세력들이 대만문제에 가일층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중국의 평화통일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태평양지구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여전히 複雜多變하지만, 전반적 추세는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모두 미래지향적 경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합국력의 증강을 선차적인 임무로 내세움으로써 다음 세기에 가서 자기의 세계적 위치를 제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안의 경제가 다 발전하고 있음으로 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1997년과 1999년에 우리는 연이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의 커다란 경사입니다. 중화민족은 桑田碧海를 거치고 온갖 고난을 겪어왔는데, 지금은 조국통일 대업을 완수하고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대만에 대하여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전체 중화민족에 대해서도 기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현 단계의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주장을 밝히려 합니다.

(1)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고 전제입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갈라놓지 못합니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그 어떤 언론이나 행동도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는 '分裂分治', '階段性兩個中國' 등등의 주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2) 대만이 외국과 민간차원의 경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해당 국제기구의 정관에 따라 대만은 이미 「中國臺北」의 명의로 아세아개발은행,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경제적 국제기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만이 「兩個中國」, 「一中一臺」를 목적으로 이른바 '국제적 생존 공간 확대'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대만동포들

과 지식인사들은 이런 활동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독립' 세력들이 평화통일의 진척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만 대만동포들은 전국 각 민족 인민들과 같이 위대한 조국의 국제적 존엄과 영예를 진정 충분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3) 해협양안의 평화통일 담판을 진행하자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평화통일 담판과정에서 양안의 각 당파·단체와 대표적인 인사들을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전제 하에서 양안 공식담판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만측과 토의하여 쌍방이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 어떤 문제도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전제 하에 어떤 문제도 상담할 수 있다”는 말에는 물론 대만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쌍방이 “양안의 적대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마치고 평화통일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담판할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이 담판을 진행할 것을 정중히 건의하며, 또한 우선 첫 걸음으로 쌍방이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양안의 적대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담판을 진행하고 합의를 달성하며, 이 기초 위에서 의무를 공동으로 담보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향후 양안관계발전 전망계획을 작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치담판의 명칭·장소·방식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한다면 쌍방이 다 접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승낙하지 않은 것은 결코 대만동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통일을 간섭하는 외국세력과 '대만독립'을 시도하는 획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동포, 홍콩·마카오동포들과 해외교포들이 우리의 이 원칙적 입장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5) 21세기 세계경제발전에 지향하여 양안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양안 경제를 같이 번영시키고 전체 중화민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견차이 때문에 양안의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주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계속 장기적으로 대만 기업인의 대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대만 기업인들의 일체 정당한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계속 양안 동포간의 상호 내왕과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와 신의를 증강하여야 합니다. 양안에서 직접 通郵·通航·通商을 진행하는 것은 양안 경제발전과 각 방면 교류의 객관적 수요이기도 하고 양안 동포들의 이익의 구현이기도 하므로 실제적 조치를 하여 직접 「三通」을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혜의 기초 위에서 대만 기업인의 투자권익 보호에 대한 민간차원의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6) 중화의 여러 민족자손이 공동으로 창조한 5,000년의 찬란한 문화는 어디까지나 전체 중국인들을 연결시키는 정신적 유대이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양안 동포들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으로 계승하고 발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7) 2,100만 대만동포는 臺灣省의 본적을 가졌든지 다른 省의 본적을 가졌든지 간에 모두 중국 사람이고 혈육동포들이고 형제들입니다. 대만동포들의 생활양식과 주인의식에 대한 염원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대만동포들의 일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외국 주재기구를 포함한 우리의 당·정부의 해당 부문에서는 대만동포들과의 연락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며 그들의 이익을 관심하고 돌봐주며 가급적으로 그들을 도와 곤란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만 섬 내에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기를 바라며 대만의 각 당파들이 이성적이고 전망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나서서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만의 각 당파, 각 계층 인사들이 양안관계 및 평화통일과 관련한 의견을 우리와 교환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이 와서 참관·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통일에 기여한 각 분야 인사들의 공훈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8) 우리는 대만당국의 지도자가 적당한 신분으로 대륙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도 대만 측의 초청으로 대만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으로 國是를 논할 수도 있고 먼저 일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으며 서로 다니면서 둘러보아도 유익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지 어떤 국제장소에 힘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척에 있고 서로 보이는 해협양안에서 오고가야하지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콩·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은 양안관계를 촉진하고 조국통일과 중화민족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그 공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범

한 홍콩·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이 양안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고 中華를 진흥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은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무한정으로 통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모든 애국동포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혁명선구자이신 孫中山 선생은 “통일은 중국 전체국민의 희망이다. 통일이 되면 전국인민들이 복을 누리고, 통일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단결하여 애국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통일을 견지하고 분열을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통일 대업의 실현을 촉진할 것을 호소합니다. 중화민족의 현대 발전과정에서의 이 빛나는 하루가 틀림없이 도래할 것입니다.

\* 『人民日報』 1995년 1월 30일



## 조국통일대업완성은전체중국인민의공동염원이다

### 完成統一祖國大業是全體中國人民的共同願望

국무원 총리 李鵬 / 1996년 1월 30일

동지들, 벗들!

江澤民 동지의 「조국통일대업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 분투하자」는 중요한 연설 발표 1주년에 즈음하여 수도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택민 동지 연설에 대한 체득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입니다. 해협양안의 분단상태를 끝마치고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들의 숭고한 사명이고 공동의 염원입니다. 1979년 이래 중국공산당에서는 대만에 대한 「和平統一·一國兩制」의 기본방침과 이에 상응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실행하여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양안의 사회 각계인사들과 광범한 동포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1월 30일 강택민 동지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대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도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이 연설에서 덩소평 동지의 「和平統一·一國兩制」에 관한 사상의 진수를 투철하게 천명하고 대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 단계에 양안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진전시키기 위한 8개항의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강령적

문건으로서 대만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려는 결심과 성의를 구현하였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8개항 주장의 제1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고 전제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절대 갈라놓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8개항 주장의 핵심입니다. 중국인민은 일체의 ‘대만독립’ 언행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分裂分治’, ‘階段性兩個中國’ 등 「하나의 중국」에 위배되는 언행도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국대륙과 대만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당국의 이른바 ‘兩岸分裂分治’는 중국의 주권이 이미 분열되었고 해협양안은 ‘두개의 대등하고 서로 종속되지 않은 정치실체’로서 이미 각기 ‘독립된 국제법인’으로 되었다고 고취하는 것이며,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 주권국가만이 참가하는 국제기구에 참가하고 ‘이중승인’을 받을 것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형식을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본질을 떠날 수 없으며, 대만당국의 근본목적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고 ‘대만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인민과 대만당국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연설에서 일련의 건설적인 건의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강택민 동지는 “양안의 적대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마치고 평화통일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답판을 진행할 것을 정중하게 다시한번 건의하였고 첫걸음으로 쌍방이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양안의 적대상태를 공식적

으로 종결"시킬 문제를 가지고 담판하고 합의를 달성하며, 이 기초 위에서 공동으로 의무를 담보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며 향후 양안관계 발전계획을 작성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건의는 쌍방이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양안관계의 발전에 훌륭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착안점을 두고 대만동포들의 절실한 이익문제 해결도 고려하면서, 평화통일은 과정이 필요하므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건의는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성의를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대만 섬 내외의 지식 인사들의 주목과 찬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만당국은 고의로 조국을 분열시키려는 계획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술한 중요한 건의에 대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에 맞지 않는 선결조건을 제출하고 해협양안 담판에 온갖 장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연설에서 21세기 세계경제발전예 지향하여 양안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양안 경제를 공동으로 번영시키고 전체 중화민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며 양안동포들이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으로 계승·발양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안의 직접 「三通」을 실현하며 양안동포들의 상호 왕래와 교류를 계속 강화하여 이해와 신임을 증진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만정책이 중화민족의 전체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방침을 장기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평화통일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협양안의 동포들은 형제와 같고 같은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택민 동지의 연설에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혈육적 감정과 간절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만의 각 당파와 각계 인사들이 양안관계와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우리와 나누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지만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승낙은 시종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통일을 간섭하는 외국세력과 '대만독립'을 추진하려는 획책에 대비한 것이지 절대 대만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통일은 전적으로 중국의 內政이므로 그 어떤 외국세력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당과 정부는 대만 공상업자들이 조국대륙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격려·지지하고 대만동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동포들의 생활양식과 주인의식에 대한 염원을 충분히 존중해주며 광범한 대만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양안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택민 동지의 중요한 연설은 해내외 중국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국제사회의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양안관계와 조국통일 진전 과정에 있어서 심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당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조국분열의 입장을 고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항하면서 민족의 大義를 돌보지 않고 외국의 중국반대 세력과 서로 이용하며 '생존 공간 쟁취'를 고취하고 '두개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획책함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기초를 직접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안관계에 엄중한 좌절과 후퇴를 초래하였습니다.

대만인민을 포함한 전국인민들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중국의 통일을 파괴하는 장본인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민들은 분열을 반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대만당국의 일부 지도자들의 역행 행위는 이미 양안관계를 불안정상태로 전락시키고 대만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대만동포들의 절실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만당국이 "양안관계가 완화"된 것 같은 상황을 일부러 조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개 중국'을 획책하고 '탄성적 실무외교'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군사장비를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으로서 그들이 '완화'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대만독립' 추진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만당국이 말로서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두개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획책을 포기해야만 양안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만당국의 조국분열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 한 우리의 분열 반대, '대만독립' 반대 투쟁도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하여 조성되는 모든 후과는 물론 분열활동을 감행하는 대만당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대만 지도자 선출방식 변경문제가 해내외의 광범한 중국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재천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입니다. 대만 지도자 선출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든지 막론하고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만의 지도자는 중국의 한개 지구의 지도자라는 사실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그 나

라 전체 인민들의 것입니다. 臺灣, 澎湖, 金·馬 지구를 포함한 전 중국의 주권은 결코 대만의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12억 2,000여만 중국 인민의 것이며, 대만의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대만 지도자 선출방식의 변경을 이유로 조국분열 활동에 합법적 허울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 어떤 외국의 중국반대 세력이든지 이를 구실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대만독립'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와 전체 중국인민의 단호한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대만동포의 이익을 중화민족의 전체 이익과 대립시키려는 일체의 획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일찍이 외국의 침략과 모욕을 받을 대로 받은 중국인민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유구한 애국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전체 중국인민들은 반드시 중국의 통일대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중국자체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鄧小平의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중국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전면적으로 진보하고 종합국력이 강대한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평화공존의 5개항 원칙의 기초 위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교류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 평화발전 및 진보사업에 응분의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계획 실시기간에 중국정부는 전후하여 홍콩·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대만문

제를 해결하여 중국의 통일대업을 완수하는 과업이 전체 중국인민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해협양안의 중국 사람들은 단결하여 중국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합니다. 통일되고 부강한 중국은 인류의 평화 및 진보사업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새해에 들어서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이 곧 다가오는데 나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하여 조국통일대업에 진력하고 있는 동지들과 벗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드리며, 대만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유쾌하고 萬事如意하시기 바랍니다.

\* 『人民日報』 1996년 1월 31일

## 「하나의중국원칙과대만문제」통일백서

### 《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白皮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 신문판공실 / 2000년 2월 21일

#### 서 문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은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국민당 통치 집단은 중국의 臺灣省에 물러가 외국세력의 지지 하에 중앙 정부와 대치함으로써 대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다. 50여 년 동안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히 분투하여 왔다. 1979년 이후 중국정부는 커다란 성의를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一國兩制」의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실행하는데 진력하였다. 1987년말 이후 양안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원내왕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90년대 이래 대만당국의 지도자 李登輝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점차 포기하고 '두개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분열정책을 극력 실시하고 나아가서 양안관계는 "국가와 국가, 적어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데 까지 발전함으로써 양안의 평화통일의 기초를 엄중히 손상시키고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화인민의 근본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구의 평화와 안정도 침해하였다. 중국정



부는 시종여일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가려는 모든 획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정부와 이등회를 수반으로 하는 분열세력 간의 투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느냐, 아니면 '두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1993년 8월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백서를 발표하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문제의 유래와 중국정부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이제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진일보하게 밝히고자 한다.

### 1. 「하나의 중국」의 사실과 법리 기초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인민들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법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대만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과 법률은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895년 4월 일본은 중국침략전쟁을 통하여 청나라 정부를 강박하여 불평등한 「馬關條約」을 체결하고 대만을 강점하였다. 1937년 7월 일본은 전면적인 중국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1941년 12월 중국정부는 「중국의 대일본 선전포고」에서 중국은 「마관조약」을 포함한 중·일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조약·협정·계약을 폐지하고 대만을 수복한다고 각 나라에 통고하였다. 1943년 12월 중·미·영 3국 정부가 발표한 「

카이로선언」에서는 일본은 중국에서 절취한 동북·대만·펑호열도 등을 포함한 땅을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45년 중·미·영 3국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후에 소련이 참가한 「포츠담선언」에서는 “카이로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년 8월 일본은 투항을 선포하고 「일본투항조항」에서 “포츠담선언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승낙하였다. 동년 12월 25일 중국정부는 대만·펑호열도를 수복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행사를 다시 회복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하여 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되었으며, 이로부터 중화민국은 역사적 지위를 마감하였다. 이것은 국제법 주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 하에 신정권이 구정권을 대체한 것으로서 중국의 주권과 고유의 영토변경이 그것과 더불어 변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연히 대만의 주권을 포함한 중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향유·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당 통치집단이 대만으로 물러간 후 비록 그 정권이 계속 「중화민국」과 「중화민국정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대표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전적으로 상실하였으며 사실상 시종 중국영토의 하나의 지방당국에 불과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수립 당일에 “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본 정부는 평등·호혜 및 영토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등 원칙을 준수하려는 모든 외국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각국 정부에 선포하였다. 이어서 또 유엔에

전보를 보내어 국민당 당국은 “이미 중국인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상실하였고 중국을 대표할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만당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신 중국이 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원칙이다.

중국정부의 상술한 주장은 당시 미국정부의 방해를 받았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950년 1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기타 동맹국들이 1945년 이후의 4년간 중국의 대만섬에 대한 주권행사를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6월 조선전쟁이 발발된 후 미국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대만을 강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만 지위미정’ 등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놓고, 그 후에는 또 점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중승인’을 획책하고 ‘두개 중국’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당연히 단호히 반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고 견지하였다. 바로 외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수호하는 투쟁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성립되었다. 상술한 주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본 내용이며 그 핵심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1949년 후의 30~40년 기간 동안에 대만당국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합법적 지위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은 하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두개 중국’과 ‘대만독립’에 대해 반대하여 왔다. 이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양안의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근본문제에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찍이 1958년 10월 중국인민해방군이 金門을 포격하는 전투를 진행할 때 毛澤東 주석은 대만당국에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지 두개가 아니다. 이점에 대해 당신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 지도자의 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979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함」 글에서는 “대만당국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여 왔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입장이며 합작의 기초이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정부가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엄정한 입장과 합리적 주장은 날이 갈수록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점차 보편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1971년 10월 제26기 유엔총회에서는 2758호 결의를 채택하여 대만당국의 대표를 구축하고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의석과 일체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1972년 9월 중·일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명하고 외교관계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하고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조에서 규정한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1978년 12월 중·미 두 나라는 국교수립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라는 것을 승인한다”,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

를 수립한 161개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고 하나의 중국 태두리 내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다루겠다고 승낙하였다.

## 2.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고 전제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정부의 대만정책의 초석이다. 鄧小平 동지의 창도 하에 중국정부는 1979년부터 평화통일의 방침을 실행하고 점차적으로 「一國兩制」의 과학적 구상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방침을 확립하였다. 이 기본방침과 관련 정책의 요점은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승낙하지 않으며, 양안인원의 왕래와 경제·문화 등 제반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양안의 직접적인 通郵·通航·通商을 조속히 실현하며, 평화적 담판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무슨 문제든지 협상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중국의 주체(중국대륙)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만은 기존의 자본주의제도를 장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며, 통일 이후에 대만은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며, 중앙정부는 군대와 행정인원을 대만에 파견하지 않으며,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중국사람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방침과 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기본입장과 정신도 관철하고 대만동포들이 주인으로 되어 대만을 관리하려는 염원도 충분히 존중한 것이다. 江澤民 주석은 1995년 1월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진전을 위한 8개항의 주장을 천명하면서 “하나의 중

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고 전제이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대만문제는 중국 內戰에서 연유된 문제이다. 오늘까지도 양안의 적대적 상태는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평화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양안 사회의 공동의 발전에 유리하고 양안 동포들의 감정의 융합과 단결에 유리하므로 가장 좋은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1979년 대만당국이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전제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의 방침을 실행한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장기간 대만당국을 지지해오던 미국정부가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라고 승인한 점도 고려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리한 것이었다. 중국정부는 평화통일 방침을 실행함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무력사용 포기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시종 밝혀왔다. 무력사용 포기를 승낙하지 않는 것은 결코 대만동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만독립」을 시도하고 중국의 통일을 간섭하는 외국세력을 겨냥한 것이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무력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에 부득불 취해야 할 선택인 것이다.

대만에 대해 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불가분리성을 승인하는 표징으로

되므로 양안 쌍방은 공동의 기초와 전제를 갖게 되며 평등한 협상을 통하여 쌍방의 정치상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중국의 영토에서 떼어내 가려 한다면 평화통일의 전제와 기초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 말한다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승낙하였으면 중·미 두 나라 정부 사이의 3개 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대만과는 문화·상무 및 기타 비정부적 관계만 가지고, 소위 '대만독립', '두개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반대하고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가 평화통일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외부조건을 파괴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지구와 세계 기타지구의 나라들에 대해 말한다면, 대만해협이 정세는 물론 아·태지구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관련 국가 등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아·태지구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중국과 각 나라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에도 유리하며 아·태지구와 세계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여 왔다.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담판을 진행하고자 거듭 건의하였다. 대만의 정치현실을 충분히 감안하고 평등한 담판의 지위와 관련한 대만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양당의 대등한 담판을 진행하며 양당 담판에 대만 각 당파·단체의 대표적인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시종 '중앙과 지방의 담판'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또한 먼저 정치대화를 포함한 대화로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정치담판의 절차 협상으로 넘어가서 공식담판의 명칭·의제·방식 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정치담판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였다. 정치담판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양안의 적대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담판을 진행하고 합의를 달성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향후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998년 1월 중국정부는 양안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모색·확대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 양안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 특히 양안담판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또한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대만 측에 명확하게 밝혔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하여 쌍방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동으로 통일을 협상하기를 바란다.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일련의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1987년 말 양안의 단절상태가 타파된 이후 1999년 말 현재까지 중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관광·교류를 진행한 대만동포는 연인원수로 1,600만 명에 달하며 양안의 간접무역 총액은 1,600억 달러, 대만상인이 중국대륙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금액과 실제 투입금액은 각기 440억 달러와 240억 달러에 달하며, 양안의 通郵·通信은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으며, 양안의 해상·공중 通航도 부분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 지방정부는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대만동포들의 정당한 권익을 법에 의해 보장하였다. 협상을 통하여 양안동포들의 내왕과정



에서 파생되는 구체적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는 실무협상에서 각자가 구두방식으로 “해협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표현에 합의를 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쌍방기구의 지도자들은 1993년 4월 성과적으로 「汪辜會談」을 진행하고 양안동포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의 지도자들이 상해에서 회담함으로써 양안의 정치 대화를 시작하였다. 협상은 평등한 지위에서 진행되었다. 사실이 증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서 양안이 평등하게 담판할 수 있는 적당한 방식을 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홍콩·마카오가 중국에 귀환된 이후 홍콩과 대만 사이, 마카오와 대만사이의 왕래와 교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초 위에서 계속 유지·발전되고 있다.

### 3.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대만의 분열세력들은 계획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1998년 대만당국의 지도자로 당선된 李登輝는 당시에 대만당국의 기본정책은 “두개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이며, “우리는 일관되게 중국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이등회는 점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떠나 두개의 정부, 두개의 대등한 정치적 실체, 대만은 이미 주권적으로 독립한 나라, 현 단계는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과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기라고 하면서 자기는

“시종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식언하였다. 이등회는 ‘대만독립’ 세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대만독립’ 사조가 만연되도록 이른바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분열세력과 그 활동을 방입하고 부추겼다. 이등회의 지도하에 대만당국은 일련의 실제적인 분열조치를 취하였다. 대만의 정권체제면에서 ‘두개 중국’ 제작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헌정개혁’을 통하여 대만을 ‘독립한 정치실체’로 개조하려 시도하였고, 대외관계면에서는 ‘두개 중국’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생존 공간 확대’ 활동을 크게 벌리었다. 1993년 이래 연속 7년간이나 이른바 ‘유엔참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군사 면에서는 외국에서 선진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전략지구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을 강구하고 미국·일본과 모종 형태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시도하였다. 사상문화면에서는 대만동포, 특히 청년세대의 중국인 의식과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말살하려 시도하고 대만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오해와 격리감을 조성하고 양안동포의 사상·문화적 유대를 단절하려 시도하였다.

1999년 이후 이등회는 분열활동을 진일보 확대하였다. 5월에 그는 「대만의 주장」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중국을 7개의 ‘충분한 자주권’을 향유하는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7월 9일에 그는 공공연하게 양안관계를 “국가와 국가, 적어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왜곡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양안관계 특히 양안의 정치대화와 담판의 기초를 파괴하고 양안의 평화통일의 기초를 파괴하려 시도하였다. 이등회는 이미 대만 분열세력의 총대표자, 대만해협 안정국면의 파괴자, 중·미 관계발전의 걸림돌로 전락되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지구의 평화와 안정의 침해자로 되었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며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이등회를 대표자로 하는 대만분열 세력의 온갖 분열활동에 대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단호히 투쟁하고 있다.

1995년에 이등회가 이른바 '개인'의 명의로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정부는 反분열, 反대만독립의 투쟁을 단호히 전개하고 미국정부가 공공연히 이등회의 미국방문을 허용하고 중·미 3개 공동성명에서의 승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강렬한 항의를 제기하고 엄정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투쟁은 중국정부와 인민들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수호에 대한 굳은 결심과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중대하고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대만동포들은 '대만독립'의 심각한 위해성을 진일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등회의 국제적 분열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일부 '대만독립' 세력들은 할 수 없이 일부 극단적 분열주장을 포기하였다. 국제사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 실시의 필요성에 진일보 유의하게 되었고 미국정부는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두개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이 주권국가가 참가하는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대답하였다.

李登輝가 '兩國論'을 내놓은 이후 중국정부와 인민들은 더욱 단호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대만의 분열세력들이 이른바 '법률' 형식으로 '양국론'을 추진하는 활동에 대비하여 중국정부의 해당 부문에서는 이것은 더욱 엄중하고 위협한 분열조치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며 만일 이 음모가 달성된다면 중국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해 진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 투쟁은 해내외의 중국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국론'을 매도

하는 강대한 형세를 이루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미국정부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것과 대만에 대하여 「三不支持」 승낙을 재천명하였다. 대만당국은 하는 수 없이 '양국론'에 따라 이른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대만분열 세력들은 여전히 이른바 헌법제정, 헌법 해석 또는 입법 등 여러 가지 형식과 이른바 법률 형식으로 '중화민국' 명의 하에서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대만분열 세력들이 자기들의 분열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중·미관계를 파괴하고 중·미의 충돌과 대립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만해협 정세는 여전히 엄중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국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구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여전히 변함없이 「和平統一, 一國兩制」의 방침을 견지하며 강택민 주석이 제출한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8개항의 주장을 견지하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만에 그 어떤 명의로 대륙에서 갈라져 나가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외국이 대만을 강점하거나 대만당국이 담판을 통한 평화적 통일문제 해결에 무한정으로 거절한다면 중국정부는 하는 수 없이 무력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가능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것이다. 중국정부와 인민은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충분한 결심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인·방임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이다.

#### 4.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계되는 약간의 문제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분열되지 않았고 해협양안은 두개의 국가가 아니다. 李登輝가 내놓은 '兩國論'을 포함한 대만당국의 '兩個中國' 주장의 이른바 이유는 다름 아닌 1949년 이후 해협양안은 이미 갈라져 서로 예측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1991년 이후 대만에는 중국대륙과 관계가 없는 정권체제가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대만이 '중화민국'의 명칭으로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해협양안이 이미 두 개 국가로 분열되었다는 결론을 결코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주권은 갈라놓을 수 없다. 영토는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이다. 한 국가의 영토 안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중앙정부 밖에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하여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됨으로써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의 주권을 향유·행사하고 있다. 해협양안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변경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도 변경된 적이 없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는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하고 있다. 셋째, 대만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로 외국세력이 간섭하고 대만분열 세력들이 장애를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해협양안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대만에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 줄 수는 없는 것이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대만의 분열세력과 일부 외국의 중국 반대세력들이 이런 상태를 개변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중국정부와 인민들이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를 공민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대만분열 세력들이 ‘主權在民’이라는 구실로 대만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그것은 헛된 일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둔다. 우선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법적 지위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막론하고 모두 확정된 것으로서 공민투표의 방식으로 自決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主權在民’이라는 것은 주권이 한 국가의 전체 인민에게 속한다는 말이지 어느 일부분 또는 어느 지구의 인민에게 속한다는 말이 아니다. 셋째로, 역사적으로 대만은 국가로 된 적이 없다. 1945년 이후 대만은 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외국의 강점 밑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자결권 행사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1945년 중국이 대만을 수복한 후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를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민투표 실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의 전도는 한 가지뿐으로서 조국대륙과의 통일로 나아가야 하지, 결코 분열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 누가 이른바 공민투표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간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만 인민들을 재난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동·서독 모델을 대만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없다. 대만의 일부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두개 나라로 분

열되었다가 다시 통일된 이른바 동·서독 모델로 양안관계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오해
 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후 독일의 분열과 양안의 일시적 분단
 은 두 개의 같지 않은 성격의 문제로서 주로 다음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兩者가 형성된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영국·프랑스·
 소련의 4개 전승국은 「독일의 패전에 대비하여 최고정부권력
 을 인수 관리함에 관한 성명」과 그 후의 포츠담협약에 근거
 하여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다. 냉전이 시작된 후 독일통일문
 제는 미·소 양국이 유럽에서 대립하는 초점으로 되어 미·
 영·프 점령구와 소련 점령구에 각기 연이어 독일연방공화국
 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세워졌으며, 독일은 두개 국가로 분열되
 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독일문제는 전적으로 외부의 요소로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중국내전에서 연유되어 온
 문제이므로 내정문제인 것이다. 둘째, 국제법상 兩者의 지위
 가 다르다. 독일의 분열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戰後 일련
 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포츠담공고 등 국제조약에서 일본은 중국에서
 절취한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양자가 존재하는 실제상황이 다르다. 미·소 양국이 대립하는
 배경 하에서 두 개 독일에는 각기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부득
 불 서로 승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병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
 며, 이등회가 집권하기 이전의 대만당국과 집권초기의 이등회
 도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고 '두개 중국'을 반대하였으며,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문제와 대만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없으며, 동·서독 모델을 그대로 옮겨 대만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양안 간 담판을 주장하는 최종목적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담판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臺灣獨立', '兩個中國', '兩國論'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배치되고 통일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국정부의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테두리 안에서는 대만 측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도 담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정치담판을 통하여 평화통일 과정에서 대만의 국제적 신분에 맞는 경제·문화·사회적 대외 활동공간과 대만당국의 정치지위 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른바 '民主와 制度의 투쟁'은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구실이다. 최근년 간에 대만당국은 "대륙의 민주화는 중국의 재통일에서의 관건이다", "양안문제의 진짜 본질은 제도의 경쟁이다"고 거듭 표시하였다. 이것은 통일을 지연시키고 저해하기 위한 구실이며 대만동포들과 국제여론을 기만하는 수법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적 민주를 실현하는 이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해 오고 있다. 「一國兩制」의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해협양안에서의 두 가지 사회제도의 공존을 허용하고 서로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안동포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민주적인 것이다. 양안의 다른 사회제도는 평화통일의 장애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대



만과 홍콩·마카오의 다른 특징을 감안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한 후 대만에서 홍콩·마카오보다 더욱 느슨한 '일국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 대만당국이 '민주와 제도의 투쟁'으로 통일을 저해하고 조국대륙에 거주하는 12억 사람들에게 대만의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하려 망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호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것이다. 민주에 대한 요구가 통일을 거부하는 이유로 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의 양안 쌍방 의견차이의 본질은 민주 실시 여부나 어느 제도의 선택 실시의 투쟁이 아니라, 통일이나 아니면 분열이나 하는 투쟁인 것이다.

#### 5.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데 나서는 약간의 문제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찬사를 표한다. 우리는 1993년 8월에 발표한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백서의 제5장 '국제업무 중 대만에 관계되는 몇 가지 문제'에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대만과의 관계, 국제기구와 대만과의 관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 대만과의通航,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에서의 입장과 정책을 천명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당 입장과 정책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대만은 유엔과 기타 주권국가만이 참가하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유엔은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정부 간의 국제기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 후에 유엔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는 이미

철저히 해결되었으며 대만당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당국은 유엔의 2758호 결의가 중국대표권 문제만 해결하고 대만의 대표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엔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兩個中國', '一中一臺'를 만드는 분열행위로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유엔헌장의 취지·원칙과 해당 유엔결의를 준수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등 국제관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만이 유엔과 주권국가만 참가하는 기타 국제기구에 참가하려는 것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해당 국제기구의 성격·정관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동의·접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구별 참가를 허용하는 정부 간의 국제기구에 대만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안배를 하였다. 대만은 중국의 한 지구로서 「中國臺北」의 명칭으로 아시아개발은행(영문 명칭은 TAPEI, CHINA)과 아·태경제협력체(영문명칭은 CHINESE TAIPEI) 등 기구에 참가하였다. 1992년 9월 세계무역기구의 前身인 관세 및 무역협정 이사회 주석은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GATT 가입한 후 대만은 「臺灣·澎湖·金門·馬祖 單獨關稅區」(「中國臺北」이라 약칭)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대만의 가입을 심의할 때 상술한 성명에서 확정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상술한 특수한 안배는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활동에서 모방할 수 있는 모델로 되지 않는다.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는 대만에 무기를 팔지 못하며 또한 대만과 어떤 형태의 군사동맹도 맺지 못한다.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는 모두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어떤 형식이나 구실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대만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돕지 말아야 한다.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중·미 3개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가 건전히 온당하게 발전하는 기초이다. 20여년 이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시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중·미국교수립과 양국관계 발전, 그리고 대만정세의 상대적 안정을 가져오는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이 스스로 「8.17성명」에서 중국에 한 엄숙한 승낙을 거듭 위반하고 대만에 선진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무단히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 국회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념바 「대만안전보장법」을 꾸며내어 대만을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넣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고 중국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중국의 평화통일의 진척을 저해하는 동시에 아·태 지구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안정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의 대외왕래 활동을 처리한다. 대만당국은 국제적으로 이른바 '실무외교'를 추진하고 '국제적 생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두개의 중국'(兩個中國)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제작하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응당히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대만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와 대만동포들의 실제이익을 감안하여 대만이 외국과 민간성격의 경제·문화 거래를 가지는데 대하여 동의하고, 하나의 중국 전제 하에서 많은 신축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대만이 외국과 경제무역, 문화왕래를 진행하는데 편리를 제공

하였다. 예컨대 대만은 「中國臺北」의 명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다. 사실상 대만은 세계의 많은 국가·지구들과 광범위한 경제무역과 문화적 연계를 갖고 있는데, 해마다 외국에 나가 관광·무역·연수를 하고 학술·문화·체육 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대만동포들이 연인원수로 100만명에 달하며 연간 수출입 총액은 2,000여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대만동포들의 민간 대외교류활동 증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만의 정상적인 경제무역과 문화활동의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정부는 대만동포의 외국에서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대만인민은 우리의 혈육동포들이다.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외국에서의 대만동포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데 진력하여 오고 있다. 외국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은 대만동포와 연계를 강화하고 대만동포들의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고 대만동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줄곧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가급적으로 그들을 도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중국대사관에서는 쿠웨이트에 체류하는 대만 노무일군들을 도와 안전하게 피난시켰고, 일본 오사카에 지진이 발생하자 중국대사관은 제때에 대만동포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었다. 캄보디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자 중국대사관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상인들과 관광객들을 적극 도와 안전하게 이전·철수시켰다. 상술한 실례는 중국정부의 대만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구현하고 있다. 해협양안이 통일되면 대만동포들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상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충분히 향유하게 될 것이다.

## 맺 는 말

중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화민족은 대대로 중국영토에서 살아오면서 각 민족이 서로 융합하여 강대한 응집력을 형성하고 통일을 숭상·수호하는 가치관념을 형성하였다. 중국은 기나긴 역사과정에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지방할거가 나타나고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특히 근대에 와서 외국 열강들의 침략과 분할의 수치를 당하였지만 통일은 시종일관 중국 역사발전의 주류였다. 매 차례의 분열은 바로 통일로 복귀되었고, 이것은 국가의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영광스러운 애국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만동포들은 외국의 대만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공훈을 쌓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 중국인민들은 쉽지 않게 이룩한 민족독립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여 왔다. 중국 5,000년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심어 놓았다.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시종 여일하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며 미국정부가 중·미 3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만문제와 관련한 제반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한 엄숙한 승낙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 중국정부가 연이어 홍콩·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함에 따라 전 중국인민들은 대만문제를 무기한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을 포함한 전 중국인민들의 공동 노력 하에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

## II. 출입국 · 세관

---





## 대만적십자회와의합작에관한건의

### 愿與臺灣紅十字會一起爲統一祖國努力

중국적십자회 총회 회장 錢信忠 / 1981년 10월 2일

중국적십자회 총회 회장 錢信忠은 오늘 담화를 발표하면서 중국적십자회는 대만적십자회의 동료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과 부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기여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錢信忠은 일찍이 1979년 2월 개최된 중국적십자회 제3차 대표회의에서 대만동포들이 조국 內地의 친척·친구들과 연계하고 상봉하는 것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해 7월 중국적십자회 총회는 대만적십자회에 전보를 보내고 쌍방이 상술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건의하였다.

오늘 전신충은 담화에서 또 한번 중국적십자회 총회를 대표하여 대만적십자회의 동료들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다.

1. 중국적십자회 총회는 대만적십자회와 사람을 찾고 편지를 전해주는 업무를 둘러싸고 합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대만적십자회에서 지금 조국대륙의 인민들을 위하여 상기 업무를 취급하기 어렵다면 중국적십자회 총회에서 대만동포들을 위하여 이 업무를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2. 중국적십자회 총회는 대만동포들이 조국 內地의 친척·친구들과 연계하고 상봉하는 것을 도와줄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적십자회가 이 분야에서 합작하기 불편하다면 중국적십자회는 대만적십자회에서 파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을 접대·안내하고 그들의 자유 왕래를 보장할 것이다.

3. 우리는 적십자회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여 방문하고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십자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4일

##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여행접대방법에관한통지

### 關於臺灣同胞來祖國大陸探親旅遊接待辦法的通知

國務院 辦公廳 / 1987년 10월 16일

1. 조국정부는 대만동포가 대륙에 친척방문과 여행하러 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유 왕래를 보장한다.
2. 대만동포가 조국대륙에 친척방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홍콩지구에서는 중국 외교부 주홍콩비자사무처가 처리하거나 또는 香港中國旅行社가 대리로 처리한다. 미국·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는 주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여행증명을 처리한다.
3. 대만동포가 대륙을 방문할 때 세관은 상술한 여행증명에 의거하여 그 휴대 수화물품을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 수량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통관시킨다.
4. 대만동포는 대륙에서의 비행기표·기차표·선박표 구입과 호텔 투숙에 있어서 대륙 여행객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5. 國家外換管理局이 공인한 자유태환의 외화를 대만동포가 휴대 반입하거나 태환할 경우에 액수의 제한은 없다. 中國銀行과 國家外換管理局의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은행 및 공항·호텔·상점의 태환소에서는 태환업무를 처리한다. 대만동포는 상술한 은행에서 외화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화 이자를 받고 출납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다.

6. 대만동포는 대륙동포와 마찬가지로 각지를 자유롭게  
참관하거나 여행할 수 있다.

7.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대만동포는  
당연히 조국정부의 제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의 사회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17일

## 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표시관련담화

### 中旅社表示爲臺胞提供周到服務

中國旅行社 總社 總經理 / 1987년 10월 19일

중국여행사 總社 총경리는 1987년 10월 19일 친척방문·관광을 하는 대만동포 접대문제와 관련하여 신화사 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대만당국은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다고 선포하였는데 향후 갈수록 많은 대만동포들이 조국대륙에 올 것으로 예견한다. 중국여행사는 더욱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대만동포들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오든지 단체로 오든지 간에 뜨겁게 접대할 것이다.

중국여행사는 대륙에 온 대만 동포들의 식사·투숙·교통·관광·쇼핑 등에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충분한 접대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여행사는 대륙에 온 대만동포들이 친척 친구를 찾거나 치료를 위해 의사를 구하는 일등을 도와 줄 수 있다.

해협양안에서 직접 通航을 하기 전에 홍콩중국여행사가 대륙에 오는 대만동포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대리 발급해주고 비행기·기차·선박표와 호텔 등 예약을 포함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대만동포들이 필리핀·태국·일본·캐나다·미국·브라질 등 국가를 경유해 올 경우 해당 국가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과 싱가포르 상무대표처에서 대륙에 올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외에 각국에 있는 중국여행사의 대리  
여행사에서도 기타 여행업무를 취급한다.

# 대륙방문대만동포에대한서비스제공구체방법

## 公布具體辦法爲探親臺胞提供各項服務

香港中國旅行社 / 1987년 10월 21일

홍콩중국여행사는 10월 21일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과 여행을 하는 대만동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접대 방법과 주의사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중국여행사는 금년 10월 16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에서 공포한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여행접대방법에관한통지」에 근거하여 內地 관계부문의 위탁을 접수하는 바, 금년 11월 3일부터 대만동포 여행증명서(증명서 명칭은 「臺灣同胞旅行證明」, 이하 동일)발급을 직접 취급한다. 이 사이에 대륙에 친척방문 여행을 갈 때는 기존의 방법대로 수속한다.

2. 홍콩중국여행사에 와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때의 수속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때 대만여권 또는 臺灣地區出入境證 및 홍콩인민入境사무처에서 발급한 입경허가서 2장을 휴대해야 한다.

② 신청표 1장을 기입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최근 촬영한 2인치 탈모 증명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대만동포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出境할 때 內地(口岸)에서 회수한다.

④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중복 수령 또는 사칭 수령하

거나 개조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되며 증명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⑤ 동행하는 어린이와 부모가 동일한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명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⑥ 대륙에서의 친척방문 여행기간에 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 중국여행사나 호적관리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⑦ 홍콩중국여행사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수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을 넘기지 않으며 수속비는 홍콩달러로 30원이다.

3. 內地 관계부문의 통지에 근거하여 홍콩중국여행사가 대만동포여행증명서 수속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후 내지의 모든 출입경(口岸)통과지점에서는 대만동포를 대상으로 한 중국여행증명서 수속을 정지한다.

4. 홍콩중국여행사는 위탁에 의하여 대만동포여행증명서 수속을 하는 외에 대만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① 대륙행 왕복 비행기표·기차표·선박표의 예약 및 구매와 각 지역 사이의 연락수송업무를 취급해준다.

② 홍콩과 內地의 호텔을 예약해준다.

③ 수화물 위탁운수업무와 영접·배웅업무를 제공한다.

④ 귀향 친척 방문하는 대만동포들이 휴대하는 가전제품 등 면세품을 판매한다.

⑤ 대만동포 귀향관광단을 조직한다.

⑥ 대만동포들이 대륙의 친척 친지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

홍콩중국여행사는 대륙 각 지방의 중국여행사와 밀접한 업무연계를 가지고 있고 내외로 연결되고 서로 배합하는 일



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만동포들이 內地로 귀향하는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대만동포는 內地에서 친척방문 여행을 할 때에도 수시로 각 지역의 중국여행사가 가서 탑승권 구입, 호텔 예약, 기타 여행수속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요금을 지불할 때 대륙의 여행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5. 대륙을 방문하는 대만동포는 현행규정에 따라 몇 개의 면세품을 휴대할 수 있다.

香港中旅貿易有限公司가 면세품을 취급(홍콩중국여행사 각 지사에 상점 설치)하여 여행객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물을 살수도 있고 홍콩에서 선불하고 물품인수증을 가지고 內地의 물품인도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도 있다. 홍콩중려무역유한공사는 지금 北京·上海·廣州·福州·武漢·西安·青島·泉州·廈門·中山·拱北·深圳·海口·汕頭·流沙·梅縣·開平·江門 등 지역에 18개의 화물 인도처를 두고 있는데, 조만간 대만동포들의 수요에 따라 몇 개의 물품 인도처를 증설할 것이다.

6. 홍콩중국여행사에서는 대만동포 접대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대만동포접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문 취급하는 「대만동포업무부」를 설립하였고 이제 곧 「대만동포귀향 친척방문여행편람」을 발간하여 무료로 증정할 것이다.

7. 홍콩중국여행사와 각 지사, 사무처는 모두 대만동포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업무를 취급한다. 홍콩 섬과 구룡 및 신계지역에 14개 지사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 홍콩중국여행사의 미국(로스앤젤레스), 영국, 태국, 필리핀(마닐라),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의 해외지사에서도 대만동포들이 홍콩에 오거나 홍콩을 경유해 대륙에 친척방문

여행을 하는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8. 홍콩중국여행사는 대만 및 홍콩에 있는 여행사들과 잘  
협력하여 대만동포들이 홍콩에 오거나 대륙에 친척방문 여행  
을 하는데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홍콩중국여행사는 대륙 동포들이 대만에 가서 친척방문  
여행을 하거나 양안 동포들이 홍콩에서 상봉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22일

## 대만동포의대륙친척방문휴대물품완화에관한규정

### 關於臺胞回大陸探親携帶物品的談話

海關總署 / 1987년 10월 23일

오늘 기자가 海關總署의 해당 부문의 책임자를 방문해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海關은 대륙에 친척방문으로 출입경하는 대만동포들의 수화물에 대하여 自用하는 합리적 수량의 범위 내에서 그 허용범위를 넓혀 통관시켜 줄 것이며 이미 수속을 간소화하여 대만동포들의 출입경에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동포가 매 양력연도 內(이하 '1년 내'라고 약칭)에 첫 입경하면서 휴대한 수화물에 대하여 해관은 그중의 고급 내구성 소비품, 예를 들면 텔레비전·냉장고·비디오·녹음기·사진기·세탁기나 기타 인민폐 200원~1,000원 이하 어치의 학습 및 생활용품 중에서 1대를 면세로 통관시켜주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대륙에 친척방문을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관에서 특수배려를 하여 그 중의 3대(그 중 2대는 동일 상품이어도 됨)를 면세로 통관시켜준다. 대만동포들이 휴대한 일반 내구성 소비품, 예를 들면 시계·자전거·재봉틀·선풍기·일반 전자오르간·타자기나 기타 인민폐 50원~200원 이하 어치의 학습 및 생활용품에 한해서는 매년 처음 입국할 때 그 중의 5대를 면세로 통관시켜준다. 1년 내의 두 번째 입국부터는 상술한 내구성 소비품을 면세로 들여오지 못한다.

해관은 대만동포가 매번 입국하면서 휴대한 식품·원단·복장과 인민폐 50원 이하 어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하여는 합리적 수량의 범위 내에서 면세로 통관시켜 주며 매번 입국할 때마다 2병의 술(한 병 당 750g으로 제한), 담배 600대를 면세로 휴대할 수 있다.

해관면세품 휴대한도량 규정을 초과한 대만동포들의 휴대물품은 해관의 검사를 거쳐 납세한 후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다. 대만동포들이 출경할 때 휴대한 수화물은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의 범위 내에서 모두 갖고 나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금지물품표」에 기재된 일체의 물품은 휴대하고 출국하지 못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한물품표」에 기재된 일체 물품은 출입경할 때 양적 또는 가격적 제한을 받는다.

해관은 수화물검사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대만동포가 소지한 여행증명서를 검사한다. 대만동포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여행객수화물신고서」에 기입하고 출입경 해관에 휴대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해관 직원들은 대만동포들의 대륙 친척친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24일

##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관련신규방법

### 關於臺灣同胞來大陸探親的新辦法

公安部 出入境管理局 / 1987년 10월 26일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에서는 근일 각지에 통지를 발부하여 홍콩중국여행사에 위탁하여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 여행신분증인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출입경관리국은 대만당국의 대만동포들에 대한 대륙친척방문 허용을 환영하며 수속을 간소화하여 대만동포들의 내왕에 편리를 주기 위하여 이미 관련 부문과 협상하여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에 대한 신규방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6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1. 「대만동포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 검사하고 검사필 인장을 날인하면 바로 대륙에 출입하여 內地에서 여행하는 대만동포의 신분증명으로 되는 바, 그것을 가지고 중국의 대외 개방된 출입경지역(口岸)에서 출입경할 수 있다.

2. 11월 3일부터 홍콩중국여행사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동시에 深圳, 拱北 口岸에서는 대만동포에 대한 대륙여행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3. 11월 20일부터 대만동포가 외국에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직접 아국의 개방 口岸에 왔거나 臺灣·澎湖·金門·馬祖에서 배편으로 직접 해안 口岸에 왔을 경우에는

口岸 변방검사소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4. 대만동포가 內地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중국여행사 또는 출입경 관리부문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된 후에 1회 유효한 출입국통행증을 발급한다.

5. 각지의 출입경 관리부문에서는 관련 접대부문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內地에서 대만동포들의 친척방문 여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도와줌으로써 대만동포들이 일정에 따라 홍콩 또는 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6. 내지의 국민들이 홍콩에 가서 대만친척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계속 현행 방법에 따른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28일

##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에대한접대업무

### 對臺胞來大陸探親旅遊接待工作

國家旅遊局 / 1987년 11월 2일

1987년 11월 2일 국가관광국의 책임자는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을 하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국가관광국의 접대업무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을 하는 대만동포들에 대한 구체적 접대업무는 이미 선포한 중국여행사 외에 중국국제여행사·중국청년여행사 등 여행사 계통을 증가하여 통일적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각 관광중점도시, 省소재지 1급 도시와 대만동포 접대업무가 중요한 도시들에서는 실제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를 접대하는 호텔을 각 등급으로 구분하여 몇 개씩 지정한다.

지구, 시, 현 급 관광부문에서도 이 정신에 따라 서비스를 잘하고 대만동포들에게 좋은 투숙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대만동포의출입경수화물품에관한관리규정

## 對臺灣同胞進出境行李物品的管理規定

海關總署 / 1987년 11월 3일

제1조 조국대륙에 돌아와 친척방문·관광을 하는 대만 동포들을 우대해주고 그들의 합리적 요구를 돌봐주기 위하여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해관은 홍콩·마카오를 경유하여 입경하는 대만 동포에 대하여 외교부 홍콩주재 사증판사처에서 발급하거나 또는 홍콩중국여행사에서 대리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라 휴대물품 면세 우대를 해주며 외국을 경유해 입경하는 대만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주재 아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따라 휴대물품 면세 우대를 해준다.

제3조 대만동포가 매 양력년도 內(이하 '1년 내' 라고 약칭)에 첫 입경할 때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이 규정의 부록 「대만동포휴대면세품한도표」(이하 「한도표」라고 약칭)(부록 1)에 규정된 품종·수량에 따라 면세 우대를 해준다. 수행하는 16세 미만의 자녀가 매년 첫 입경할 경우에는 「한도표」 제1항의 물품과 제5항의 임의물품 1개를 면세로 통관시켜 준다.

1년 내에 수차 입국하는 대만동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입국할 때부터 「한도표」의 제1항~제3항의 물품만 면세로 통관시켜 준다.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조국대륙에 돌아와 친척방문을 하는 대만동포에 대하여는 특수배려를 하여 「한도표」 제4항 물품 중의 임의의 3개(동일제품을 하나 더 중복할 수 있되 합계 3개 초과 불가)를 면세로 통관시켜 준다.

제4조 대만동포의 휴대물품이 「한도표」의 제한을 초과했을 경우 개인용도 범위에 속하는 것은 조사확인 후 징세하고 통관시켜주며, 개인용도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제5조 출경하는 대만동포의 휴대물품은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의 물품을 제외하고 개인용도의 합리적 수량범위 내에서 통관시켜 준다.

제6조 대만동포는 출입경할 때 수출입금지물품(부록 2)을 휴대하지 못한다.

제7조 조국대륙에 돌아와 정착하려고 입경하는 대만동포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용도의 합리적 수량범위 내에서 관련 부문에서 발급한 「대만동포정착증」에 근거하여 면세로 통관시켜주며, 본 규정의 「한도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가용차는 가구당 1대만 과세한 후 통관시킨다.

제8조 본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海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본 규정은 1987년 11월 3일부터 실시한다.

부록:

1. 대만동포휴대면세품한도표
2.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금지물품표

<부록 1>

대만동포 휴대면세물품 한도표

	품 명	수 량
1	식품, 원단, 복장과 인민폐 50원 이하 어치의 기타 생활용품	합리적 수량으로 제 한
2	술	2병(병 당 750g)
3	담배	600대
4	텔레비전, 냉장고, 비디오, 녹음기(조합 오디오, 다용도기 포함), 사진기, 세탁 기, 소형 컴퓨터(본체와 전용부품 포 함), 오토바이와 기타 인민폐 200원~ 1,000원 어치의 학습·생활용품	매년 첫 입경 시 임 의의 1개 선택 가능
5	손목시계, 라디오, 자전거, 재봉틀, 선 풍기, 일반전자오르간, 전기오븐, 환등 기, 타지기(전동식 포함), 보온병과 인 민폐 200원~50원 어치의 학습용품	매년 첫 입경 시 임 의의 5개 선택 가능 (동일제품을 하나더 중복할 수 있되 합 계 5개 초과 불가)

- 주: ① 수행하는 16세미만의 자녀가 매년 첫 입경할 때 해관은 「한도표」 제1항  
의 물품과 제5항의 물품 중 임의 선택한 1개를 면세로 통관시켜 준  
다.
- ② 1년 내에 두 번 이상 입경할 경우에 해관은 「한도표」 제1항~제3항의 물  
품만 면세로 통관시킨다.
- ③ 물품 가격은 到岸價格(CIF)으로 정한다.
- ④ 자동차는 들어가지 못한다.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금지 물품표

1. 수입금지물품

- 1) 각종 무기, 탄약, 폭발물품
- 2) 위조화폐 및 위조유가증권
- 3)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디스켓과 기타 물품
- 4) 각종 강력한 독약
- 5) 아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인이 박히는 마취약, 정신약물
- 6) 위험한 병원, 해충과 기타 유해한 생물을 지닌 동물, 식물과 기타 제품
- 7) 人畜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전염병 발생지구에서 왔거나 질병을 전파하는 등의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
- 8) 인민폐(화폐협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제외, 인민폐 외화태환권은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

2. 수출금지물품

- 1) 수입금지범위에 열거된 모든 물품
- 2) 국가비밀에 관계되는 원고, 인쇄품, 필름, 사진, 음반, 영화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디스켓과 기타 물품
- 3)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수출금지의 문화재
- 4) 멸종위기에 있는 귀중한 동식물(표본 포함)과 종자 및 번식재료

## 대만동포의친척방문에관한협조제공

### 爲臺灣同胞探親提供協助

中國紅十字會 / 1987년 11월 5일

중국적십자회 책임자는 11월 5일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에 협조와 편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밝혔다. 담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적십자회는 대륙에 친척방문을 왔거나 오려고 하는 모든 대만동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중국적십자회는 이미 대만동포들이 순조롭게 친척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가능한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을 각지의 적십자회에 통지하였다.

대만에서는 대만동포의 대륙친척방문 업무를 대만적십자회가 맡아 처리하도록 확정하였다. 우리는 인도주의 취지에서 대만적십자회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방면의 사업을 같이 잘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륙의 대만동포들도 대만당국이 대만친척방문의 규제를 풀고 혈육과 고향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자기들의 고통을 없애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절박한 염원이 머지않아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때에 우리는 적극 협조해 나설 것이다.

## 해협양안교류중제기되는몇가지문제

### 海峽兩岸交流中幾個具體問題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 1989년 9월 15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부주임 겸 대변인 唐樹備는 오늘 본사기자와 최근년 간에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안교류가 이전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교류과정에 이런 저런 구체적 문제들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는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해협양안이 직접 「通商, 通郵, 通航」을 진행하지 못하고 국민당이 三不政策을 실시함으로써 조성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찍부터 國·共 양당이 조속히 직접 접촉하거나 양안관계 중의 구체적 문제를 가지고 먼저 협상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당수비는 이어서 양안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1. 대만동포의 입국비자 발급방법 변경 여부 문제

중국의 비자발급기관은 줄곧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관광·투자·장사를 하고 제반 교류활동에 종사하는데 대하여 출입국 수속상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외국주재 아국 영사관과 비자발급기관이 대만동포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여행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은 변경이 없다.

대만의 어떤 신문간행물에서는 우리가 대만동포의 入境 비자 발급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대만당국에 의한 것이다.

비록 근년 간에 대만당국이 대륙 동포들이 대만에 가서 奔喪하고 친척방문을 하는 등 면에서 약간의 물꼬를 열었지만 여전히 많은 불합리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 1987년말 이후로 대만동포는 연인원수로 80여만 명이나 대륙에 와서 친척 방문·관광을 하였으나 비준을 받고 대만에 가서 친척을 방문하고 분상한 대륙 동포는 2,0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일 좋은 설명으로 된다.

## 2. 通話·通郵 과정에서 대만 측의 반동선전 문제

우리 체신부문에서는 1979년 대만에 대한 부분적인 체신 업무를 일방적으로 개방했다. 그러나 대만당국은 三不政策을 견지하고 通郵를 거절했다. 금년 6월 대만당국은 돌연히 간접 통화와 통우를 개방했는데, 보내온 우편물 중에는 반동선전물, 심리전 물품과 북경 반혁명폭동을 선동하는 엽서들이 끼어 있었고, 어떤 편지봉투에는 정치선전구호가 찍혀있고, 어떤 편지에는 반공내용의 우표를 붙였으며, 어떤 자들은 텔렉스를 통하여 반동선전물을 보내왔다.

우리는 대만의 관련 방면이 해협양안 인민 사이의 정상적인 郵電通信을 이용하여 상술한 방법으로 반동선전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양안 친척 친구들의 通郵·通電의 화목한 분위기를 파괴하고 양안관계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은 이미 광범한 대만동포와

대만친척의 엄중한 불안을 야기했으며 그들은 저마다 이를譴責하고 있다. 대만의 관계 방면에서는 즉시 상술한 온갖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정지해야 할 것이다.

### 3. 대만동포의 인민폐 휴대 입국문제

정부규정에 의하여 인민폐는 휴대하고 出入境할 수 없다. 위반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몰수한다. 지금 일부 불법분자들이 대량의 인민폐를 境外에 밀수해 불법적으로 전매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인민폐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는 대만동포들이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속지 말고 경외에서 인민폐를 휴대하고 입국하지 말기를 바란다.

### 4. 대만에서 최근 출현한 '대륙여성' 문제

일부 여성청년들이 인신매매 상인들에게 유괴를 당해 대만에 가서 기생으로 전락되었는데 그 처지가 비참하다. 대만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인신매매 상인들을 엄격하게 징벌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대만동포들과 공정한 여론들이 유괴되어 대만에 간 이런 대륙의 혈육자매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 5. 희귀 야생동물의 대만밀수 방지 문제

희귀 야생동물의 밀수출을 엄격히 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하여 희귀

야생동물을 밀수하는 불법분자는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 6. 대륙정부의 대대만 노무수출 허용 문제

인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을 번영하고 부강한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서로 합작하고 공동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해협양안의 노무합작방면에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관건은 대만당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물론 우리는 소수 사람들이 사사로이 대만에 마구 가는 것을 반대한다.

## 7. 대만 「東群號」 어선 대륙선원(3명) 대만압송 수사문제

「東群號」에서 작업한 대륙선원은 도합 8명인데, 그들은 모리셔스 선박회사와 우리 福州市 국제경제기술합작회사와 체결한 노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승선하였다. 그들의 살인혐의가 있으면 대만당국은 그들을 대륙에 송환하여 우리 사법기관이 범죄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대만의 '彈性外交' 및 이중승인 추진 문제

우리는 '두개의 중국'(兩個中國),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나라들이 대만과 정부 간 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는 것을 반대한다.

\* 『新華通訊』 1989년 9월 15일



#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

## 中國公民往來臺灣地區管理辦法

---

국무원 총리 李鵬 / 1991년 1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93호

이제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을 공포하며, 이를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總理 李鵬

1991년 12월 17일

## 중국공민의대만지구출입관리방법

### 제1장 총 칙

제1조 대만해협 양안의 인원왕래를 보장하고 각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륙에 있는 중국공민(이하 '대륙주민'이라 약칭)이 대만지구(이하 '대만'이라 약칭)에 출입하고, 대만지구에 있는 중국공민(이하 '대만주민'이라 약칭)이 대륙에 출입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기타의 관련 법률·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대륙주민이 대만에 갈 때에는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부문을서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개방된 또는 지정한 출입경 口岸에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올 때에는 국가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개방된 또는 지정한 출입국 口岸에서 통행해야 한다.

제5조 중국공민은 대만과 대륙사이를 왕래할 때 국가안전,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2장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제6조 대륙주민이 대만에 가서 정착, 친척·친구방문, 관광을 하고 재산을 접수·처리하고 혼례·장례 사항을 처리하거나 경제·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학술 등 활동에 참가할 경우 호적소재지의 시·현 공안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① 신분, 호적 증명서를 교부, 검증해야 한다.

② 대만방문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재직원과 재학생은 소재단위의 신청인의 대만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비재직원과 비재학생은 호적소재지 공안파출소의 신청인의 대만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신청사유에 상응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본 방법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증명이란 아래

각 호의 증명을 말한다.

①대만에 가서 정착할 경우 대만에 정착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친척·친지 방문 시에 대만 친척·친지관계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③관광 시에는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④재산을 접수·처리할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해당 재산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⑤혼인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해당 혼인 상황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⑥친척·친지의 喪事를 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서한이나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⑦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학술 등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대만의 해당 기구, 단체, 개인의 초청장이나 해당 활동참여를 동의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⑧주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공안기관은 대륙주민의 대만 방문신청을 접수하여 30일 이내에,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6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긴급한 신청은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공안기관은 비준을 받고 대만으로 가는 대륙주민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여행증명서에 인가 서명을 한다.

제11조 비준을 받고 대만에 가는 대륙주민은 소지한 여행증명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내에 대만에 가야하며 정착하는

사람 외에는 기한 내에 돌아와야 한다.

대륙주민이 대만에 간 후 병으로 또는 기타 특수 사정으로 여행증명서의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증명을 발급한 공안기관이나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파견했거나 위탁한 관련기관에 연기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入境 口岸의 공안기관에 입국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대만방문을 신청하는 대륙주민에게 아래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 ①형사사건의 피고 또는 범죄 혐의자일 경우
- ②인민법원이 소송종결 전에 출국을 불허한다고 통지했을 경우
- ③선고된 형벌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④노동교양 처벌을 받고 있을 경우
- ⑤出境하게 되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치거나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인정할 경우
- ⑥사실을 조작하고 가짜 증명을 제공하는 등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 제3장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제13조 대만주민이 대륙을 방문하려 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여행증명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 ①대만지구에서 직접 대륙에 올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파견했거나 위탁한 관련기관에 신청하고 특수 사

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口岸의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②홍콩·마카오 지구를 경유하여 대륙에 올 경우에는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이 파견했거나 위탁한 홍콩·마카오 지구에 있는 관련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외국을 경유하여 대륙에서 올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외국주재 기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①대만에 거주함을 보여주는 유효한 신분증명서와 출입경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기타 지구·국가를 경유할 경우에는 경유 지구·국가의 재입국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경통과비자수속이 면제된 지구와 국가는 제외된다.

④정착·친지방문·관광을 하고 재산 접수·처리하고 결혼·장례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에 상응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경제·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학술 등 활동을 할 경우에는 대륙의 관련 기구·단체·개인의 초청장이나 해당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비준을 받고 대륙에 오는 대만주민에 대하여 국가 주관기관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인가 서명을 해준다.

제16조 대만주민이 대륙에서의 투자·무역 등 경제활동

이나 기타 사무로 대륙에 온 후 여러 번 대륙에 내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시·현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출입국 인가 서명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7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왔다가 외국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과 그 실시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단기적으로 대륙에 온 대만주민은 호적관리규정에 따라 임시숙박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호텔·접대소·여관·학교 등 기업·사업단위나 기관·단체 및 기타 단위 내에 숙박할 때에는 임시숙박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친지가정에서 숙박할 때에는 24시간 (농촌에서는 72시간) 내에 본인 또는 친지가 현지 공안파출소 또는 호적판공실에 가서 임시숙박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온 후 대륙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당지의 시·현 공안국에 신청하여 임시거주증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는 入境 전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파견했거나 위탁한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또는 대륙의 친척을 통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시·현 공안국에 신청해야 한다. 정착 요구가 비준되면 공안기관에서 정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 대륙에 온 대만주민은 정착 주민을 제외하고는 소지한 증명에 서명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상응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시·현 공안국에 신청하여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대륙방문 신청 시에 다음에 열거된 대만주민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는다.

- ①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대륙에 온 후 국가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③사실을 조작하고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는 등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 ④정신질환환자 또는 엄중한 전염병환자일 경우  
질병 치료 또는 기타 특수 원인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 제4장 출입국 검사

제23조 대륙주민이 대만에 왕래하고 대만주민이 대륙에 왕래할 때 개방된 또는 지정한 출입경 口岸 변방검사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방검사소가 출경 또는 입경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

- ①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
- ②위조·변조 등 무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 ③여행증명서 검사를 거부한 자
- ④본 방법 제12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출입경이 불허된 자

#### 제5장 증명서 관리

제25조 대륙주민이 대만에 내왕하는 여행증명서란 대륙주민대만내왕통행증과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리킨다.

제26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내왕하는 여행증명서란 대만주민대륙내왕통행증과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리킨다.

제27조 대륙주민대만내왕통행증, 대만주민대륙내왕통행증은 본인이 소지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8조 대륙주민대만내왕통행증, 대만주민대륙내왕통행증은 통행 시 마다 수속을 해야 한다. 입국허가는 단수왕복과 복수왕복으로 나뉜다.

제29조 대륙주민이 여행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발급한 공안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밝혀지면 상응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대만주민이 대륙에서 여행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지의 시·현 공안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밝혀지면 상응한 여행증명서를 다시 신청·수령하도록 허용하거나 단수유효의 출경통행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 대만에 가는 대륙주민이나 대륙에 오는 대만주민의 여행증명 소지자가 본 방법 제12조, 제22조의 규정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소지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선포한다.

제32조 여행증명을 심사 비준 발급하는 기관은 이미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 공안부는 필요시에 입경허가서를 변경시키고 여행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 제6장 처 별

제33조 위조·변조 등 무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도용하여 출입경찰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실시세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 여행증명서를 위조·변조·양도·매매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실시세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5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 사실을 조작하고 가짜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뇌물제공 등 수단으로 여행증명서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실시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위항의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집행완료 6개월 이내에는 그 출경·입경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36조 기관·단체·기업·사업 단위가 사실을 조작하고 가짜 증명을 제공해 신청인이 여행증명서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그 증명발급 권한행사를 잠시 중지시키며 사안이 심각하면 증명발급 자격을 취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경관리법실시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본 방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시숙박등록 수속이나 임시거주증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처벌을 주거나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을 넘어 불법체류할 경우에는 경고처벌을 주고, 불법체류기간 1일 100

원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9조 처벌을 받은 자가 공안기관의 처벌에 불복할 때에는 처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의를 신청하여 상급 공안기관이 최종재결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40조 대륙에 온 대만주민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기타 위법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법과 기타 해당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공안기관이 그 체류기한을 줄여 기한을 주어 출경시키거나 추방시킨다.

본 방법 제22조 규정에 해당된 사람의 경우에는 즉시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제41조 본 방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았거나 기타 위법직무태만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것은 주관부문에서 행정처분을 주고,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42조 본 방법을 위반해 획득한 재물은 추징하거나 배상반환을 명하며 범죄에 사용한 본인재물은 몰수해야 한다.

벌금 및 몰수한 재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제7장 부 칙

제43조 본 방법은 공안부가 해석한다.

제44조 본 방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Ⅲ. 교통 · 통신

---



## 대륙과대만간해운업무의회복발전에관한제의

### 迅速恢復發展大陸與臺灣間的海運業務

교통부 부장 曾生 / 1979년 8월 18일

교통부장 曾生은 오늘 대륙과 대만간의 인원내왕(친척·친구방문, 참관 등 포함)과 경제무역교류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대륙·대만간의 해운업무를 신속히 회복·발전시킬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해운업계와 협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해운업계에서 합작해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증생 부장은 오늘 대륙·대만간의 해운업무를 회복·발전과 관련하여 신화사 기자와 중국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질문: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대륙·대만간의 해상여객운송, 화물운송을 회복·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대륙과 대만 사이에 소식이 끊어지고 내왕이 단절된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우리 위대한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혈육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대륙에서 사는 부모형제들이 먼 곳에 있는 혈육친구들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대만도의 동포들도 하루빨리 혈육들을 만나 가정의 즐거움을 향유하려하고 있다. 대만해협 양안의 혈육동포들은 누구나 다 이런 가슴아픈 분단상태를 하루빨리 종결짓고

조속히 친척·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는 동시에 무역을 진행하고 거래를 하고 대륙과 대만사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만의 교통부문과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 해운업계에서 합작해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만 교통부문에서 시간을 약속하여 북경이나 기타 지방에 대표를 파견해 우리와 협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어느 때든지 대표를 대만에 파견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질문: 대만·대륙 간의 해운업무를 회복·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쌍방의 해운업을 신속히 회복·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이미 여객선을 비치하여 놓았다. 일단 쌍방이 협약을 맺으면 우리는 上海, 廣州, 廈門 등 항구에서 대만과의 여객운송업무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화물운송방면에서도 준비된 상태인데 대만으로 가는 화물선도 준비되었고 대만에서 대륙에 오는 화물선을 접대할 준비도 되어있다.

질문: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어느 항구들에서 대만상선들을 접대할 계획인가?

답변: 선박의 吃水가 적합하면 上海, 廣州, 靑島, 天津, 大連, 寧波 등과 같은 대륙연해의 여러 크고 작은 항구들에서 모두 언제든지 대만상선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동시에 대만상선들에서 연료, 자재, 선원생활용품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들은 도와줄 것이다.

질문: 대만과 대륙사이의 해상운수에 참가하는 대만해운업계들이 대륙해운업계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아주 길고 항구도 아주 많다.

지금은 상해, 광주 해상운송국의 선박들이 조국의 연해 운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이며 대만 인민은 우리의 혈육동포들인 만큼 해상운수에서도 당연히 대륙의 해운업계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여객운송과 석탄, 기름원료나 기타 화물의 운송에서 우리는 특별대우를 줄 것이다.

\* 『新華通訊』 1979년 8월 18일

## 대만체신당국과의통우·통전협상에관한제의

### 願與臺灣郵電同行進行通郵通電商談

---

郵電部 部長 王子綱 / 1980년 1월 24일

郵電部 부장 王子綱은 1980년 1월 24일 대만 우전당국과 통우, 통전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만 우전당국과 언제 어디서든지 통우·통전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통우·통전에 모든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면 한 집 사람이고 같은 업종은 相助하여야 한다. 쌍방이 손잡고 30년래 소식이 단절되고 분단된 상태를 조속히 타개하고 공동으로 해협양안의 수많은 집들에서 서로 통화하게 하고 天涯地角에 놓여있는 혈육동포들을 하루 빨리 연결시켜주고 조국통일 위업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대만해협양안항로개설에관한3개항결정

### 關於隋時架起海峽兩岸的空中橋梁三項決定

中國民港總局 / 1981년 10월 2일

葉劍英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을 조국에 귀환 시킬 데 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민용항공총국에서는 이미 다음 3가지 결정을 내렸다.

1. 대륙 민항부문에서는 대만해협양안의 각 민족 인민들이 학술·문화·체육 교류를 진행하고 친척친구방문, 관광을 하고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만의 각 도시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2. 대만 민용항공기가 비행 도중 긴급사정에 봉착했을 때 대륙의 각 민용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으며 대륙공항에서는 일체 안전을 보장해주고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줄 것이다.

3. 중국민용항공총국은 언제든지 대만 항공당국과 항공로 개통 담판을 진행할 용의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서로 상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통항협약을 맺기 전에 우선 항공운수기업들이 서로 업무대리를 맡고 합작하여 여객운송, 우편물운송, 화물운송 등 업무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중국민용항공총국 국장 沈圖는 신화사 기자에게 상술한 결정을 밝히면서, 엽검영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을 조국에 귀환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정책은 민심에 맞고 성의를 다한 것으로서 대만동포들을 포함한

전 중국인민들과 해외화교들의 공동의 염원을 대표한 바, 민항분야의 전체 종업원들은 이를 열렬히 옹호하고 결연히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심도는 대만 항공계의 동료·친구들이 민족의 대의를 중히 여기고 애국정신을 발양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조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3일

## 대만과의통항준비에관한5개항결정

### 關於準備隨時與臺灣通航的五項決定

교통부 부장 彭德清 / 1981년 10월 3일

교통부 부장 彭德清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통부는 산하의 연해 항구와 항공업체들에서 대만과 통항할 모든 준비를 곧 갖추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팽덕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葉劍英 위원장의 담화는 차원이 높고 합리적이고 인심을 얻고 있으며 교통부문의 전체 종업원들은 진심으로 이를 옹호한다. 1979년 양력설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대만동포에게고함」을 발표한 이래 대만해협 양안의 선원들은 여러 번 우호적 거래를 가졌다. 그들은 외국의 항구에서 한집사람처럼 정답게 같이 영화를 구경하고 같이 식사하였다. 대륙과 대만 항공업계의 동료들은 모두다 조국통일위업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교통부는 수시로 대만과 통항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5개항 결정을 밝힌다.

1. 上海, 廈門, 廣州에서 대만 基隆, 高雄 항구으로 가는 여객선편을 준비하여 대륙과 대만 사이의 학술, 문화, 체육 교류와 관광, 친척친구방문 등 내왕에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연해 항구에서 대만항구로 가는 화물선을 비치하여 해협양안의 상업왕래와 물자교류를 발전시킬 것이다.

3. 해협에서 항행 또는 어로 작업하는 대만선박이나 어선들이 해난에 봉착해 구조해 주어야 할 경우, 우리 해상구조기관과 선박은 수시로 현장에 가서 구조해 줄 것이며 동시에 대만선박들이 대륙연해 항구에 와서 피난하는 데에도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4. 대만의 교통부문과 해운업계의 인사들이 대륙항구에 와서 참관하고 휴가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

5. 대륙과 대만의 통항 문제에 대하여 언제든지 대만 교통부문 및 해운업계와 협상할 수 있는 바,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 바란다.

대륙과 대만의 동포들이 손잡고 공동으로 하루빨리 통항, 통상, 통우, 친척방문, 관광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기 바란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3일

## 대만과의통우·통전에관한6개항결정

### 關於隋時準備與臺灣通郵通電的六項決定

郵電部 部長 文敏生 / 1981년 10월 7일

우전부 부장 文敏生은 오늘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엽검영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의 조국귀환과 평화통일  
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전부에서는 6개항의  
결정을 하고 언제든지 대만과 통우, 통전할 준비가 되어있다  
고 밝혔다. 6개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海運, 空運을 통해 대륙과 대만간의 직통 우편로를 개  
통하여 우편물을 직접 교환할 것이다.
2. 위성을 통하여 북경-대북간의 직통 전신로를 개통할  
것이다.
3. 외국에서 대륙을 거쳐 대만으로 우송하거나 돌려보내  
는 우편물, 소포, 결산서 등에 대하여 계속 책임지고 인계해  
줄 것이다.
4. 대만동포들이 지금 기타 경로를 통하여 대륙에 부쳐오  
는 우편물과 대륙에 보내는 전보, 전화에 대하여는 계속 책임  
적으로 찾아주고 배달해주고 연결시켜줄 것이다.
5. 대만 우전 관계자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친구를 방문하  
고 참관하고 학술강연을 하고 우전업무기술과 우전정보를 교  
류하는 것을 환영한다.
6. 대륙과 대만 간의 통우, 통전문제를 둘러싸고 대만우  
전부문과 언제든지 담판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협상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7일

## 대만해양부문과의정상연락체계수립에관한6개항결정

## 關於準備與臺灣海洋工作部門建立關係的六項決定

國家海洋局 / 1981년 10월 16일

국가해양국에서는 葉劍英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의 조국귀환과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래의 6개항의 결정을 하였다.

1. 대만해양사업부문과 언제든지 연계를 맺고 해양조사자료와 과학연구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2. 대만의 해양과학자들이 대륙에 와서 참관하고 학술강연을 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조국의 해양사업발전을 위한 방침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을 환영한다.

3. 대만해양조사연구기구와 언제든지 합작하여 中國海와 大洋의 수문기상, 생물, 물리, 화학, 지질과 관련한 해양자원 등 분야의 과학고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선박과 장비 면에서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국가해양국 산하의 연해 각 조사연구기지들에서는 언제든지 대만 해양조사선박이 방문, 정박하여 보급, 피난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5. 대만해양사업부문과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국제해양분야의 기구나 학술단체가 소집하는 회의나 활동에 언제든지 협상하여 참가할 수 있다.

6. 대만해양사업임원들이 중국해양학회에 참가하거나, 중

국해양학회에서 조직하는 학술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 『人民日報』 1981년 10월 16일



## 대만동포의체신·통신이용문제에관한규정

### 規定臺胞在大陸使用郵電通信與大陸用戶同等待遇

郵電部 / 1987년 12월 2일

우전부는 1987년 12월 2일 신화사를 통하여 공고를 발표하고 대만동포는 대륙에서의 우전통신 사용에 있어서 대륙의 사용자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전부는 대만동포들의 대륙친척방문관광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만동포들이 대륙에서 우전통신업무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2. 대만동포들은 조국대륙에서 체신, 전신 등 제반 통신업무를 이용할 때 대륙의 사용자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3. 현재 조국대륙과 대만성에서 직접적인 통우, 통전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우전부문에서는 대만을 상대하여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 체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한, 엽서, 인쇄물(당분간 인쇄물전용포대를 불취급), 소포, 맹인도서, 가격표기우편물이 포함된다. 일반편지, 엽서, 인쇄물, 맹인도서 등 몇 가지 업무는 전국의 모든 우전국(소)에서 취급하며 등기우편물, 소포는 홍콩, 마카오나 국제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우정국에서 취급하며 가격표기우편물은 세관을 설치한 우전국에서 취급한다.

4. 우전부문에서는 지금 대만을 대상하여 전보, 전화와

텔레텍스 등 전신업무를 개설하였다. 홍콩, 마카오, 국제전보, 전화업무를 이미 개설한 우전국은 모두 대만에 보내는 전보, 전화업무를 취급하며 홍콩, 마카오, 국제 텔레텍스업무를 이미 개설한 우전국에서는 모두 대만에 보내는 텔레텍스업무를 취급한다.

5.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관광을 하는 대만동포들이 우전통신업무를 사용할 때에는 조국정부의 해당 우전 법률, 법규와 우전부문의 해당 규칙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6. 현재 조국대륙과 대만성 간에 아직 직접적인 통우, 통전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 보내는 우편물과 전보, 전화는 제3지구를 경유해 보내게 된다. 우리는 대만우편당국이 협력해 나서기를 희망한다.

7. 우리는 대만의 해당부문과 협상하여 해협양안사이의 직통 우편통로와 직통 전신통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직접적인 통우, 통신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안 인민들 사이의 상호 왕래와 통신연락이 편리해 질 수 있기를 다시한번 희망한다.

# 대만의 「양안직항문제와전망설명서」 발표관련담화 就臺灣《兩岸直航的問題與展望說明書》發表的談話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대변인 / 1992년 9월 23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은 대만당국이 발표한 「양안직항문제와 전망설명서」와 관련하여 오늘 인민일보 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대만의 관련부문에서 양안의 직항문제와 관련해 천명한 약간의 설명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최근년 간에 해협양안의 관계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양안의 경제무역거래와 인원왕래, 제반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직접 3통을 요구하는 양안인민들, 특히 대만 각 계층 인사들과 광범한 민중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대만당국이 양안의 직접통항을 계속 저해하는데 대한 비판이 날로 강렬해지고 있다. 각 방면의 압력 하에 대만당국은 부득불 양안의 직항문제를 직시하고 “양안은 적당한 시기에 직접 통항을 개방해야 한다”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지난날에 비하여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서에서는 커다란 지면을 들여 양안직항 중에 나서는 이른바 온갖 ‘장애’를 강조하고 광범한 민중들의 간절한 기대를 무시하고 현 단계에서 직항하면 대만 섬 내의 안전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른바 상대방이 대등한 정치실체임을 쌍방이 서로 부정하지 않는 선결조건을 내놓으면서 계속 양안 직접통항에 인위적으로 정치적

인 장애를 설치하였으며 따라서 계속 양안의 직접 3통의 진척을 미루고 시비를 뒤섞고 책임을 대륙에 밀어버렸다.

우리는 일관되게 양안이 조속히 직접 3통을 실현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일련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최대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만동포들에게 고함」 글에서 양안이 「三通」을 실현할 것을 제의했다. 그 후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지도자는 조속히 삼통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재천명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교통부문에서는 이미 대만선박의 대륙항구 정박과 해상 항행안전을 위한 준비를 충분하게 했으며 민용항공부문에서도 양안의 항공직행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기술기초, 항로관리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와 대만 각 계층 인사, 광범한 민중들은 적의를 없애고 이해를 증진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양안의 三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이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및 두개 대등한 정치실체를 조작하려는 그 어떤 획책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문제를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양안의 경제합작과 직접 3통의 추진을 선차적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이 설명서에서 양안의 직항은 국제문제가 아니며, 쌍방의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7일에 우리 판공실 책임자는 권한을 받고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해협양안의 관계부문과 수권단체나 인사들이 직접 3통을 실현하고 쌍방교류를 실시할 문제를 조속

히 협상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는 이 주장을 다시한번 재천명한다. 양안직항을 실현하자면 확실히 일부 문제들을 협상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대만의 해당부문과 수권단체나 개인이 적당한 명목과 방식으로 우리와 양안직항문제를 상담하는 것을 환영하며 대륙에서 상담할 수도 있고 대만에서 상담할 수도 있다. 양안직항은 중국의 내부사무이므로 쌍방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고 참으로 양안인민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로 나서기만 한다면 직항중의 관련 문제는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3통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그것은 양안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양안의 경제합작과 왕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양안의 직접 3통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었다. 대만당국이 민심과 양안관계발전의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참으로 광범한 민중의 실제이익을 고려하고 인위적 장애를 제거하고 양안의 조속한 직항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 양안등기우편물조회 · 보상사무에 관한 합의

## 兩岸掛號函件查詢 · 補償事宜協議

海協 · 中國通信學會郵政專業委員會 · 海基會 / 1993년 4월 29일

해협양안관계협회, 중국통신학회우정전문위원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양안등기우편물 조회 및 보상사무를 협상하여 아래의 합의를 보았다.

### 1. 취급 범위

본 합의에서 말하는 등기우편물이란 서한, 엽서, 봉합엽서, 인쇄물, 신문지, 잡지와 맹인문서를 가리킨다. 상기 취급 범위는 쌍방이 서면합의로 증감한다.

### 2. 연계 방식

등기우편물의 조회는 중국통신학회우정전문위원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또는 그가 지정한 우편물처리센터(항공우편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기타 관련 사무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서로 연계하여 처리한다.

### 3. 전달 방법

등기우편물은 제3지역을 통하여 전달한다.

### 4. 조회 기간

등기우편물의 조회는 발송인이 발송한 다음날부터 12개

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5. 대답 기한

조회접수일방이 조회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답해야 한다.

#### 6. 검사표 필사 발송

상대방이 봉하여 보내온 우편물포대에서 등기우편물의 유실, 절도, 손상 등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표를 필사, 발송해야 하며 상대방은 신속히 조사, 회답해야 한다.

#### 7. 각자 보상

등기우편물의 유실, 절도 또는 손상 등 상황이 있을 경우 일률로 발송 일방이 보상을 책임지며 서로 결산하지 않는다.

#### 8. 문서 양식

쌍방이 각기 우정관계에 따라 조회양식, 검사표, 회답서 한과 봉함엽서를 작성하여 서로 인가한 후에 사용한다.

#### 9. 합의의 이행, 변경과 중지

쌍방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합의의 변경과 중지는 쌍방이 협상하여 동의해야 한다.

#### 10. 분쟁의 해결

이 합의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은 쌍방이 조속히 협상, 해결해야 한다.

#### 11. 미정 사항

이 합의에서 미정한 사항은 쌍방이 적당한 방식으로 별도로 협상, 결정한다.

## 12. 효력의 발생과 실시

이 합의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실시한다.

이 합의는 4월 29일에 서명하고 4부로 만들어 각기 2부씩 소지한다.

해협양안관계협회

대표

汪道涵

唐樹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대표

辜振甫

邱進益



#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

## 臺灣海峽兩岸間航運管理辦法

交通部 部長 黃鎮東 / 1996년 8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령

1996년 제6호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은 1996년 8월 19일 제14차 부장 판공회의에 통과되어, 이제 공포하며,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黃鎮東

1996년 8월 19일

### 대만해협양안간해상운송관리방법

제1조 해협양안 해상운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양안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중국, 쌍방향 직항,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대륙의 항구와 대만지구 항구사이의 해상직항화객운송(이하 '양안해운'이라 약칭)에 적용한다.

제3조 양안해운은 특수관리에 속하는 국내운송이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이하 '교통부'라 약칭함)는 양안 해운업무의 주관기관이다.

제5조 중국대륙과 대만지구에서 등록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해상운송회사는 교통부의 비준을 받은 후 자체소유의 선박이나 경영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양안 해운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중국대륙 또는 대만지구의 독자해운회사
2. 중국대륙과 대만지구의 합자해운회사

제6조 양안해운업무경영을 신청할 경우 중국대륙에서 등록된 지방해운회사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교통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각 부문산하의 해운회사는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교통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대만지구에 등록된 해운회사는 자기의 대륙선박대리회사에 위탁하여 신청을 제출하고, 그 선박대리회사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교통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양안해운업무경영을 신청하는 해운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선박자료
3. 해운화물인수증 견본
4. 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정기선 운송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술한 서류 외에 항구간 정기선운송합의서와 운송가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교통부는 비준을 받고 양안해운업무를 경영하는

해운회사와 그 선박에 「대만해협양안간수상운송허가증」과 「대만해협양안간선박운영증」을 발급한다.

전항의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10조 교통부의 비준이 없이 외국해운회사는 대만해협 양안사이에서 직항하거나 중계하는 대량화물운송과 여객운송을 경영하지 못한다.

제11조 양안해운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륙항구와 선박대리회사는 교통부가 비준하고 공포한다.

그 어떤 대륙의 항구나 선박대리회사든지 비준이 없이 양안해운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교통부의 비준이 없이 양안해운업무에 종사하는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하여 해운업무 감독기구는 항구진출허가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하고 항구는 하역해주지 말아야 하며 선박대리회사는 대리업무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 제15조,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비준이 없이 임의로 양안 해운과 기타 관련 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14조 항구경영자, 선박대리회사가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양안 해운경영자격이 없는 해운회사의 선박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그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양안 해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 관한방법

## 關於臺灣海峽兩岸間貨物運輸代理業管理辦法

對外貿易經濟合作部 / 1996년 8월 21일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 관한방법』 반포에 관한 통지

[1996] 外經貿運發 제46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경제무역합작위원회 (廳, 局), 심양, 장춘, 할빈, 남경, 무한, 광주, 성도, 서안, 제남, 항주시 대외무역경제합작위원회 앞:

대만해협양안의 경제무역과 해운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안 사이의 정상적인 화물운수대리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국, 쌍방향직항,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 관한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제 이를 반포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6년 8월 21일

##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대리업관리에 관한방법

### 제1조 대만해협양안간의 경제무역교류와 해운업의 발전

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화물운수대리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와 「하나의 중국, 쌍방향 직항,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대만해협양안간의 직항해운화물대리업무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중국대륙 항구와 대만지구 항구 사이의 해상직항 화물운수는 특수관리에 속하는 국내운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外經貿部'라 약칭)는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수대리업무의 주관기관이다.

外經貿部는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와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정형에 근거하여 화물운수대리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업종별 관리를 시행한다.

제4조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경영에 종사할 경우에는 外經貿部の 비준을 받아야 한다. 外經貿部の 비준이 없이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일률로 해당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5조 다음의 2개 유형의 기업만이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경영을 신청할 수 있다.

① 外經貿部の 비준을 거쳐 순수 중국대륙의 자본으로 설립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② 外經貿部の 비준을 거쳐 중국대륙과 대만지구 투자자가 합자 또는 합작하여 설립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제6조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별구 대외무역경제합작주관부문의 심사를 받은 후 外經貿部に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外經貿部는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

정하여야 한다.

外經貿部는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경영을 비준받은 기업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해당 대리업무를 계속 경영하려 할 경우에는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外經貿部에 경영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대리업무를 경영자격은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시에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7조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신청서
- ② 가능성연구보고
- ③ 자금신용증명
- ④ 外經貿部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外經貿部는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의 명부를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9조 대만해협양안간의 직항해운화물운송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外經貿部가 공포한 해당 화물운송대리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서 대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세관은 外經貿部の 비준 없이 해당 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비준을 받고 대만해협양안 간 직항해운화물운송업무를 대리하는 기업은 국가의 법률, 법규와 해당 업종관리규정에 따라 대만해협양안의 화물발송인, 수하인과 직항항운선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분기의 첫 달 상순에 지

난 분기의 관련 상황을 서면형식으로 기업소재지의 外經貿部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그것을 복사하여 外經貿部に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外經貿部가 국가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12조 대만해협양안간의 화물운송대리업무경영과 관련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련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이 방법은 外經貿部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

## IV. 언론 · 문화

---



## 대만올림픽위원회주석에게보내는편지

### 寫信給臺北奧委會主席

中國奧委會 主席 鐘師統 / 1979년 11월 27일

중국올림픽위원회 주석 鐘師統은 오늘 대북올림픽위원회 주석 沈家銘 선생에게 서한을 보내 대륙과 臺北에서 조속히 체육교류를 실현하고 올림픽대회 전에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중화 체육健儿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올림픽대회의 경기장에 함께 출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금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집행위원회 나고야회의 결의를 비준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는데, 이 결의에 의하여 대륙과 대만에서 사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모두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올림픽위원회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상기 결의를 접수한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만해협 양안에 살고 있는 중화 체육健儿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올림픽경기장에 출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적극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동포들과 해외교포들은 이 감격적인 체육성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인민들은 세상에서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이래 대륙과 대만의 운동선수들은 해협양안

에 갈라져 서로 내왕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는 이런 국면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년 올림픽개최 전에 쌍방이 하루빨리 체육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서로 보고 배우고 제고하도록 할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서로 코치를 파견하여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올림픽대회 전의 훈련을 같이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쌍방이 조속히 대표를 파견하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계획을 작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북경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도 대표를 당신네 곳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에서 온 체육관원들과 운동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접대해주고 그들의 내왕의 자유를 담보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만당국에서도 민족의 대의를 소중히 여기고 쌍방의 체육교류에 편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전체 중화 체육健儿들이 굳게 뭉쳐 같이 노력하고 중국의 체육운동을 발전시키고 올림픽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 해협양안문화예술교류에 관한 6개항 결정

### 宣布六項決定希望兩岸文化藝術交流早日進行

文化部 代部長 周巍峙 / 1981년 10월 22일

문화부 부장대리 周巍峙는 북경에 거주하는 문화계의 대만출신 인사와 대만동포 좌담회에서 조국대륙의 문화계에서는 해협양안의 문화예술교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 수 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중화문화를 세계적으로 부단히 발전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치는 葉劍英 위원장과 胡耀邦 주석이 제시한 방침·정책을 구체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문화부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 대만문화계 인사와 예술단체들이 대륙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환영한다.

2. 대만 문화계에서 대륙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3. 대만의 예술가들이 대륙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대륙의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4. 대만 문화계 인사와 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각종 문화 예술활동을 견학하는 것을 환영한다.

5. 대만문화계와 같이 각종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서로 배우고 공동으로 조국의 민족문화를 연구할 용의를 갖고 있다.

6. 대만문화계 인사들이 대륙에 와서 참관 방문하고 친척

친구를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을 환영한다.

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화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조국의 우수한 예술전통을 보전, 발전시켜 세계문화의 구성부분으로서 영예를 떨치는 것은 대륙과 대만문화계의 공동의 책임과 이상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추세라고 인식하였다.

사실상 대만과 대륙의 문화계 인사들은 일찍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교류를 진행하여 왔다. 그들은 대만당국이 향후 편리를 제공해줄 것을 바라고 있고, 이 작은 물결이 큰 물결로 변해 모든 인위적 울타리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륙의 문화계 인사들도 이를 위하여 자기의 힘을 이바지하려 하고 있다.

\* 『人民日報』 1981년 10월 23일자

## 대만과학기술부문에제기한6개항건의

### 向臺灣有關方面提出的六項建議

중국과학기술협회 / 1981년 10월 28일

중국과학기술협회는 최근에 대만의 관련 부문에 대륙과 대만사이의 과학기술교류를 조속히 실현할 데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제기한 6개항의 건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륙과 대만의 각 학회 간에 과학기술 간행물과 과학 기술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를 희망한다.
2.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서로 편의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3. 대표단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학자·전문가를 서로 파견하여 학술강연을 하고 참관하고 휴가를 보내고 친척친구를 방문하도록 한다.
5. 대만 과학기술계의 각 학회나 개인이 중국 과학기술협회나 각 학회에 가입하여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되는 것을 환영한다.
6. 대만 과학기술계가 저명인사를 추천하여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지도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 『光明日報』 1981년 10월 30일자

# 대만학술계와의정상연계수립에관한제의의

## 關於與臺灣學術界建立正常關係的倡議

중국과학원 / 1981년 11월 23일

최근에 열린 중국과학원 주석단 제2차회의에서는 「대만 학술계와의정상연계수립에관한중국과학원의제의」를 토의, 채택하였다.

중국과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제의를 하였다.

1. 대만의 과학연구기구, 대학교에서 대표단을 대륙에 파견하여 참관, 방문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대만 학술대표단을 언제든지 접대할 수 있으며 또한 초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해 참관방문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2. 대만학술계 인사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친구를 방문하고 학술강연을 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과학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며, 중국과학원의 학자들도 언제든지 가능하면 대만에 가서 친척친구를 방문하고 학술강연을 하고 학술교류를 진행할 것이다.

3. 대만학술계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중국과학원 學部委員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과학원 각 학부에서는 대만과학자들에게 학부위원 자리를 남겨둔다. 대만학술계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중국과학원 학부위원 대회와 학부의 기타



학술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4. 중국과학원은 언제든지 대만의 연구기구, 학교들과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재해성 기상에 대한 예보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단기 또는 장기 합작연구를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5. 중국과학원은 대만의 연구기구, 대학교들과 연구자료와 학술간행물을 교환하기를 희망한다.

6. 1982년 1월 1일부터 중국과학원에서는 전국대상의 「중국과학원과학기금」을 설립하는데 대만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것을 환영하며, 「기금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중국과학원에서 기금 지원을 해줄 것이다.

7. 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은 대만의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활동에 참가하고 공동으로 통일적 대표단(組)을 구성하여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 『人民日報』 1981년 11월 25일자

##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 關於臺灣記者來大陸采訪的規定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 / 1987년 11월 1일

대만당국이 민중들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다고 선포한 후 중화전국신문기자협회는 국무원 판공청의 위탁을 받고 대만기자의 대륙취재에 관한 규정을 선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은 대륙에 와서 신문취재를 하는 대만기자들에게 적용한다.

2. 중화전국신문기자협회에 위탁하여 대만신문기구가 대륙에 와서 취재하는 사항을 취급한다.

3. 대만신문기구가 대륙에 기자를 파견하여 취재하려 할 경우 중국기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기구의 위탁서 또는 증명서류, 기자본인이력서, 신문사 현황과 취재요구를 제시해야 하며, 동의를 받은 후 취재증을 발급 받는다.

4. 취재증을 소지한 대만기자는 대륙에서 취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보호를 받는다.

5. 대만기자는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과 기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대만기자가 대륙의 당, 정부, 군대, 기관, 기업, 사업단위, 단체, 학교와 개인을 취재하려 할 경우 사전에 취재하는 기관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대만기자는 취재할 때 기자협회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만당국의미국유학대륙학자·학생초청환영성명

### 歡迎臺灣當局邀請留美大陸學者學生訪臺

中國留美學者學生聯誼會聯合會 / 1988년 3월 19일

중국미국유학대륙학자학생연의회 연합회는 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관련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재미 중국대륙 학자, 학생이 대만을 참관,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재미 중화인민공화국 학자학생연의회 연합회는 환영을 표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대륙과 대만의 학자, 학생들은 모두 같은 선조를 가진 炎黃의 자손들이다. 상호방문과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다년간의 염원이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우리 재미 학자와 학생들을 대만으로 초청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조류에 맞고 해협양안 인민의 염원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인정한다.

본 연합회는 대만당국이 대만방문 人選을 비준할 때 모든 학자, 학생들에 대하여 그 어떤 부대조건이나 제한이 없이 一視同仁하고 대만을 방문하는 학자, 학생의 신변안전과 왕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이 대만에서 학술교류와 방문활동을 전개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 대만당국이 대륙의 학자, 학생들이 대만에 가서 학술교류, 참관방문을 진행하는 것을 진일보 허용하고 해협양안의 통상, 통우, 통항을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

고 우리나라의 장기간 분단상태를 최종적으로 종말 짓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합회는 중국의 2만 여명의 재미 학자,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해협양안 인민들의 왕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여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연합회가 중국대륙의 재미유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사무를 협조, 담당하고 방문단을 구성해 대만을 방문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진지하게 밝힌다. 우리는 대만당국의 진일보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人民日報』 1988년 3월 19일자

## 대만기자의대륙취재시주의사항

### 臺灣記者來大陸采訪注意事項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대변인 / 1989년 9월 15일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 겸 대변인 唐樹備는 오늘 오전 본사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최근 년 간에 대만기자들이 대만당국의 봉쇄를 돌파하고 조국대륙에 와서 취재하여 대륙의 사실 상황을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양안인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기자들의 대륙에서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취재활동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기자들이 대륙에 와서 취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륙취재를 요구하는 대만기자는 사전에 신화사 홍콩지사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소속 신문사의 공식위임장, 기자이력서와 구체적인 취재계획(취재항목과 대상, 취재지구와 체류시간 등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 동의 후 입국증명을 발급하며, 취재기한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대만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하고 소식을 실는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등 언론기관의 기자, 편집(촬영, 녹화 인원 등 포함)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재신

청을 수리한다.

대만기자는 입국취재 인가를 받은 후 중국기자협회에 가서 「취재증」을 수령하여 「취재증」을 소지하고 취재해야 한다. 「취재증」은 단수증명으로서 기한이 지나면 무효로 된다. 취재 활동을 할 때마다 「취재증」을 제시해야 한다. 취재가 끝나면 「취재증」을 중국기자협회나 그 위탁받은 접대단위에 반납해야 한다.

중국기자협회 또는 위탁한 언론기관이 책임지고 대륙에 와서 취재하는 대만기자를 접대한다. 대만기자가 대륙에 와서 중요한 정치활동이나 대형 학술,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교류활동을 전문 취재할 경우에는 주최자 측에서 접대를 맡되 여전히 중국기자협회의 「취재증」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대륙에 온 후에 주최 측에서 해당 활동 취재기자증을 추가 발급해준다. 취재는 신청한 내용범위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대만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은 접대단위에서 도와주고 연락해 주어야 하며 사전에 취재내용을 취재 받는 단위와 개인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은 대만의 언론기관이 대륙에 주재기자를 파견하거나 기자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수리하지 않는다. 대만의 언론기관은 대륙인원 또는 대륙에 있는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 동포를 특약기자나 통신원으로 초빙하지 못한다. 대만기자가 대만에서 장거리전화로 진행하는 취재는 어떤 기관과 개인이든지 접수하지 못한다.

대륙에서 취재활동을 진행하는 대만기자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국가의 법률, 법령과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각기 접대단위에서

‘구두경고’를 주거나 「취재증」을 회수하거나 관계부문에서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친척방문, 관광 등 명의로 입국한 대만 기자는 어떤 형식의 취재활동도 하지 못한다.

대만기자가 취재로 대륙에 오면서 휴대한 라디오, 텔레비전, 녹화 등 설비기자재는 입국 시에 海關에 신고해야 하며, 해관은 중국기자협회 또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부의 증명과 해관의 해당규정에 따라 통관시키며, 출국 시에는 그대로 갖고나가야 한다.

\* 『新華通訊』 1989년 9월 15일



## 대만기자의대륙취재에관한규정

### 關於臺灣記者來祖國大陸采訪的規定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 1996년 12월 1일

제1조 대만기자들이 신문취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해협양안의 신문교류를 강화하고 양안인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진척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륙취재를 신청하는 대만기자가 합은 정상적으로 출판을 진행하고 뉴스를 발표하는 대만지구의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등 언론기관의 기자, 편집(촬영, 녹화 일군 포함)이어야 한다.

제3조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하 '國務院臺辦'이라 약칭)이 대만기자의 취재사업을 주관한다.

제4조 대만기자는 반드시 10일 전에 취재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천진, 요녕,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둥, 호북, 광둥, 해남, 사천과 심천시에 가서 취재할 경우에는 국무원 臺辦이 수권한 상술한 성, 시 인민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이하 '省·市臺辦'이라 약칭)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취재하고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를 취재하는 항목은 국무원 臺辦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소재 언론기관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공식위임파견증명서, 기자이력서와 구체적 취재계획(취재항목, 대상,

장소, 체류시간 등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비준 동의를 받은 후 비준서한에 의하여 입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재기한은 일반적으로 1회에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대만기자는 「취재증」을 가지고 취재하여야 한다.

대만기자가 북경에 와서 취재할 경우에 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중화전국신문기자협회(이하 '中國記協'이라 약칭)에 가서 등기하고 「취재증」을 신청, 수령하여야 한다.

대만기자가 심사비준권을 가진 성, 시에 가서 취재할 경우에는 입국증명서를 가지고 당지 성, 시 臺辦에 가서 등기를 하고 「취재증」을 신청, 수령하여야 한다.

대만기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취재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中國記協에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소재지 성, 시 臺辦에 가서 「취재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대만기자가 비준을 받고 여러 성, 시를 취재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참조하고 먼저 도착한 성, 시 臺辦에 가서 「취재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취재증」은 단수용 증명으로서 기한이 지나면 무효로 한다. 대만기자는 취재활동을 할 때 주동적으로 「취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대만기자의 취재는 각 성, 시 臺辦이나 中國記協이 책임지고 접대한다. 접대단위는 취재내용을 취재단위나 개인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대만기자가 특수한 이유로 취재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성, 시 臺辦과 中國記協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연장하여 취재하는 시간, 장소, 내용과 취재대상을 밝혀야 하며 비준을 받고 연장취재 수속을 밟은 후에

야 취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대만기자가 취재의 수요로 라디오, 텔레비전, 촬영 등 설비기재를 가지고 입국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관부문의 비준증명과 담보서한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고 입국수속을 밟아야 하며 출국할 때 원래의 물건 숫자대로 휴대해 나가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서 규정대로 처리한다.

제9조 대만기자는 취재할 때 신문기자의 직업적 도덕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꾀음을 날조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준을 받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진행하는 대만기자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대만기자는 국가의 법률, 법규와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기자의 신분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방문, 관광의 명의로 입국하여 규정에 따라 취재수속을 밟지 않고 「취재증」을 수령하지 않은 대만기자는 어떤 형태의 취재활동도 진행하지 못한다. 만일 위반하면 주관부문이 상황의 경중을 보아 경고 등 상응한 처벌을 하며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부문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국무원 臺辦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V. 경제 일반

---



## 대륙과대만간통상촉진에관한4개항건의

### 提出四點建議促進大陸和臺灣通商貿易進一步發展

대외경제무역부 부장 鄭拓彬 / 1981년 10월 6일

外貿部 부장 정척빈은 오늘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륙과 대만간의 통상무역을 어떻게 진일보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4개항의 건의를 제기하였다.

1. 대만공상업계의 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참관, 고찰하고 장사를 하고 廣州수출품교역회에 참가하고 상품전시판매회를 개최하고 회사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의 여러 수출입회사들에서도 대표를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공상업계 동포들과 무역상담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대만공상업계 동포들이 만일 해외에서 우리와 무역상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의 외국주재 무역기구, 회사 대표들이 언제든지 접대할 수 있다.

2. 有無相通하여 과부족을 조정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물자교류를 진행할 용의를 갖고 있다. 석탄, 석유, 中藥材 등 대만에서 수요하는 조국대륙의 제품들을 우리는 우대가격으로 줄 것이고 우리가 수요하는 대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하여 구입할 것이다.

3. 직접 대륙에 수출되는 대만상품에 대하여 우리는 각종 수속절차에서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4. 우리는 대만 경제부 관원들이 우리의 외무부의 해당

관원들을 만나 대륙과 대만의 통상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공동으로 협상해 정해야 할 것이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6일



# 대만금융·보험계에 대한건의 向臺灣金融界·保險界提出建議

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 / 1981년 10월 10일

중국인민은행 행장 李葆華, 중국은행 부이사장 常彦卿은 엽검영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의 조국귀환과 평화통일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오늘 각기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대만의 금융계, 보험계에 구체적인 건의를 내놓았다.

李葆華는 다음과 같이 중국인민은행의 건의를 밝혔다.

1. 양안의 금융, 보험부문과 금융계, 보험계 인사들이 만나서 은행, 보험업무 합작문제를 상담할 것을 바란다.
2. 양안의 금융, 보험부문과 금융계, 보험계 인사들이 서로 방문하고 학술 및 경험 교류를 진행하기 바란다.
3. 대만 각 계층 인사들이 대륙에 와서 투자하고 각종 경제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중국인민은행은 제반 편리를 제공해주며 자금유통 면에서 대륙의 기업과 동일시할 것이다.
4. 대륙의 보험회사와 대만의 보험회사는 업무상 효과적으로 합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청산 면에서 중국은행은 대만의 대외무역 공상기업 및 은행들과 효과적인 합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常彦卿은 다음과 같이 중국은행의 건의를 밝혔다.

1. 쌍방이 업무관계를 맺고 무역, 비 무역의 일체 환어

음업무를 직접 취급하기 바란다.

2. 쌍방이 직접적인 업무관계를 맺지 못한 기간에는 각자가 홍콩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기 바란다.

3. 중국은행은 대만동포들에게 예금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예금인출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다.

4. 쌍방이 서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방문하고 은행사업 경험을 교류할 수 있기 바란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10일

## 대만과수산업을공동발전시킬데관한4개항결정

### 就大陸和臺灣進一步發展祖國水產業發表談話

국가수산총국 국장 肖鵬 / 1981년 10월 20일

국가수산총국 국장 肖鵬은 대륙과 대만이 조국의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문제를 둘러싸고 신화사 기자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만수산업계의 관계자들이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여 우리와 손잡고 공동으로 조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조국의 영해자원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자고 말했다.

肖鵬은 엽검영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의 조국귀환과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총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1. 해상에서의 대만어민에 대한 구조사업과 대륙연해항구에 태풍을 피해 들어오는 대만어민들을 접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외에 대만과 금문, 마조 등 도서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관계자들이 고향에 돌아와 친척친구를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륙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2. 우리는 대만의 수산과학계의 관계자들이 조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륙과 수산과학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조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를 공동으로 탐구하는 것을 환영하며 동시에 쌍방이 어업대표단과 어

업임원들을 서로 파견하여 참관방문하기를 희망한다.

3. 대만수산업계와 공산업계가 대륙에 와서 투자하여 수산물 생산과 가공업 경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대만에서 대륙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바라는 어로물자에 대해서 우리는 우대가격으로 줄 것이며 대륙과 대만사이의 수산물 무역을 전개할 것이다.

4. 조국영해의 수산물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상, 협조하고 해상 생산질서를 지키고 어업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초봉은 우리는 언제든지 대륙과 대만사이의 수산업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대만 수산부문과 협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같이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人民日報』 1981년 10월 21일

## 대륙친척방문대만동포의보험에관한규정

### 爲臺胞來祖國大陸新設多種保險

中國人民保險公司 / 1987년 10월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돌아와 친척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기간에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인민보험 회사에서는 며칠 전에 4개항의 신규규정을 내놓았다.

1. 친척방문관광에서 실외활동이 많은 특징에 근거하여 대만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상해, 치료비, 수화물을 망라한 일괄적인 상해보험업무를 개설한다.

2. 대만당국이 11월 2일 친척방문을 허용한 날로부터 대만동포가 단기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원래 규정액에서 20% 할인해 준다.

3. 상해보험의 가입금의 多少는 대만동포가 자체로 결정한다. 여러 가지 화폐로 보험에 들 수 있는데 달러, 엔화, 홍콩달러, 외화인민폐나 인민폐 모두 가능하며 배상 시에는 동일화폐로 지급해 준다.

4. 이밖에 중국인민보험회사에서 이미 개설한 각종 생명보험, 재산보험, 화물운송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대만동포들에게 개방한다.

중국인민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2,600여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광둥, 복건의 각 현마다 모두 보험기구가 설

치되어 있다.

\* 『人民日報』 1987년 10월 25일

## 대만동포에대한외화태환서비스제공관련통지

### 通知爲臺胞兌換外幣提供服務

中國銀行 總行 / 1987년 11월 4일

1987년 11월 4일 중국은행 본부는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을 하는 대만동포들에게 외화태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 지방에 통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각지의 은행분점과 해관, 공항, 호텔, 백화점에 설치된 국가태환소에서는 국가외화관리국에서 공시한 자유태환의 15종 외화에 한하여 대만동포들에게 태환업무를 제공해준다. 대만동포는 이 15종 외화를 무한정으로 대륙에 송금하고 휴대해 입국하여 환전할 수 있다.

대만동포의 자금휴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은 대만동포가 소지한 발달카드, 위이싸카드, 마스터카드, JCB카드, 대래이카드, 백만카드, 운통카드 등 7종의 신용카드를 취급한다. 대만동포는 조국대륙에서 상기 카드를 가지고 근 100여개의 대중도시들에 설치된 1,500여개의 중국은행 지정 영업망에서 환전하거나 직접 쇼핑할 수 있다.

중국은행은 자기와 대리계약을 맺고 어음모본을 갖고 있는 외국여행자수표, 국제어음과 세계어음 등도 취급한다.

대만동포가 대만화폐를 휴대해 들어와 환전하려 할 경우 중국은행은 융통적으로 처리하여 인민폐로 환전해주고 화교 외화우대를 제공해 준다. 중국은행은 대만화폐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지만 특종인민폐 예금구좌 설치업무를 취급한다.

## 대만동포의 휴대외화사용에 관한기자질문에답변

### 就臺胞來大陸携入外滙使用問題答記者問

國家外滙管理局 / 1987년 12월 30일

국가외화관리국의 책임자는 12월 30일 대만동포의 대륙 친척방문 관광 시에 휴대한 외화사용문제를 둘러싸고 신화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질문: 대만동포들이 휴대한 자유태환화폐를 외화권으로 환전할 수 있는가? 어느 곳에서 환전해 주는가?

답변: 국가외화관리국에서 공시한 18종 자유태환화폐는 모두 외화권으로 환전할 수 있다. 각지의 중국은행과 그 환전소, 대리환전소와 국가외화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화태환업무를 경영하는 은행에서 모두 환전해 준다.

질문: 무엇 때문에 외화권을 사용하는가? 외화권 액면은 몇 가지로 구성되었는가?

답변: 중국은행은 1980년 4월 1일부터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외화권을 발행하였는데 주요하게 단기간 중국에 와있는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동포, 대만동포,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영사관·민간기구 및 상주인원 등이 국내의 지정상점에서 쇼핑하거나 노무비를 지급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화권의 全稱은 「외화태화권」이다. 액면은 100元, 50元, 10元, 5元, 1元, 5角, 1角 등 7종으로 되어있는데 인민폐와 등가이다.



질문: 어떤 곳에서 꼭 외화권을 사용해야 하는가?

답변: 외화권의 사용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동포, 대만동포를 전문 접대하는 각지의 여행사, 우의상점, 외국선박공급회사, 공예미술품상점, 문화재상점, 대외무역센터와 수입상품매대 ②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동포, 대만동포를 전문 접대하는 호텔, 구락부 ③국제·국내열차, 국제해운 및 內河 관광선박의 탑승권 요금과 휴대품·물품 탁송비 ④국내외의 비행기표 요금과 휴대품·물품 탁송비 ⑤국제전신, 국제소포 비용과 국가외화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화권을 받는 단위 등이다.

질문: 외화권 비지정 장소에서 외화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사용할 수 있다. 외화권은 인민폐와 등가이므로 외화권 비지정 장소에서도 쓸 수 있다.

질문: 환전할 때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

답변: 대만동포는 환전할 때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서 발급한 대만동포라고 밝힌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을 소지하거나 중국홍콩여행사에서 대리 발급했거나 해당 부문에서 발급한 「대만동포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질문: 대만동포가 외화를 개인과 환전하거나 외화권을 개인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에 국가외화관리규정에 위반되는가?

답변: 위반된다. 외화는 중국은행이나 그 환전소, 대리환전소나 국가외화관리국의 비준을 받고 외화태환업무를 경영하는 은행에서 환전해야 하지 개인적으로 환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국가외화관리규정에 위반된다.

질문: 대만동포가 휴대한 자유태환외화를 태환할 때 금액 제한이 있는가? 세금과세가 있는가?

답변: 금액제한이 없고, 세금과세도 없다.

질문: 대만동포가 대륙을 떠날 때 남은 외화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환전할 때 은행에서 발급해 준 「태환계산서」를 가지고 6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원래의 화폐로 환전하거나 기타 자유태환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태환계산서」를 가지고 경외에로 나가거나 다시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질문: 국내에서 대만동포가 개인외화예금구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외화예금구좌를 설치할 수 있는 화폐로는 달러, 파운드, 마르크, 엔, 홍콩달러, 프랑스 프랑 등이 있다. 대만동포는 휴대한 자유태환화폐를 상기 임의의 화폐로 환산하여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동일 화폐로 이자를 계산하며, 언제든지 예금, 인출할 수 있고 경외로 송금할 수 있다.

질문: 외화예금에 한해서 최저예금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답변: 외화예금최저한도액에 대하여 규정이 있다. 정기예금은 인민폐 50元の 등가 외화이어야 하고 당좌예금은 인민폐 20元の 등가 외화이어야 한다.

\* 『人民日報』 1987년 12월 31일

#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 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

국무원 총리 李鵬 / 1988년 7월 3일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호)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이 1988년 6월 25일 국무원 제 1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제 이를 공포·시행한다.

總理 李鵬  
1988년 7월 3일

###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제1조 대륙과 대만지구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조국해협양안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대만의 회사, 기업과 개인 (이하 '대만투자자'라고 통칭)이 대륙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별구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가 해남성과 복건성, 광둥성, 절강성 등 연해지대의 劃定한 도시와 지구에 와서 토지개발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에서 아래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 ①대만투자자가 전부 자본을 소유한 기업을 운영한다.
- ②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을 운영한다.
- ③보상무역, 수입원료에 의한 가공조립, 합작생산을 진행한다.
- ④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 ⑤부동산에 투자한다.
- ⑥법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개발, 경영한다.
- ⑦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제4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의 공업, 농업, 서비스업과 사회 및 경제발전 방향에 맞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는 각 지방 인민정부의 해당부문에서 공포한 항목에서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체로 투자항목 의향을 정해 투자지역의 대외경제무역부문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대만투자자가 투자하여 제품수출형 기업과 선진 기술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며 상응하게 우대해 준다.

제5조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운영하는 전부 자본 소유의 기업,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이하 '대만 동포투자기업'이라 통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섭외경제법률, 법규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상응한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해 준다.

제6조 대만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 기계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특유기술로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구입한 자산, 공업

재산권, 투자소득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의하여 이양, 상속할 수 있다.

투자자는 대륙에서 활동할 때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대만투자자의 투자와 기타 자산에 대하여 국유화하지 않는다.

제9조 국가가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징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상응한 보상을 해준다.

제10조 대만투자자가 투자하여 획득한 합법적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과 결산 후의 자금은 법에 의하여 경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1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본 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생산용자동차, 사무용설비와 대만동포 개인이 기업활동 시 개인용으로 쓰는 합리한 수량의 생활용품과 교통수단에 대하여 수입관세, 工商統一稅를 면제해 주고 수입허가증 수속을 면제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수출제품 생산에 쓰는 원자재, 연료, 부품, 부속품, 부대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공상통일세를 면제하고 수입허가증 수속을 면제하며 세관이 감독 관리한다. 상기 원료와 부품이 대륙에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다시 밟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하여 국가수출제한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12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대륙의 금융기관에서 차관할 수도 있고 경외의 금융기관에서 차관할 수도 있으며 본

기업의 자산과 권익으로 담보할 수 있다.

제13조 대만투자자가 전부 자산을 소유한 기업의 경영기한은 투자자가 자체로 결정하며, 합작경영기업과 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한은 합작하거나 합자하는 각 측이 협상해 확정하며 경영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합자경영기업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의 위임, 합작경영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구성과 이사장의 위임 또는 연합관리기구 주임의 위임은 출자액 비율 또는 합작조건을 참조하여 합자, 합작 각 측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계약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한다. 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하지 못한다.

제16조 대륙에 투자한 대만동포 개인과 대만동포투자기업이 경외에서 초빙한 기술, 관리인원은 복수 출입국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에서 투자할 때 대륙의 친척 친구를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적 효력을 가진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제18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밀집된 지구에서 대만투자자는 현지 인민정부에 신청해 대만상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 대만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대륙의 합자, 합작측이 책임지고 신청하며, 대만투자자가 전부자본을 소유한 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만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륙의 친척, 친구, 자문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의 기업설립신청은 현지 대외경제무역부문이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비준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수리한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심사 비준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부문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비준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 방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영수해야 한다.

제20조 대륙에 투자한 대만투자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이나 계약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들이 가급적으로 협상이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 화해하려 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하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이나 사후에 합의를 본다면 중재협약에 근거하여 대륙 또는 홍콩의 중재기구에 회부해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기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서면 중재협약을 맺지 못한 분쟁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만투자자대우문제에 관한담화

### 就臺灣投資者待遇問題發表的談話

대외경제무역부 대변인 / 1989년 1월 23일

대외경제무역부 대변인 劉向東은 대만투자자의 대우문제에 관하여 오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기본건설규모를 줄이면서 외상투자항목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한 항목에 대하여 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대만투자자는 여러 가지 특수대우를 향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건설항목을 줄인 후 외자유치에서 국민경제건설에 필요한 항목들을 계획적으로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는”(重合同, 守信用) 원칙을 견지하고 체결한 계약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의 외상투자항목체결 건수, 실시항목과 투자자금은 모두 상반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다.

대만당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三通」 건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대만동포들은 부단히 당국의 방해를 피해 대륙에 와서 투자하고 있다. 26개 성, 시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미 비준된 대만동포신분으로 직접 투자하는 항목이 435개이고 투자금액은 5.2억불에 달한다.

대만투자자는 外商들보다 여러 가지 특수한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면 투자영역이 넓어 우리가 공포한 항목 외의 기타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방식에 융통성이 있어



「三資企業」(합자·합작·독자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외에 대륙의 주식채권과 가옥을 구입할 수 있으며, 대만투자자가 합자·합작 항목의 이사장 또는 상당한 직무를 맡을 수 있으며, 심사비준수속이 더욱 간편하고, 투자경영기한 제한이 없으며, 원자재·제품시장 등 면에서 대륙의 국영기업보다 더욱 특혜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투자자의 투자와 기타 자산에 대하여 국유화를 시행하지 않는다.

\* 『人民日報』 1989년 1월 24일

## 양안경제 · 무역교류촉진에 관한 5개항 원칙

### 兩岸經貿交流五項原則

대외경제무역부 대변인 / 1991년 7월 2일

대외경제무역부 대변인은 오늘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안경제무역교류를 진일보 촉진하기 위한 5개항 원칙을 제시하였다.

대변인은 먼저 양안경제무역교류의 발전 과정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여년 이래 해협양안의 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양안의 경제무역교류의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다. 통계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90년까지 현재 양안의 간접무역액은 누계 157.4억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44.3%에 달하였다. 대륙에서의 대만공상업체 인사들의 투자는 신속히 늘어났는데, 지난해 말 현재로 대륙에 있는 대만기업은 2,000여개에 달한다. 실천이 증명해주는 바와 같이 양안경제무역연계의 확대는 양안의 경제가 서로 보완하고 이익을 주고 공동으로 발전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만당국이 여전히 「三不政策」을 견지하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의 교류가 여전히 간접적이고 일방적인 상태에 처해있고 양안의 관계가 관건적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대립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국의 조속한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양안

동포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

대만은 자고로 조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인위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대륙과 대만은 40여년이나 갈라져 있었다. 장기간 분단상태에 처해 있어 일부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왕, 접촉, 담화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간격을 없애고 동일인식을 넓히고 신용관계를 수립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양안의 연계를 '상화'하고 직접, 쌍방향의 「三通」을 조속히 실현하여 동일인식을 넓히고 신용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동일인식이 있고 상호 신용이 있으면 통일실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목적에서 우리는 양안 공상업계의 이익을 충분히 돌봐주는 전제 하에서 양안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아래의 5개항 원칙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직접 쌍방향 교류의 원칙: 지금 대륙은 이미 세계 5대주 4대양의 180여개 나라 및 지구들과 경제무역 연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 10여 년 간에는 홍콩·마카오지구와의 경제연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그런데 지적에 있는 대만동포들과는 제3자를 통하여 통상해야 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인정과 도리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는 양안의 상인들에게 경제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양안의 교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동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간접적이고 일방적인 경제교류 활동에서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쌍방이 적당한 방식으로 직접 상담하여야만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양안의 직접적이고 쌍방향 교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2. 호혜의 원칙: 양안경제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륙은 땅이 넓고 物産과 인력자원이 풍부하여 공업기초와

기술력이 튼튼하고 시장이 크며 첨단기술 개발능력과 종합경제 실력이 강하다. 대만은 해외시장 개척, 농업과학기술 발전, 일부 실용기술개발과 관리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좋은 경험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양안에서 평등호혜,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교류를 진행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틀림 없이 쌍방이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다양화의 원칙: 양안의 경제무역교류는 무역, 투자영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기술교류, 과학연구, 노무협작, 광고전시, 교통운수, 자문봉사 등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양안에서는 각종 방식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양안에서는 각종 방식으로 합작하여 국제분업과 경쟁에 같이 참여하여 전체 중화민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4. 장기 안정의 원칙: 양안의 경제무역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절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며 우리가 장기간 견지해 나가야 할 기본방침으로서 나라 실정과 민심의 흐름에 맞는 것이다. 그 목적은 대륙과 대만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자는데 있다. 양안 공상업계의 이익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안무역중의 주요 대중상품의 교역에서 중장기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온당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5. 약속이행의 원칙: 양안에서는 상대측 제조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가급적으로 완벽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양안의 제조업자들이 각종 교류활동을 진행하는데 일체의 가능한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방이 경제무역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 쌍방의 제조업자들은 계약을 지키고 계약을 어기면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양안경제무역조정기구에서 중재할 수 있다.

이 5개항의 원칙은 우리가 최근 년 간의 실천경험을 총화한 기초 위에서 양안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다. 우리는 대만 당국과 대만 공상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그것을 완벽화시킴으로써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양안 경제무역 교류의 지도원칙으로 삼으려 한다. 우리는 대만 공상업계의 각 민간단체와도 이런 원칙의 구체적 실시 절차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용의가 있다. 요컨대 우리는 양안의 경제무역 교류에 돌파적 진전이 생기고 양안의 경제변영과 조국의 평화통일에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人民日報』 1991년 7월 3일

#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

## 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1994년 3월 5일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0호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법」은 1994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4년 3월 5일

###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

제1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해협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만동포의 투자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않고 대만동포투자에 대한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법에서 대만동포투자라 함은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기타 성, 자치구, 직

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의하여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와 투자수의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대만동포의 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국유화하지 않고 징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하여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5조 대만동포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6조 대만동포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 기계설비 또는 기타 현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대만동포투자자는 투자에서 얻은 수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제7조 대만동포투자자는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 대만동포전액투자기업(이하 '대만동포투자기업'이라 약칭)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률과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투자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의 설립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고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제8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국무원이 정한 부문이나 지방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심사비준기관은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 설립신청이 비준된 후 신청인은 비준

증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9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법률과 행정법규,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그 경영관리의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에서는 법에 의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대만동포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수익, 기타 합법적 수입, 청산 후 자금은 법에 의하여 대만이나 境外로 송금할 수 있다.

제12조 대만동포투자자는 친척, 친구를 투자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장려관련 규정에 의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대만동포투자자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서의 중재조항이나 사후 달성한 서면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않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VI. 지적 소유권

---



## 홍콩 · 마카오 · 대만작가의 원고료청산에 관한 통지

### 關於清理港 · 澳 · 臺作者稿酬的通知

國家版權局 / 1987년 11월 16일

이 통지는 중국정부가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 작품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보충적 문건으로서 1987년 11월 16일 국가판권국이 공포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륙 각 출판사와 잡지사에서는 1980년 7월 1일 이후에 중판, 발표, 轉載, 개편한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작품에 대하여 한 차례의 청산을 진행해 원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따라 계산해주거나 그것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통지를 공포한 날로부터 출판관리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출판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작품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작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의 서면수권을 받아야 하며 수권을 받지 못한 것은 출판하지 못한다.

## 대만동포의작품판권문제에관한잠정규정

### 關於出版臺灣同胞作品板權問題的暫行規定

國家板權局 / 1987년 12월 26일

이 규정은 중국정부가 대만동포작품의 판권을 보호하고  
해협양안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륙에서 출판하는  
대만작품의 판권문제에 대한 것으로 1987년 12월 26일 국가  
판권국에서 공포하였다.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동포작가는 우리나라 현행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하여  
대륙의 작가와 동등한 작품의 판권을 향유한다.

수권에 의하여 출판하는 대만동포작품에 대해서는 모두  
「서적원고료잠정규정」에 따라 저자나 기타 판권소유자에게  
인민폐로 보수를 주어야 한다.

대만동포가 판권을 이양하려 할 경우에는 자체로 대륙의  
출판자와 연락하거나 中華板權代理總公司가 대행해 줄 수 있  
다.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대만동포의 대륙방문특허신청에 관한 규정

### 關於臺灣同胞來大陸申請專利的具體規定

中國專利局 局長 高廬麟 / 1988년 1월 8일

대만동포가 대륙에 와서 특허를 신청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 해협양안의 과학기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국특허국 국장 高廬麟은 오늘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밝혔다.

1. 대만동포는 대륙의 동포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자기의 발명창조를 중국특허국에 특허를 신청하여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특허신청 과정에서 중국특허국과 대만동포 특허신청인의 정상적인 통신연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만동포는 특허를 신청할 때 대륙의 친척에게 위탁하여 신청절차를 밟고, 그 통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륙에서 친지에게 위탁하기 어렵거나 대륙 밖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와 香港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에 전권을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륙에서 특허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중국특허국에 제출하거나 국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중국특허국에 신청할 경우에는 확실한 대륙연계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이미 「공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참가하였다. 대만동포는 대륙동포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특허국에 제1차 공식신청을

제출하고 규정된 우선권 기한 내에 기타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는 우선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대만동포가 어느 파리조약 참가국에 제출한 제1차 공식신청에 기초하여 중국특허국에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에 중국특허국은 이를 수리한다.

4. 대만동포는 중국특허국에 제출하는 특허신청서류에 「中華民國」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며, 「中國臺灣」으로 써야 한다.

5. 대만동포는 대륙에서 특허신청을 할 때 외화인민폐(태환권)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人民日報』 1988년 1월 8일

## 대만동포의작품판권보호에관한규정

### 關於依法保護臺灣同胞作品板權的規定

國家板權局 국장 宋木文 / 1988년 4월 20일

국가판권국 국장 宋木文은 오늘 中華板權代理總公司 設立招待會에서 대륙에서 대만동포작품을 사용하는 판권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국가판권국에서 최근에 진일보한 규정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만동포는 자기가 창작한 작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행 해당 법률, 규제에 의하여 대륙의 작자들과 동등한 판권을 향유한다.

2. 대륙에서 대만동포의 작품을 발표, 轉載, 중판, 번역 또는 개편 출판할 경우에는 모두 작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의 수권을 받고 판권이양 또는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수권에 의하여 대만동포의 작품을 출판할 경우에 출판자는 국가출판국에서 1980년 제정한 「서적원고료에관한잠정규정」과 문화부에서 1984년 공포한 「서적원고료잠정규정」에 따라 저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견본을 증정해야 하며, 원고료는 모두 인민폐로 지불한다.

4. 대만동포가 대륙에 판권을 이양하거나 수권하여 작품을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사무를 자체로 진행할 수도 있고 친지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직접 대륙의 출판자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판권대리기구인 中華板權代理

總公司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5. 대만동포의 위탁을 받고 대륙에 판권을 이양하거나 작품의 사용에 대해 수권하는 대리인은 공증을 거친 저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6. 1988년 3월 1일 이후 대륙의 출판자나 기타 사람이 대만동포의 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판권소유자는 권리침해자 소재지의 판권관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7. 대만저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륙에서 대만 판권업무를 취급하는 대리기구는 반드시 국가판권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이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대만판권업무를 대리하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대륙에서 대만작자의 작품을 출판하든, 또는 대만에서 대륙작자의 작품을 출판하든 지 간에 대륙의 저자와 출판자는 대만의 출판자, 저자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국가판권국에 보고하여 심사,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8. 상기 규정은 홍콩·마카오동포들의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87년 국가판권국에서는 전국 각 출판단위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내려 보냈다. “1980년 7월 1일 후에 대만동포작품을 중판(번체자를 간체자로 고친 것 포함), 발표, 전재 또는 개편한 현황을 즉시 한차례 정리해야 한다.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작품출판 또는 발표시기의 원고료 표준과 방법에 따라 원고료를 계산하여 항목으로 단독 설정해 보존해야 한다. 일단 저자나 법정 상속자 또는 위탁받은 사람이 영수하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급해주어야 한다.”

국가판권국에서는 저자가 여러 출판단위에서 각기 영수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각 출판단위들이 상술한 정리 현황을 中華板權代理總公司에 넘겨 총공사가 통일적으로 대리 영수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출판, 판권분야의 주관당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각기 해협양안의 문화교류에 편리를 제공해줄 용의를 갖고 있다. 국가판권국과 대륙의 각 출판단위들은 대만에서 대륙의 작품을 출판하는데 가급적으로 편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대만에서 대륙의 작품을 출판하려 할 경우에 직접 저자 또는 판권소유자와 연락하거나 중화판권대리총공사와 연락하여 사용허가 또는 판권이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륙의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판권국에 가서 심사등기수속을 밟음으로써 보장을 취득해야 한다.

해협양안의 실정을 감안하고 대만 출판자에게 편리를 주기 위하여 대륙에서 이미 출판한 작품에 대해서는 국가판권국에서 비준한 대리공사가 대만에서 재판(간체자를 번체자로 고치는 것 포함)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대만에서 대륙의 작품을 출판하면서 작품에 대해 일부 삭제 또는 개정을 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론 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작품의 완성성에 손상을 주거나 저자의 명성에 손상을 주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대륙저자의 원고료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 『新華通訊』 1988년 4월 20일

# 대륙과대만 · 홍콩 · 마카오판권무역계약심의방법 에 관한통지

## 關於大陸與臺 · 港 · 澳板權貿易合同審核辦法的通知

---

國家板權局 / 1988년 11월 2일

이 통지는 1988년 11월 2일 국가판권국에서 공포한 것으로 해협양안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저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출판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자는데 취지를 둔 문건이다.

통지는 주로 계약심의의 방법, 계약심의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출판무역 사업이 많은 성, 시들에서 中華板權代理分公司 또는 辦事處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대만·홍콩·마카오작품출판및도서복사에관한규정

### 關於出版臺港澳作品和翻印臺港澳圖書的規定

國家新聞出版署 / 1988년 11월 21일

국가신문출판서는 1988년 11월 21일 「대만·홍콩·마카오작품출판및도서복사에관한규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문건은 대륙에서 대만, 홍콩·마카오 작품을 출판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 도서를 복사할 때의 제목선정, 출판사, 도서발행 등 방면과 관련한 규정을 내놓았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만, 홍콩·마카오는 정치제도 이데올로기에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만, 홍콩·마카오 도서를 출판할 경우에는 엄격히 선택해야 하며, 우리에게 확실히 유용한 것을 적절히 출판해야 한다. 정치상 반동적이거나 격조가 낮고 별로 가치가 없고 심지어 유해한 도서는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정치사상내용이 좋지 않지만 확실히 참고할 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자의 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 신문출판서에 특별보고 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판한 대만, 홍콩·마카오 도서는 일률적으로 新華書店에 넘겨 발행해야 하며, 단체 또는 개인발행단위를 통하여 도매해서는 안 된다. 대만, 홍콩·마카오 지구에 판매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업무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재 대만, 홍콩, 마카오 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들이 많아 도서품질표준을 엄격히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新聞出版署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본 규정 집행 현황에 대해 검열할 것이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체 상황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대만 · 홍콩 · 마카오작가의도서검증계약심의등기  
번호제시에관한통지

關於徵訂臺港澳作者的圖書應出示合同審核登記號  
的通知

---

國家新聞出版署 · 國家版權局 / 1989년 2월 17일

이 통지는 1989년 2월 17일 신문출판서와 국가판권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것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 작가의 도서 구입예약을 주문할 경우에 계약심사등록번호의 제시를 규정한 통지이다. 그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판권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동일작가작품의 중복출판을 피하고 작품과 출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만, 홍콩, 마카오 작가의 도서 구입주문을 모집하는 발행단위들에서는 출판단위가 판권관리기관에서 발급한 판권무역계약심사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 해협양안제조업자등록상표동등대우에 관한정책

### 海峽兩岸廠商注冊商標一視同仁

國家工商局 국장 李繼忠 / 1989년 2월 22일

국가공상국 국장 李繼忠은 오늘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만 제조업자가 대륙에 와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중국의 상표주관기관은 이에 대해 대륙의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과 대륙은 모두 조국 영토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므로 대만 제조업자들이 대륙에 와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해협양안의 경제무역왕래를 촉진하고 대만 제조업자들의 상표권익을 보호하는데 유익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줄곧 열성적으로 환영하고 편리를 제공해주는 태도를 취해왔다.

대만기업들이 대륙에 와서 상표를 등록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상국 상표국에서는 대만 제조업자들이 대륙에 와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상표주관기관에서 공증을 면해주고 대륙의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표신청에 대해서는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등록, 비준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전용권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해협양안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홍콩에 있는 중국상표

대리기구를 지정하여 대만 제조업자가 대륙에 와서 상표를 등록하는 사무를 대리하게 할 것이다.

소식에 의하면 1988년 3월부터 어제까지 현재 국가공상국 상표국에서는 대만상표등록 765건을 접수하였고 이미 11건이 비준, 등록되었다.

\* 『인민일보』 1989년 2월 22일





---

## VII. 사법 일반

---



## 대만동포법률서비스업무제공에관한몇가지규정

### 對臺胞臺屬提供法律服務工作幾項具體規定和要求

司法部 / 1987년 11월 5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5일 개최된 「대만동포 및 권속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공증원·변호사 좌담회」에서 사법부가 제시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공증업무는 반드시 공증의 관할원칙에 따라 하며, 대만동포가 신청한 공증사항을 취급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열성적으로 해야 하며, 아국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대만동포의 위탁을 받고 법률사실을 조사하고, 경제분쟁 소송활동에 참가하며,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다.

# 대만이주자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전범죄행위 불추소에관한공고

## 關於不再追訴去臺人員建國前罪行的公告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1988년 3월 14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오늘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前 범죄행위 불추소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조국대륙에 와서 친척방문관광을 하는 대만동포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해협양안의 「三通」을 촉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前 범죄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76조의 범죄추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불추소하기로 결정한다.

대륙에 오는 대만동포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친척방문, 관광, 무역, 투자 등 정당한 활동은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다.

\* 『新華通訊』 1988년 3월 14일

## 대만이주자와대륙잔류배우자간의 혼인관계문제처리의견에관한통지

### 關於去臺人員與其留在大陸的配偶之間 婚姻關係問題處理意見的通知

民政部·司法部 / 1988년 6월

1988년 6월 민정부와 사법부는 대만이주자와 대륙잔류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문제 처리의견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공포하였다. 통지는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각종 혼인관계에 대하여 5개항의 규정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이 헤어진 후 이혼수속을 밟지 않았고, 또 모두 재혼하지도 않았을 경우에 그 혼인관계의 존속을 인정해준다.

2. 쌍방이 헤어진 후 대륙에 있는 일방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만에 간 일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였지만 쌍방이 모두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할 경우에 複婚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쌍방이 헤어진 후 대만에 간 일방이 대만의 관련 법률에 따라 대륙에 있는 일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였지만 쌍방이 모두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할 경우에 그 혼인관계의 존속을 인정한다.

4. 쌍방이 헤어진 후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후의 배우

자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현재 쌍방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할 경우에 새로 결혼등록을 해야 한다.

5. 쌍방이 헤어진 후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후의 배우자가 존재하나 현재 쌍방이 원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할 경우에는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 우선 재혼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제한 다음에 결혼의 해당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 양안혼인문제관련기자질문에대한답변

### 就兩岸婚姻問題答記者問

民政部 / 1988년 6월

며칠전 민정부의 해당 책임자는 대만동포와 대륙동포 사이의 혼인문제와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질문: 대만당국이 일반 민중들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 이래 해협양안 민중 사이의 왕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만동포가 대륙에서 대륙 동포와 결혼하려 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정부의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대만동포와 대륙 동포 사이의 결혼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내놓았다. 규정에는 이미 대륙에 정착했거나 임시로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 장사를 하는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 결혼하려 할 때의 그 신청수리기관과 필요한 증명서류가 밝혀져 있다.

질문: 이미 대륙에 정착한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 결혼하려 할 경우에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답변: 이미 대륙에 정착한 대만동포의 대륙 동포와의 결혼신청은 1986년 3월 15일 민정부에서 공포한 「혼인등록방법」에 따라 縣級 이상 민정부에서 수리한다.

결혼등록을 신청하는 대만동포 일방 당사자는 대륙정착 후의 소재단위 또는 호적소재지의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에서 발급한 혼인상황증명과 대륙정착전의 혼인상황증명을 혼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중 대륙에 돌아와 정착하기

전에 대만에서 거주했을 경우에는 대만공증기관에서 발급한 무배우자증명이나 공증을 거친 본인 호적등록부 원부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을 떠난 후 홍콩·마카오지구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륙에 와서 정착한 경우에는 우리 사법부에서 위탁한 홍콩변호사가 식별한 혼인상황증명 또는 마카오 혼인·사망등록국에서 발급한 혼인상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을 떠난 후 외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륙에 와서 정착한 경우에는 그 거주국 공증기관이 작성하고 그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에서 인증한 무배우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증명을 취득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기입하고 대륙의 거주지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무배우자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문: 임시로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 장사를 하는 대만동포가 대륙의 동포와 결혼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속해야 하는가?

답변: 해협양안의 현 실정에서 보면 임시로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 장사를 하는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 결혼을 하면 쌍방 당사자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완곡하게 말려야 한다.

질문: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사자가 여전히 결혼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省級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혼인등록기관에서 수리한다.

성급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혼인등록기관은 이와 같은 결혼신청을 수리할 때, 대만동포 일방 당사자가 아래의 증명서



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①홍콩중국여행사에서 대리 발급한 또는 공안기관 변경 검사부문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대만동포여행증명서」나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포르주재 상무대표처를 포함)에서 발급한 '臺灣同胞'라는 글자를 기입한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여권」

②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호적증명」

③본인의 신분증명과 혼인상황증명

이 혼인상황증명은 대륙에 정착하는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의 결혼을 신청할 때 소지하는 대륙정착 전의 혼인상황증명과 같다. 상술한 증명을 취득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무배우자성명서」의 방식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④혼인등록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작성한 결혼 전 건강 검사증명

만일 당사자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가서 정착하다가 대륙에 다시 돌아와 친척방문, 관광, 장사하는 기간에 대륙 동포와의 결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 대륙거주지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본인이 대륙을 떠나기 전에 배우자가 없었다는 또는 배우자가 있었으나 이미 이혼했거나 사망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질문: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 결혼하려 할 경우에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명 또는 배우자사망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답변: 대만 또는 홍콩·마카오지구에 거주하면서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대만동포가 대륙 동포와의 결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만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또는 사법부에서 위탁한 홍콩 변호사가 증명한, 또는 마카오 혼인·사망등기국

에서 발급한 이혼증명이나 배우자사망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증명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대만 또는 홍콩·마카오 신문에 게재된 당사자의 이혼성명서나 공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증을 거치지 않은 복사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대만 동포의 이혼증명이나 배우자사망증명은 규정에 따라 공증, 인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질문: 이미 국외나 홍콩·마카오에서 영구거주권을 취득한 대만동포와 외국국적에 가입한 대만동포가 대륙공민과의 결혼을 신청할 때는 그 신분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답변: 각기 화교, 홍콩·마카오동포, 외국인의 신분으로 확정하고 「화교와 국내공민, 홍콩·마카오동포와 대륙공민 사이의 결혼등록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과 「중국공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등록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에 따라 省級 인민정부가 지정한 혼인등록기관에서 수리한다.

\* 『人民日報』 1988년 6월 29일

# 대만 관련 민사안건처리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 關於處理涉臺民事案件的幾個法律問題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馬原 / 1988년 8월 6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馬原은 8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관련 민사안건처리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회견에서 혼인문제, 부부공동재산문제, 부양·봉양·입양에 관한 문제, 상속문제, 가옥문제, 채무문제, 소송시효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설명을 가하였다.

1. 혼인문제: 대만에 간 일부 사람들이 부부 간에 장기간 해협양안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變異가 생겼는데, 특수한 역사적 원인으로 조성된 이런 혼인분쟁에 대하여 우리는 해협양안 인민들이 장기간 갈라져 있는 실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혼인가정관계의 안정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입각하여 우리나라 혼인법 일부일처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2. 부부공동재산문제: 대만에 간 일방이 원 배우자에게 결혼 전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만일 그 재산이 몇 십 년 동안에 이미 원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모를 봉양하는데 썼거나 가정의 기타 생활소비로 썼다면 인민법원은 그를 설득하여 소송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나

재산액수가 크고 목적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 배우자, 자녀 등의 생활을 염두에 두는 상황 하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일부분 재산을 대만에 간 사람에게 분할해 줄 수 있다. 과거재산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큰 것을 틀어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부양·봉양·입양문제: 대만에 간 일방이 대륙에 돌아온 후 대륙의 일방이 성년자녀의 과거부양비를 요구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는다. 대만에 간 사람이 대륙에 돌아와 정착한 후 자기 자녀에게 봉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과 자녀의 가정경제형편에 근거하여 가급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만에 간 사람의 자녀가 이미 타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입양관계의 해제 전에는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한 봉양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입양한 자녀가 생부 또는 생모가 돌아옴으로써 입양관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만에 간 사람이 입양관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양부모, 양자녀, 생부모 3자관계의 실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4. 상속문제: 대만에 간 사람과 대만동포는 대륙 동포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향유하며, 상속자가 대만에 갔다고 하여 대륙에서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가옥문제: 가옥 典當, 매매, 임대, 대리관리와 기타 권리침해 분쟁을 포함한 민사권익방면에 속하는 가옥분쟁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受理한다.

6. 채무문제: 대만에 간 사람이 대만에 가기 전에 발생한 개인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을 겨우 인민법원

이 수리하고 사건의 사실과 쌍방의 현재 경제형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7. 소송시효문제: 대만에 간 사람과 대만동포의 소송시효기간문제에 대하여는 民法通則 제1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특수상황으로 간주해 적당히 연기할 수 있다.

해협양안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는 대륙과 대만 사법인원들의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만 관련 각종 민사사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통하여 해협양안동포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촉진하고 「三通」을 촉진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대만이주자의역사적범행불추소에관한공고

### 關於不再追訴去臺人員歷史罪行的公告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1989년 9월 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오늘 대만에 간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범죄지의 지방인민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저지른 역사적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 추소하지 않는다고 공고하였다.

이 공고가 있기 전인 지난해 3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대만이주자의중화인민공화국건국전범죄행위불추소에관한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이 공고는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다. 일부 식견이 있는 인사들과 지금 해외 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前 국민당 군대, 정부의 인원들은 연이어 편지를 보내오고 담화를 발표하여 이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분 前 국민당 군대, 정부의 인원들은 조국에 돌아와 친척방문관광을 하는데 우려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현지 인민정권이 수립되기 전의 범죄에 대한 추소 여부 문제에 대해 문의하였다.

오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상술한 국민당 군대, 정부 인원의 역사적 범행처리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梁國慶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설명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에도 일부 省과 地區들이 해방되지 못하였고, 지방인민정권이 수립되지 못하였는데, 관련 인원들이 이 기간에 이런 지구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역사적 범행에 속한다. 역사적 범행에 대하여 우리는 일찍부터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하여 왔다. 대륙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 국민당 군대, 정부 인원들에 대하여 이미 1982년에 전부 사면했거나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오늘 대만에 간 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현지 인민정부 수립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 추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역시 이런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동시에 대만에 간 인원의 범죄행위가 인민정권수립 후에 까지 이어지거나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추소기한을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계산하여 추소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추소하지 않는다.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 사형의 범죄도 20년이 지나면 더 추소하지 않는다. 반드시 추소해야 할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추소해야 할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본사기자의 질문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祝銘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를 개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 있어서 최근 년 간에 역사적 범행이 있는 일부 前 국민당 군대, 정부 인원들이 조국대륙에 친척방문관광을 와서 모두 열성적인 접대를 받았으며 그들의 역사적 범행 때문에 사법기관의 추소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조국대륙

에 와서 친척방문관광을 하고 경제,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대만, 홍콩·마카오동포들과 해외교포들의 신변, 재산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인 바, 대만당국이 해협양안의 경제, 문화교류와 양안인원의 상호 대등한 왕래를 발전시키는데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기자가 동 회견에서 입수한 정확한 소식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상기 2개 공고의 정신과 그 근거의 이유는 대만 이외의 세계 기타 지방에 있는 前 국민당 군대 및 정부 인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人民日報』 1989년 9월 9일



#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

## 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議

海協·中國公證員協會·海基會 / 1993년 4월 29일

해협양안관계협회, 중국공증원협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양안의 공증서 사용 및 조사증명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아래의 합의를 보았다.

### 1. 연계 주체

(1) 공증서 副本과 조사증명사항을 발송할 때 쌍방은 각기 중국공증원협회 또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서로 연계해야 한다.

(2) 이 합의의 기타 관련사무에 대해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가 연계한다.

### 2. 공증서 부분 발송

(1) 쌍방은 상속, 입양, 혼인, 출생, 사망, 위탁, 학력, 정착, 부양친척과 재산권리 증명과 관계되는 공증서 부분을 서로 발송하기로 동의한다.

(2) 쌍방은 공증서 사용수요에 근거하여 발송하는 공증서 부분 종류의 증감을 별도로 협상, 결정한다.

### 3. 공증서 조사 증명

#### (1) 조사증명 사유

공증서에 하기 내용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 쌍방은 서로

협조하여 조사증명을 진행해야 한다.

- ① 공증기관의 관련 접수범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② 같은 사항을 다른 공증기관에서 공증하였을 경우
- ③ 공증서 내용이 호적자료 또는 기타 보관서류자료 기재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 ④ 공증서 내용이 자기모순에 빠질 경우
- ⑤ 공증서 글자, 날인이 똑똑하지 않거나 변조,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을 경우
- ⑥ 기타 다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 ⑦ 기타 조사, 해명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2) 거절 사유

조사증명 사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공증서에 기타 증명인장을 별도로 더 날인했을 경우에는 조사증명을 맡는 일방이 이유를 붙여 해당 조사증명을 거절해야 한다.

#### (3) 회답 기한

조사증명을 맡은 일방은 조사증명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 (4) 조사증명 비용

조사증명을 제출한 일방이 조사증명을 접수한 일방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조사증명 비용기준과 그 지불방식은 쌍방이 별도로 협상, 결정한다.

### 4. 문서양식

공증서 부분, 조사증명과 회답을 송부할 때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정한 적당한 문서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5. 기타 문서

쌍방은 공증서 이외의 문서조사증명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건별로 협상하고 협조하기로 동의한다.

#### 6. 합의 이행, 변경과 중지

쌍방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합의의 변경이나 중지 시에는 쌍방이 협상을 거쳐 동의해야 한다.

#### 7. 분쟁의 해결

본 합의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은 쌍방이 조속히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8. 미정 사항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적당한 방식으로 따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 9. 서명효력 발생

이 합의는 4월 29일에 서명하고, 4부로 작성하여, 쌍방이 각기 2부씩 소지한다.

해협양안관계협회

대표

汪道涵

唐樹備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대표

辜振甫

邱進益

##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 관한합의」관련 기자질문에 대한답변

### 就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議實施問題答記者問

中國公證員協會 / 1993년 5월 29일

「汪辜會談」을 통해 서명한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 관한합의」가 오늘 정식으로 시행된다. 기자는 중국공증원협회 책임자를 방문하여 동 합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알아보았다.

질문: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 관한합의」의 서명과 이행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 이 합의의 서명은 해협양안의 관계를 한 걸음 앞으로 추진시켰고 양안의 연락과 거래를 촉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합의의 이행을 통하여 공증서 효력을 보장하게 되면 양안 인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본다.

질문: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 관한합의」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 관한합의」의 주요내용에는 연계주체, 공증서 사본, 공증서 조사증명의 우송, 문서양식 등 9개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의 약정에 의하여 중국공증원협회 또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는 공증서 사본과 공증서 조사증명을 우송하는 등 사항과 관련해 연락을 가지며 대만에 보내 사용하는

공증서와 대만에서 대륙에 보내 사용하는 공증서는 서로 상속, 입양, 혼인, 출생, 사망, 위탁, 학력, 정착, 친척부양과 재산권리증명에 관한 공증서 사본을 우송한다. 이밖에 공증기관의 접수범위 규정을 위반하고 동일사항을 다른 공증기관에서 공증했거나 공증서 내용이 호적자료 또는 기타 보관서류자료 기재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증서 내용이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공증서 글자, 날인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글자를 지우고 고쳐 쓰는 등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거나 기타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공증서 내용과 형식의 진실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합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합의의 변경 시 또는 종지 시에는 쌍방이 협상하여 동의해야 한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쌍방이 조속히 협상, 해결해야 한다. 합의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실시한다. 합의의 약정에 의하여 5월 29일부터 합의를 정식 실시한다.

질문: 중국공증원협회에서는 합의의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사업을 했는가?

답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와 각 공증처들이 합의의 내용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양안공증서사용및 조사증명에관한합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의 해당인원들이 참가한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토의를 진행했고, 이에 기초하여 「해협 양안 공증서 사용 및 조사증명 합의 실시방법」을 제정하였으며 각 공증원협회에서 집행하도록 이를 이미 인쇄, 발행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서도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합의의 이행문제를 검토하였는바, 지금 각 지방에서도

이미 기본상 준비가 다 되어있다.

질문: 「해협양안 공증서 사용 및 조사증명 합의 실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답변: 실시방법의 요구에 따르면 무릇 해협교류기금회와 연락하여 공증서 사본과 조사증명 공증서를 우송하는 사무는 중국공증원협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가 수행하며 어떤 개인이나 공증처든지, 또는 省級 이하의 공증원협회는 해 기회에 공증서 사본을 우송하거나 조사증명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각 공증원협회에서는 전문인원을 지정해 공증서 사본을 등록, 우송, 접수하고 조사증명 서한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각 공증원협회와 공증처가 합의를 이행하고 공증서 사본의 종류를 가일층 명확히 파악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하여 실시방법에서는 우송하는 공증서 사본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즉 상속에 사용되는 친척관계공증서, 위탁공증서, 사건처리상 필요한 출생·사망·혼인 등 공증서, 입양·혼인·출생·사망·학력·위탁서 공증서, 대륙주민의 대만이주 정착시 또는 대만주민의 대륙이주 정착시에 필요한 친척관계·혼인·출생 등 공증서, 친척관계·자립생존능력·신체장애·성년재학공증서, 보험비 납부 또는 의료비납부 공증서를 포함한 소득세감면에 필요한 부양친척 공증증명, 물권·채권·상속권 등 유형재산과 특허·저작권·상표 등 무형재산권을 포함한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는 재산권 공증증명 등이 다.

사본우송의 구체적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증처에서 제출한, 대만에 보내 사용하는 상기 공증서는 당사자에게 발급하여 사용하는 동시에 발급 공증처에서 공증서 사본을 소

속된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 우송해야 한다. 그 다음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서 통일적으로 공증서 사본을 해기회에 우송해야 한다. 각 공증원협회에서는 해기회에서 송부해온 대륙에서 사용하는 공증서 사본을 받은 후 등록하고 공증서 용도에 따라 공증서 사용부문에 전송해야 한다.

조사, 증명해야 할 공증서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기회에서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중국공증원협회에 우송했을 경우, 중국공증원협회에서는 그것을 3일 내에 공증제출 공증처에 전송함과 동시에 공증처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 등본을 보내야 한다. 공증처는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받은 후 10일 내에 조사증명 결과를 중국공증원협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성(자치구, 직할시)공증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 중국공증원협회에서 해기회에 회답한다.

해기회에서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해당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 보냈을 경우,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서는 3일 내에 공증제출 공증처에 전송해야 한다. 공증처에서는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받은 후 10일 내에 조사증명 결과를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에서 해기회에 회답한다.

해기회에서 조사,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증서는 합의의 제3조 제1항에서 약정한 사유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일곱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해기회에서 조사증명 요구서한에 조사증명 사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조사증명을 요구하는 공증서에 기타 증명인장을 날인했을 경우에도 조사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해기회에서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직접 공증처에 부쳐왔거나 당사자 또는 기타 단위를 통하여 보내왔을 경우에는 공증처에

서 회답하지 않는다.

공증서 사용부문에서 대만의 공증서 발급기관에 조사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사, 증명해야 할 공증서 복사본을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공증원협회 또는 중국공증원협회에 우송하고 조사증명 요구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증원협회에서 심사를 거쳐 합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등록하고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해기회에 전송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기회에서 회답하면 그 조사증명 결과를 공증서 사용부문에 전송해야 한다.

공증원협회에서 조사증명 요구서한을 우송할 때 공증서 사본에 어떤 기타 인장도 날인하지 말아야 한다. 공증서 사본 우송서한, 조사증명 요구서한, 조사증명, 회답증명은 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질문: 「양안공증서사용및조사증명에관한합의」의 효력발생 실시 이전에 해기회에서 전송해온 조사증명 요구 공증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합의 효력발생 실시 이전에 해기회에서 전송해온 조사확인 요구 공증서에 대해서는 합의 효력발생 후에 중국 공증원협회에서 조사하여 밝힌 후 회답할 것이다.

\* 『人民日報』 1993년 5월 30일



---

## VIII. 치안 · 군사

---



## 대금문 · 소금문 등 도서 포격 정지에 관한 성명

### 關於停止炮擊大·小金門等島嶼的聲明

국방부 부장 徐向前 / 197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부장 徐向前은 大金門, 小金門, 大擔, 二擔 등 도서에 대한 포격 정지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이미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大事이다. 중국과 미국의 국교 수립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만이 조국에 귀환되고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며 대만동포들은 우리의 혈육형제들이다. 臺灣, 澎湖, 今文, 馬祖의 군민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귀향하고 친구를 만나고 참관 방문하고 대만해협에서 항해하고 생산활동을 진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는 이미 오늘부터 大金門, 小金門, 大擔, 二擔 등 도서에 대한 포격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福建前線部隊에 하달하였다.

대만이 중국에 귀환되어 국가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들을 포함한 전 중국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이다. 우리는 홍콩·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을 포함한 대만동포들과 전국인민들이 틀림없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속으로

돌아올 것이며, 대만동포들과 조국의 혈육들의 상봉의 염원은  
기필코 실현될 것이다.

\* 『新華通訊』 1979년 1월 1일

## 대만및금문마조제도선전물살포정지에관한결정

### 停止向臺灣和金馬諸島空飄海漂宣傳品的決定

중국인민해방군 / 1986년 3월 21일

중국인민해방군 駐福建地區 부대 대변인은 1986년 3월 21일 臺灣 및 金門·馬祖 諸島에 대한 선전물살포 정지 결정을 선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해협지구의 정세를 진일보 완화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명령에 따라 대만과 금문, 마조제도에 대한 선전물살포를 정지하였다.

1979년 양력설에 우리가 금문, 마조 등 제도에 대한 포격을 정지한 이래 대만 측에서도 복건 연해지구에 대한 포격을 해마다 줄여왔다.

이리하여 대만해협지구의 형세는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만의 해당부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화목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선전물을 대량으로 대륙에 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안동포들의 염원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만당국이 이와 같은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루빨리 그만둘 것을 희망한다.

# 대만동포의대륙방문후안전등문제관련 기자질문에대한답변

## 就臺胞來大陸後安全等問題答記者問

공안부 부장 王芳 / 1988년 3월 17일

공안부장 王芳은 1988년 3월 17일 대만동포의 대륙방문 후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동포가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을 하는 기간에 종사하는 각종 정당한 활동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신변 및 재산이 타인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의 해당부문에서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대만동포의 신변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며,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법에 의하여 추궁할 것이다. 물론 대륙에 온 대만동포들도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1987년 11월 2일 이후 대륙에서 접대한 친척방문, 관광으로 온 대만동포는 연인원수로 3만 여명에 달한다. 상기 동포들은 대륙에 와서 친척친구방문, 장사를 하려던 염원을 실현하고, 이미 무사히 대륙을 떠났거나 지금 떠나고 있다. 사실이 증명해 주는 바와 같이 대만동포들이 대륙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을 할 때 그 신변 및 재산의 안전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다.

## 1962년 2개 「통지」의 집행 정지에 관한 공고

### 關於停止執行1962年兩個「通知」的公告

중국인민해방군 駐福建部隊 대변인 / 1988년 9월 11일

중국인민해방군 駐福建部隊 대변인은 오늘부터 1962년에 공포한 비행기, 함정을 몰고 의거해 오는 국민당장병을 장려할 데 관한 2개 「통지」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2년 대만해협 양안의 엄중한 군사적 대치상태 하에서 중국인민해방군 福建前線司令部, 政治部에서는 비행기, 함정을 몰고 의거해 오는 국민당 장병을 장려할 데 관한 2개 「통지」, 즉 비행기를 몰고 의거해 오는 대만 공군인원과 함정을 몰고 의거해 오는 대만 해군인원에 대한 장려규정과 연락방법을 공포하였다.

최근 년 간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金, 馬 諸島에 대한 폭격을 정지하고 대만에 대한 선전물 살포를 정지하여 해협양안 정세의 완화를 촉진하였다.

이제 우리는 상술한 2개 「통지」의 집행정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양안관계에 보다 화목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 『人民日報』 1988년 9월 12일





---

## IX. 기 타

---



## 대만과의기상연계수립에관한결정

### 關於與臺灣氣象部門建立正常關係準備工作的決定

중앙기상국 국장 薛偉民 / 1981년 10월 2일

중앙기상국 국장 薛偉民은 오늘 신화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중앙기상국은 대만기상부문과 정상적 연계를 맺을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말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은 대륙기상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대륙기상의 변화가 대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만은 특수한 지리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태풍의 발생, 발전과 경로를 감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기상을 갈라놓을 수 없고, 기상사업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중국은 더욱 갈라놓을 수 없다. 대륙과 대만의 기상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절박한 일이다. 따라서 중앙기상국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1. 기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적시에 교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대만 기상당국과 기상통신 연계사항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2. 중앙기상대, 복건성기상대에서 계속 대만과 대만해협에 대한 기상예보방송 서비스를 하는 외에 대만기상대가 중앙기상대, 연해 각 省·市 기상대들과 정상적인 기상예보 협

상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3. 대만 기상계 인사들이 연해 각 성·시 기상과학연구기관들과 합작하여 서로 관계가 큰 재해적 일기, 예를 들면 태풍의 발생·경로 법칙과 한류·大風 등 기상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대만이 대륙과 직접적으로 기상 간행물과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환영한다.

4. 대만기상학회에서 중국기상학회와 그 산하의 각 전문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중국기상학회에서 소집하는 각종 학술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의한다.

5. 대만 기상당국에서 관원을 대륙에 파견하여 기상사업을 고찰하고 기상사업경험을 교류하고 전국기상사업의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협상하는 것을 환영한다.

\* 『신화통신』 1981년 10월 7일

## 대만의료관계당국과의합작에관한4개항결정

### 關於和臺灣醫藥管理當局互通有無的四項決定

국가의약관리총국 국장 胡昭衡 / 1981년 10월 5일

국가의약관리총국 국장 胡昭衡은 오늘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만의약업계의 동업자, 동료, 벗들이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여 우리와 공동으로 손잡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기여할 것을 희망했다.

호소형은 영업영 위원장이 진일보 천명한 대만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의약관리총국에서 아래의 4개항의 결정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1. 대만의약업계의 동종업자들이 조국대륙과 중약재, 한방약재, 화학약품 등의 무역을 적극 전개하고 유무상통하고 상호 지지하는 것을 환영한다.

2. 대만 의약업계의 동종업자들이 조국대륙과 의약과학기술의 교류, 특히는 中藥 학술과 과학기술의 교류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국의 의약유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3. 대만 의약업계와 공상업계에서 조국대륙에 와서 투자해 의약생산업체와 과학연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4. 대만지구에 재해, 전염병 발생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약공급부문에서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5일

## 대만각계노동자의대륙방문을환영하는공개장

### 關於歡迎臺灣各業職工來大陸參觀的公開信

中華全國總工會 / 1981년 10월 12일

中華全國總公會 제9기 제3차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는 오늘 대만의 노동자형제자매들과公會 조직에 공개장을 보냈다. 공개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며 조국통일 앞에서는 누구나 책임이 있다. 조국의 물질재부와 정신재부의 창조자인 우리 종업원 군중들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마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만의 노동자들과 공회조직에 다음 3개항의 건의를 제기한다.

1. 대만 각계 노동자 형제자매들과 공회 인사들이 대륙에 와서 참관하고 휴가를 보내고 친척친구를 방문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륙 각 지방의 공회 조직과 종업원 군중들은 어느 때나 뜨겁게 접대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년 간에 해협양안의 선원들이 基隆과 기타 해외 항구에서 친선적으로 접촉,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친선거래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2. 30여 년 간이나 분단되어 온 해협양안의 인민들은 서로 소식을 전하고 혈육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有無相通하고 무역을 발전시키고 교류를 진행하여 해협양안의 경제를 번영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郵電, 교통운수, 상업분야의 종업원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대만의 郵電, 교통운수, 상업분야의 종업원들과 같이 노력하여 조속히 通郵, 通航, 通商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3. 중화전국총공회와 그 산하의 각 산업公會와 지방 총공회들은 대만의公會와 함께 상술한 활동을 전개하고 접촉하고 연계를 맺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협상할 수 있기 바란다.

\* 『新華通訊』 1981년 10월 12일

# 화교및홍콩·마카오·대만동포의기증물자 관리감독방법

## 對華僑·港澳臺同胞捐贈進口物資監管辦法

海關總署 署長 戴杰 / 1989년 12월 26일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령 제10호

여기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화교및홍콩·마카오·대만동포의  
기증물자관리감독방법」을 공포하며, 이를 1990년 1월 15일부터 시  
행한다.

署長 戴杰  
1989년 12월 26일

### 화교및홍콩·마카오·대만동포의기증물자관리감독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화교 및 홍콩·마카오,  
대만동포의 기증물자관리에 대한 국무원의 해당 규정에 근거  
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화교 및 홍콩·마카오, 대만동포가 自  
願하여 국내에 기증하는 물자에 대한 관리에 적용된다.

외국상인투자기업과 대외가공조립·보상무역을 하는 기



업의 외국측 대표, 우리나라가 파견한 외국주재(홍콩·마카오 지구 포함) 중국투자기관, 대외왕래에서 외국정부측 또는 민간경제무역단체, 외국상인이 우리나라의 관련 단위에 기증한 물자와 각종 무상원조는 화교 및 홍콩·마카오, 대만동포의 기증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수입하는 기증물자는 접수단위의 自用범위에서 제한한다.

제4조 해관은 관련 기관에서 비준한 서류에 근거하여 증여접수단위가 신고한 수입기증물자를 검사, 통관시킨다.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경제무역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 팔고 국내에서 물건을 수취”(在外售券, 境內取貨) 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기증을 포함하여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기증접수단위가 이양, 전매, 교환하지 못하며 조립, 가공하여 시장에 내다 판매하지 못한다. 국가가 전매를 실시하는 기증물자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기증물자가 자체용도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정단위가 수매한다.

제6조 해관은 비준을 받고 접수하여 본 단위의 工農業生産, 과학연구, 교수, 의료위생, 공익사업에 직접 쓰는,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기계전자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고, 기타 분야에 사용할 경우에는 규정대로 과세한다. 기타 기증물자에 대하여 자체사용에 속하는 것은 면세해주고 자체사용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규정대로 과세한다.

위에서 말한 「공익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소년아동활동시설, 유치원, 양로원과 고아원 등 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물자와 생활용품

②신체장애자 취업을 위해 설립된 생산기업이 증여를 접수한 생산자재와 신체장애자의 건강회복과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물품

③古迹보수 및 문화재보호에 직접 사용되는 물자

④환경보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 도로교량건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물자

⑤기타 공익사업

제7조 기증물자의 수입통관수속은 증여접수단위가 자체로 진행한다. 증여접수단위는 기증물자를 수입하기 전에 소재지 해관에 해당 기관의 비준서류를 제출해 심사의견을 첨부 받은 후 口岸 해관에서 수입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가짜로 기증의 명의를 빌어 화물, 물품을 수입했거나 해관의 인가 없이 수입수속을 밟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기증수입된 화물,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해관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행정처벌실시세칙」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부록 1 >

중국·대만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 차 례

I. 중국의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281
1. 국 무 원	281
<input type="checkbox"/> 대만사무관공실	
<input type="checkbox"/> 홍콩·마카오사무관공실	
<input type="checkbox"/> 교포사무관공실	
<input type="checkbox"/> 특구판공실	
<input type="checkbox"/> 국가안전부	
2. 전국인민대표대회	285
<input type="checkbox"/>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기초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화교위원회	
3. 중국공산당	286
<input type="checkbox"/> 통일전선공작부	
<input type="checkbox"/> 대만공작판공실	
<input type="checkbox"/> 대외연락부	
4. 기타 정당 및 연구소	287
<input type="checkbox"/>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input type="checkbox"/> 대만민주자치동맹	
<input type="checkbox"/>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5. 사회단체	288
<input type="checkbox"/> 대만동창회	
<input type="checkbox"/>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	
<input type="checkbox"/> 중국통일국제연의총회	
<input type="checkbox"/> 황포군사학교동창회	
<input type="checkbox"/> 중국평화통일촉진회	
<input type="checkbox"/> 대만성노병귀향친척방문협진회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관계협회	

II. 대만의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293
1. 총통부	293
<input type="checkbox"/> 국가안전회의	
<input type="checkbox"/> 국가안전국	
<input type="checkbox"/>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국가통일위원회	
2. 행정원	294
<input type="checkbox"/> 대륙공작회보	
<input type="checkbox"/> 대륙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교포사무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법률문제연구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홍콩·마카오협조회보	
<input type="checkbox"/> 마카오주재타이베이무역여유관사처	
<input type="checkbox"/> 대만복건성정부	
3. 중국국민당	296
<input type="checkbox"/> 대륙공작지도소조	
<input type="checkbox"/> 삼민주의통일중국대동맹	
<input type="checkbox"/> 중국대륙재난동포구제총회	
4. 사회단체	297
<input type="checkbox"/> 중화부녀반공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청년반공구국회	
<input type="checkbox"/> 반공애국전선	
<input type="checkbox"/> 외성인귀향친척방문촉진회	
<input type="checkbox"/> 해협양안평화촉진회	
<input type="checkbox"/> 중국통일연맹	
<input type="checkbox"/> 대만인귀향권리촉진회	
<input type="checkbox"/> 중국통일촉진회	
<input type="checkbox"/> 통일중국협진회	
<input type="checkbox"/> 중국통일건설촉진회	
<input type="checkbox"/> 해협교류기금회	
<input type="checkbox"/> 반대만독립대연합	

# I. 중국의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 1. 국무원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중국정부의 대만사무를 주관하는 사무기구이다.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의 대만에 대한 방침·정책을 관철 실시하고 《3通》을 실시하고 인원왕래와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킨다. (2)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중앙·국무원의 대만에 대한 사업방침·정책을 관철 집행한 상황을 독촉·검사한다. 관계부문과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대만사무와 관련해 국무원에 제출하는 문의를 처리한다. (3) 국내외 관련 대만사무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시에 중앙·국무원에 보고하고 해당부문에 통보한다. (4) 對대만사업에서의 현황과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관계부문을 조직하여 對대만사업의 구체적 정책법규와 의견을 제출한다. (5) 對대만경제협력·건설개발항목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대만의 자금·기술·시장을 이용하며 해당 교육·과학기술·문화·보건위생·체육 교류 등 사항을 조정한다. (6) 관계부문과 같이 대만 각 계층과 관계 분야 인사들의 방문접대사업을 진행한다. (7) 대대만사무의 대외발언을 책임진다. (8) 중앙·국무원 책임자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비서국, 종합국, 연구국, 신문국, 경제국, 교류국, 연락국, 홍콩·마카오사무국 등이 있다.

【國務院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국무원의 사무기구이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주요 기능은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근거하여 홍콩·마카오에 대한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고 홍콩·마카오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그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홍콩·마카오공작위원회와

각 관계 단위를 조직하여 홍콩·마카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연구·제정한다. (2)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홍콩·마카오의 정치·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적시에 중앙과 국무원에 반영한다. (3) 중앙을 협조하여 홍콩·마카오공작위원회의 ① 상층통일전선공작 ②노동자·학생 등 기층 균중공작 ③보도·출판·영화 등 애국선전문화교육사업 ④당그룹업무와 간부업무를 주관한다. (4) 중앙의 해당부문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관리한다. ①대외경제무역부·교통부·중국은행 등 부문들과 공동으로 홍콩·마카오의 제반 경제사업을 관리하고 홍콩·마카오에서 각 지구·각 부문의 경제활동을 조정·관리한다. ②외교부와 함께 홍콩·마카오에서 외사사업을 관리한다. ③대만판공실과 공동으로 홍콩·마카오에서 대만사업을 관리한다. ④화교사무판공실·국가관광국과 공동으로 홍콩·마카오에서 화교사무사업과 관광사업을 관리한다. ⑤문화부·국가체육위원회·라디오텔레비전방송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부·위생부 등 부문과 공동으로 내지와 홍콩·마카오간의 문화·체육·예술·과학기술 등 교류활동을 관리한다. ⑥관계부문과 공동으로 각 지구, 각 부문이 홍콩·마카오에 기구를 설립하고 관계자를 파견하는 것을 심사비준한다. (5) 광주주재연락처의 사업을 지도한다. 1司, 2司, 3司, 秘書行政司, 간부처 등 기구를 두고 있다.

**【國務院華僑事務辦公室】** 국무원의 사무기구이다. 국무원 화교사무판공실의 주요임무는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근거하여 화교사무사업의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며 화교사무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며 교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호하고 발양시키며 귀국화교,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외국의 화교, 귀국화교, 화교권속의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를 통일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직무는 다



음과 같다. (1) 해당 화교사무사업의 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한다. (2) 각 지방의 화교사무부문들이 당과 국가의 화교사무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것을 지도, 독촉한다. (3) 화교들이 국내에 송금하는 것을 보호, 권장하며 관련 부문과 같이 화교송금관리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지방에서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화교의 기증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검사, 독촉한다. (4) 귀국화교를 접대, 배치하며 산하 화교농장, 공장의 경영방침을 확정하며 기본건설투자와 통일배정, 부급관리물자 계획을 제정하며 지방이 귀국화교, 화교권속의 집체기업을 잘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5) 화교, 귀국화교에 대한 통일전선공작을 잘하고 관계부문과 협조하여 상층통일전선대상의 인사배치를 잘한다. (6) 관계부문과 협력하여 화교, 귀국화교, 화교권속의 출입국 중의 문제를 연구, 해결한다. (7) 각 지방의 화교사무부문이 화교사무정책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교육부문과 협력하여 기남대학, 화교대학과 하문대학 해외통신학원을 잘 운영하고 북경, 광주 화교학생 보습학교를 주관한다. (8)외교부와 공동으로 외국적 중국인에 대한 사업방침, 정책을 연구, 제정하며 외교부와 협력하여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화교 및 외국적 중국인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고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수요하는 국가와 지방에 화교사무 간부를 파견한다. (9) 국외화교들의 사회단체, 학교, 신문사의 사업을 연계하고 지도하며 적당한 방식으로 국외의 중문교육을 지지해준다. (10) 중국신문사를 영도하여 화교, 홍콩·마카오동포, 대만동포, 외국적 중국인에 대한 선전사업을 진행한다. (11) 중국여행총사를 지도하여 화교 등의 친척방문, 관광 등 접대서비스사업을 잘한다. (12) 중국화건공사를 지도하여 화교 등이 중국과 경제합작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경제합작의 방침, 정책을 연구한다. 비서국, 교정사, 국외사, 경제사, 교육사, 선전사, 언사사, 정책연구실 등 기구를 두고 있다.

【國務院特區辦公室】 국무원의 사무기구이다. 국무원 특구판공실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근거하여 경제특구의 설립, 광둥·북건 2개 성에서의 《특수정책, 신축성조치》의 실시, 해남도의 개발건설, 14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12개 경제기술개발구 및 연해도시(지구)의 진일보 개발을 위한 방침, 정책을 연구, 작성하며 그 집행상황을 독촉, 검사하며 집행과정에 봉착하는 모순과 문제들을 조정, 해결한다. (2) 중국에서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침, 정책, 계획과 중대한 조치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국무원에 건의를 제기한다. (3) 각 지구, 각 부문이 외자유치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독촉, 검사하고 관련 중대한 문제를 조정, 중재, 해결하며 관계부문을 조직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경험을 총화하고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잘하고 각 관계부문들이 섭외경제입법과 사법사업을 강화하도록 독촉한다. (4) 세계 각국에서 경제개발구, 수출가공구를 설립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본국의 농공업생산을 발전시킨 등 분야의 경험을 조사, 연구한다. (5) 중앙, 국무원 책임자의 지시에 근거하여 경제특별구, 대외개방도시와 내지 일부 성시의 인재강습사업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주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이용사업에 종사하는 지도간부 등을 양성하며 외국과의 대외인재합작훈련항목을 집행한다. (6)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이용면에서 중앙과 국무원이 맡겨주는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7) 대외개방과 외자이용과 관련한 의사연락과 접대사업을 책임진다. 국무원특구판공실은 경제특구조, 개방도시조, 외자조, 연구실, 종합조, 외사조 등 기구를 두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安全部】 국무원 산하에서 국가안전사무를 책임지는 전문기구로서 1983년에 설립되었다. 안전부의 주요직무는 원래 공안기관이 주관하던 간첩, 특무사건의 수사사업을 주관하고 공안기관의 수사, 구류, 예심과 체포집행의 직권을 행사하

는 것이다.

## 2.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委員會】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97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58조, 제159조의 실시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는 대륙 인사와 홍콩 인사 각 6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이다. 제1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임기는 이미 끝났고 2003년 3월 19일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2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임명했다.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作成委員會】 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기초위원회를 설립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기초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9월 5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기초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통과·공포했다. 중공중앙과 국무원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 17명, 유명인사 6명, 법률전문가 6명 등 대륙위원 29명과 工商界·금융계·법조계·종교계 등 인사로 구성된 마카오 위원 19명이 포함되었으며, 주임위원은 姬鵬飛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기초위원회는 홍콩 주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전체회의 9회, 전문팀회의 72회를 거쳐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초안을 작성하여 전인대에 제출했다. 1993년 3월 31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초안은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全國人民代表大會華僑委員會】 화교사무분야의 일상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구로서 1983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제1차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 주요임무는 화교와 관련한 의안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초안을 제정, 심의하고 해외화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제반 화교사무정책을 검사·관철하는 것이다.

### 3. 중국공산당

【統一戰線工作部】 중공중앙에서 통일전선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일전선 이론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조사·연구하고, 중공중앙의 통일전선에 관한 방침 정책의 실시를 조직하며, 중앙에 통일전선 업무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각 민주당파와 無黨派 대표인사들과 연락하고, 공산당이 지도한 多黨合作과 정치협상제도 및 민주당파에 대한 방침 정책을 연구·실시한다. (3) 민족·종교 업무에 관한 중대한 방침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소수민족과 종교계의 대표인물과 연락하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달라이 라마 집단 등 국내외 적대세력의 국가 분열 책동과 투쟁을 벌인다. (4) 국가통일을 중점으로 하는 해외 통일전선 업무를 전개하고 해외의 관련 조직 및 대표인사와 연락하며, 대만동포와 대만동포의 친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5) 당외 인사에 대한 按排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당외 인사의 양성·선발·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6) 全國工商聯合會·홍콩·마카오 및 해외 工商조직 및 대표인사와 연락한다. (7) 黨外 지식인의 상황을 조사·연구하고 건의를 제출하며 당외 지식인의 대표인물과 연락한다. (8) 국내 통일전선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9) 지방 黨委의 통일전선 업무와 통일전선부서 책임자에 대한 교육업

무를 지도한다. (10) 중공중앙에서 맡긴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판공청, 정책이론연구실, 민주당파工作局, 민족종교공작국, 홍콩·마카오·대만·해외공작국, 幹部局, 경제국, 당외 지식인공작국, 기관 黨委 등 기구를 두고 있다.

【臺灣工作辦公室】 중공중앙 대만공작판공실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1개 기구, 2개 牌子(간판)이라서, 그 조직 인원과 임무 등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동일하다.

【對外聯絡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능부서로서 1951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당중앙의 대외업무를 방침과 정책을 실시하고, 국제정세와 국제문제를 연구하여 당중앙에 관련 상황과 對策的 건의를 제공하며, 당중앙의 위탁을 받아 중국공산당과 외국정당·정치조직간의 왕래와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 직속기구와 각 성·자치구·직할시 黨委의 대외업무를 관리한다. 판공청, 연구실, 아주1국, 아주2국, 西亞北非局, 아프리카국, 라틴아메리카국, 東歐中亞局, 美大局, 西歐局, 禮賓局, 간부국, 기관당위, 정보편집연구실 등 기구를 두고 있다.

#### 4. 기타 정당 및 연구소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民革」이라 약칭한다. 중국의 민주당파의 하나로서 일부 사회주의근로자들과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동맹이다. 전국 28개 성·시·자치구에 지방조직을 두고있고, 중앙기관은 《團結報》를 간행하고 있다.

【臺灣民主自治同盟】 「臺盟」이라 약칭한다. 중국 민주당파의 하

나로서 대만동포중의 사회주의 근로자들과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동맹이다. 대만동포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있는 북경·상해·천진·광둥·복건 등 11개 성·시에 지방조직을 두고 있다. 가입인사는 1,000여명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대륙에서 살고있는 대만성 貫籍 인사들이다.

【社會科學院 臺灣研究所】중공중앙 書記處의 비준을 받아 1984년 9월에 설립된 국가급 대만연구 전문기구로서 대만의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와 평화통일·해협양안관계 등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20여년 동안 중앙의 관련 부서에 대량의 종합 분석보고를 제공하고, 對대만 문건·講話의 기초에 참여했으며, 국가 사회과학 기금 프로젝트와 중앙의 관련 부서에서 위탁한 중점과제 총 100개 정도를 담당하였다. 연도보고와 저서·논문집·사전 등 100부 정도를 출판했으며 학술논문을 1,000여편 발표했다. 종합연구실, 대만정치연구실, 대만경제연구실, 대만대외관계연구실, 대만인물연구실 등 기구를 두고 있다. 현임 소장은 余克禮이며, 고급연구원 25명을 포함하여 총 인원은 60여명이다. 주요 간행물로는 《臺灣研究》와 《臺灣週刊》이 편집·출판되고 있다.

## 5. 사회단체

【臺灣同學會】 1981년 11월 3일에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일찍이 대만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한 학자, 전문가와 유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 동창회의 임무는 회원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친선을 증진하며 대륙에 온 동창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상,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도록 협조해주며 회원들의 전문 특징에 근거하여 각 전문, 학과 영역 내에서 개진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대륙과 대만, 홍콩·마카오, 국외와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양

안통일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회원제를 실시하는 이 조직은 지금 회원과 협찬회원이 100여명에 달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후보이사는 회원대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원대회는 해마다 적어도 한번 소집한다. 이 동창회는 통신 《前行》을 간행하고 있다.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全國臺聯」이라고 약칭하며 「全國臺聯會」라고도 부른다. 대만 각 민족동포들의 민중단체이다. 1981년 12월 27일에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의 대만동포들과 기타 민중단체들과 단결하고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중국정부의 대만에 대한 방침정책과 대륙의 정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중국정부에 국내외 대만동포들의 염원과 건의를 반영하며, 대만동포들과 대륙동포들간의 경제, 문화, 학술, 체육 등 제반 교류활동을 적극 촉진하며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친척, 친구를 방문하고 사람을 찾고 관광을 하고 진학하고 정착하러 대륙에 오는 대만동포들을 접대, 배치하는 제반사업을 진행한다. 총회는 북경에 있고 각 성, 시에 상응한 단체를 두고있으며 기관지로 종합간행물 《臺聲》을 간행하고 있다.

【中國統一國際聯誼總會】 재미 화교조직으로서 중국통일을 촉진하는데 취지를 둔 사회단체이다. 재미화교들이 중국정부의 대대만정책의 변화와 대만의 관점, 입장, 국제정세의 추세에 비추어 발기하고 전 세계의 화교동포들과 국내외, 해협양안의 지명인사들과 연락하여 협상한 후 1984년 11월 6일에 설립하였다. 총부는 뉴욕에 있다. 이 총회의 취지는 國共兩黨을 단합하고 중미친선합작을 증진하며 중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4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총회는 세계 중화민족의 인사들과 각 당파 등을 초청하여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고 나라의 기본방침을 공동으로 연구하

며 국가와 인민의 수요에 입각하여 협력하고 국가통일의 역사사명을 공동으로 완수할 것을 주장한다.

【黃埔軍官學校同窓會】 1984년 6월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1985년 6월 15일에 열린 제1차 회원대표대회에서 동창회 규약을 채택하였다. 그 취지는 황포정신을 발양하고 동창들의 감정을 교류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고 중화진흥에 진력하자는 것이다. 황포동창생의 범위에 대해서는 1924년후에 황포에서 설립한 육군군관학교, 중앙군사정치학교, 중앙육군군관학교와 그 분교의 학생들, 대륙에서 운영한 중앙군관학교의 제1기부터 23기까지의 학생들, 대만에서 운영한 제24기 이후 각기 중앙군관학교 학생들, 중앙육군군관학교 이름을 붙인 각종 훈련반의 학생들을 모두 황포동창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황포동창생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면 회원으로 될 수 있다. 이 동창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기타 황포동창회는 신청을 제기하고 회원대표대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단체회원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동창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5명, 이사 약간명, 고문 2명, 비서장 1명, 부비서장 1명을 두고 3년에 한번씩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동창회의 중대한 사무를 토의결정하고 이사회를 개최한다.

【中國平和統一促進會】 1988년 9월 22일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이 촉진회는 중국의 평화통일을 찬성하는 민주당파, 인민단체, 무당파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촉진회의 취지는 해내외의 각계 인사들과 연합하여 대만해협 양안의 민간왕래를 발전시키고 중국의 평화통일의 실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 촉진회는 상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력하고 있다. (1) 대륙, 대만, 홍콩·마카오와 해외 각계 인사들 및 관련 민간단체들과 광범한 연계를 갖고 통일의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하며 양안의 대화, 담판을 촉구하고 통일의 진척을 추진한다. (2) 해협양안



인민들간의 친척방문, 관광, 경제무역 왕래와 과학기술,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의 교류의 발전을 적극 촉진한다. (3) 《統一論壇》잡지를 창간하여 각계 인사들이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臺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進會】 대륙에 체류하고있는 대만성 출신 노병들이 조직한 사회단체이다. 1988년 10월 19일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그 취지는 대륙의 각 지방에 살고있는 대만성 출신 前 국민당 군인들을 단합하며 대만 국민당 당국으로부터 귀향의 권리를 쟁취하며 해협양안의 정상적 왕래를 촉진하며 중국통일의 실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협진회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대다수가 1940년 말에 국민당 군대의 파견을 받고 대륙에 와서 내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이다.

【海峽兩岸關係協會】 해협양안의 왕래를 촉진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1991년 12월 16일 북경에서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비서부, 종합부, 조정부, 자문부를 두고 있다. 이 협회는 규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4개항의 활동을 진행한다. (1) 대만의 민간단체·인사들과의 연계와 상호협작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역량을 발휘하여 양안의 직접적 「3通」과 쌍방향 교류를 공동으로 촉진하며,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관련 단체들과 연계를 갖고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 (2) 대만해협 해상에서의 밀수, 강탈문제를 공동 대처하기 위해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구체적으로 협상한다. (3) 대만해협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사분쟁과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지역에 진입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대만의 관계 부문, 수권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4) 대만의 각 단체와 각계 인사들에게 대륙에서의 투

자, 무역, 기타 교류활동과 관련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대륙의 관련 방면과 지방에도 대만과 관련한 문화, 학술, 체육, 과학기술 교류 등 자문을 제공한다. 이 협회는 대륙이 양안관계를 연결하는 첫 민간중개기구이다.

## II. 대만의 통일 관련 기구 및 단체

### 1. 총통부

【國家安全會議】 全稱은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會議」이며 「國安會」라고 약칭한다. 대만당국의 총통 지도에 직속된 정책기구로서 1967년 2월 16일에 설립되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사한다. (1)동원반란평정기본방침에 관한 결정 사항, (2)국방의 중대한 정책에 관한 결정 사항, (3)국가건설과 과학발전에 관한 연구지도 사항, (4)총체적 작전에 관한 책정 및 지도 사항, (5)국가총동원에 관한 결정, (6)전쟁에 관한 처리 사항, (7)기타 동원반란평정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과 총통을 대신하여 행하는 심사 비준 사항이다. 총통은 國安會의 주석이며 총통이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통이 대리 행사한다.

【國家安全局】 1954년 10월 설립되었다. 1967년 국방회의를 국가안전회의로 고치고 국가안전국을 국가안전회의 산하에 귀속시켰으며 미국 중앙정보국의 제도에 따라 편성하고 내부 조직과 임무를 조정하고 대만 각 정보단위와 치안기관 업무를 감독지도하고 조정하는 최고감독지도기구이다. 법무부 조사국, 국방부 군사정보국, 국민당 중앙위원회 대륙공작회, 국방관계연구중심 등 정보기구의 업무는 모두 국가안전국의 감독지도와 조정을 받는다.

【光復大陸設計研究委員會】 이 위원회는 1954년 11월 1일에 설립되어 총통부에 직속되었다. 이 위원회는 직무 성격에 따라 몇개의 조로 나누고 조별로 연구를 진행하며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회 내외의 전문가, 학자들을 초빙하여 특별문제소조를 내오고 전문연구를 진행한다. 각 소조에서 연구 작성한 방안을 편찬위원

회에서 심사보완하고 종합회의의 심의에 회부하여 통과된 후 총통에게 보고하는 주관기관에 넘기거나 주관기관에 직접 넘겨 참고하도록 한다. 산하의 대륙문제연구중심은 대륙의 현상항과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위원회에서 방안을 연구 작성하는데 참고를 제공한다. 이 연구회는 臺北, 臺中, 臺南 3개 研究區로 나뉘며 해마다 한번씩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는 1992년 해체되었다.

【國家統一委員會】 1990년 10월 7일 설립되었다. 국가통일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 부주임 위원 3명, 위원 30명을 두고 따로 연구위원 12명을 초빙하였다.

## 2.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행정원 각 부, 위원회간의 대륙관련사무를 조정, 처리하는 기구로서 1988년 8월 18일 설립되었다. 위원 17~19명, 소집인 1명, 부소집인 1명을 두고 행정원장이 인선을 지정하였다. 1990년 10월 18일 대만 행정원이 상설기구로 대륙위원회를 새로 설립함에 따라 대륙공작회보는 10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연 후 철폐되었으며, 이 후 대륙위원회가 그 모든 사업을 인계 받았다.

【大陸委員會】 대만행정원이 설치한 기구로서 1990년 10월 18일 설립되었다. 산하에 계획처, 문화교육처, 경제처, 종합처, 홍콩·마카오처, 연락처, 법제실 등 6개 처, 1개 실을 두고 있다. 대륙위원회의 주요사업은 대륙 정책 및 사업의 연구, 계획, 심의,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다.

【僑務委員會】 대만의 화교사무를 주관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

회는 행정원의 심사비준을 받고 중요한 지구, 외국주재 정부기구 내에 교무사업을 협조하는 교무사업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업무의 수요에 따라 행정원의 비준을 받고 각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3개 처와 화교학생보호실, 화교증명봉사실 등 기구를 두고 각기 화교복리, 장려, 분쟁처리 등 교무사항, 화교문화교육사항, 화교투자, 무역 등 경제사항, 화교학생 진학, 졸업 사항, 화교출입국봉사사항 등을 책임진다. 산하에 화교통신사를 두고 화교를 대상으로 한 신문전파, 통신연락, 간행물 편찬 인쇄와 자료공급 등 사무를 처리한다. 간행물로는 《海光週報》, 《海華雜誌》(월간), 《今日中華民國》(연간), 《華僑經濟年鑒》(연간) 등이 있다.

【海峽兩岸法律問題研究委員會】 內政部 소속으로 1988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해협양안의 교류에서 자주 파생되는 많은 관련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안법률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적당한 법률규범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륙과 관련한 주요법규를 연구한다.(2) 해협양안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3) 《특별법》 제정의 실행가능성을 연구한다. 이 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행정원대륙공작회보》에 보고하는 외에도 해당 단위에 개별 사건처리시의 참고로 제공한다. 이 위원회에 소집인 1명을 두는데 법무부 정무차장이 담임한다. 성원으로는 법무부 4명의 공무원 외에 사법원의 3명의 공무원과 학자, 전문가 5명을 초청하여 참가시킨다.

【홍콩·마카오協調會報】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가 1991년 9월 12일 설립한 기구이다. 會報小組 성원에는 대륙위원회, 화교위원회, 경제부, 외교부, 출입국관리국, 신문국과 정치안전단위 등 대만의 관계부문들이 망라되었다.

【마카오주재臺北貿易旅遊辦事處】 대만이 1990년 마카오에 설립한 半官 기구이다. 주로 마카오에 와서 투자하는 대만사람과 대만에 관광을 가는 마카오 사람들에게 협조를 제공해 준다. 1999년 12월 27일 「駐마카오臺北經濟文化中心」으로 개칭되었다.

【臺灣福建省政府】 대만의 지방행정기구이다. 1949년 8월 복건성정부는 국민당 군대를 따라 금문으로 퇴각하여 계속 산하의 금문, 포전,련회, 라원, 장락 등 실제통제구역에 대하여 관할하였다. 1956년 7월 대만에서 《금문, 마조 지구전장정무실험방법》을 실시하면서 금문, 마조 등 도서가 모두 대만군대의 군사통제 하에 들어가자 복건성 정부는 대만에 옮겨가 복건의 각종 자료와 동태를 수집하고 《복건지구수복후의 재건방안》을 연구하며 복건교민들과 연락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기구는 주석 1명, 성위원회 위원 11명, 비서장 1명을 두고 산하에 3개 조를 설치하였다.

### 3. 중국국민당

【大陸工作指導小組】 대륙과 관련한 정책을 제정하는 국민당 중앙의 정책기구로서 1988년 8월 24일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설립되었다. 이 소조에서 연구, 설계, 계획한 사항중의 중요한 것은 각기 중앙상무위원회 또는 주석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중앙위원회에서 관계 기구에 보내 관철집행하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실효를 검사하며 작업브리핑은 주석에게 보고하여 심사결정을 받은 후 시행한다.

【三民主義統一中國大同盟】 대만이 조직한 반공단체로서 1982년 10월 22일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주요한 정치주장은 삼민주의

로 중국을 통일하며 중국은 반드시 독립, 민주, 평등, 자유, 공동 부유, 진보, 개방, 평화, 통일의 중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을 전복할 것을 고취하고 있다.

【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 「구제총회」라고 약칭한다. 1950년 4월 4일 설립되었다. 기본임무는 대륙을 대상으로 하여 반공산당 정치 선전을 진행하며, 공중, 해상 살포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이른바 《대륙이재민동포》들을 대만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 4. 사회단체

【中華婦女反共聯合會】 여성단체로서 원래 명칭은 《중화여성 반공산당반러시아연합회》이다. 1950년에 송미령의 발기하에 설립되었고 1965년에 《중화여성반공연합회》로 개칭되었다. 이 연합회는 대만과 해외에 54개 분회, 368개 지회를 두고있고 회원 20여 만명을 갖고있다. 이 연합회는 주로 각종 훈련반을 경영하고 대만 군대위문을 조직하고 《중국여성》월간을 출판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青年反共救國團】 1952년 《청년절》 때 장개석 총통의 지시하에 설립준비를 시작하고 동년 5월 31일 《중국청년반공산당구국단설립준비원칙》을 공포하고 10월 31일 공식 창립하였다. 이 구국단의 임무는 덕재검비, 반공산당반러시아, 광복건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각 현, 시 학교에 모두 단위원회, 총지부, 지부, 지분부를 두고있고 단총부에는 청년봉사조, 오락활동조, 청소년문제보도조, 해외공작조, 대륙공작조, 연구발전실, 사업계획관리실, 회계실 등 기구를 두고 있다. 2000년 10월 30일 「中國青年救國團」으로 개칭되었다.

【反共愛國陣線】 정치단체의 하나로 1986년 11월 설립되었다. 세계평론사, 애국동지회, 9인동지회, 충의구국회, 홍콩유랑자협회, 홍콩손중산기념회, 미서염황총회, 중화정총회, 동심련의회 등 대만, 홍콩·마카오 및 동남아의 16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이 전선은 결연히 공산당을 반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며 국민당을 옹호하고 민진당을 반대한다.

【外省人返鄉探親促進會】 1987년 2~3월 기간에 일부 민진당 인사들과 사회인사들이 《인권지상, 당파불문, 인도주의지상, 혈육의 정 우선》을 원칙으로 하여 《귀향친척방문운동》을 벌였다. 1987년 5월 10일 대륙출신 제대노병들과 정년 퇴직한 공무원, 교원 등이 《외성인귀향친척방문촉진회》를 발기, 설립하였다. 이 촉진회는 모든 중국사람은 다 귀향친척방문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대만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모든 인민들의 귀향친척방문의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선포하고 인민들의 귀향을 제한하는 일체 규정제도를 철폐할 것, (2)군인과 공직인원의 친척방문을 일률로 금지하지 말고 그들의 귀향친척방문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 (3) 귀향하는 노병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 등이다. 1987년 4월 3일 해체되었다.

【海峽兩岸和平促進會】 1988년 3월 대만에서 설립되었다. 이 촉진회의 취지는 국민당의 三不政策과 대륙의 대만침범 정책을 포기하여 쌍방이 대등한 기초 위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며, 양안의 자유왕래와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 촉진회는 《三民主義統一促進會》라고 개칭되었다.

【中國統一聯盟】 1988년 4월 4일 臺北에서 설립되었다. 이 연맹의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양안의 친척방문, 관광, 상호방문, 교류 및 직접적인 무역, 투자를 추진한다. (2) 國共 쌍방이 적대적



선전을 정지하고 적의를 없애도록 촉구한다. (3) 해협양안이 민주적 통일을 협상하는 회의를 열도록 촉구한다. 연맹은 국민당원, 민사당원, 청년당원 및 민진당원의 결합체이다. 기관지로 《統聯通迅》을 간행한다.

【臺灣人返鄉權利促進會】 1988년 5월 1일 臺北에서 설립되었다. 이 촉진회는 초이데올로기, 초당파적인 인도주의단체로서 인도주의정신에 어긋나는 일체 규정과 헌법의 규정을 당국이 취소하도록 촉구하고 해외와 대륙에 체류하고있는 대만동포들도 자유로이 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촉진회는 1988년 4월 해산한 《외성인귀향친척방문촉진회》의 성원, 민진당, 노동자당의 일부 주요 인물들과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되었는데 9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촉진회 회보로 《歸鄉》을 간행한다.

【中國統一促進會】 1988년 8월 13일 臺北의 20여개 정론잡지사 책임자들이 발기하여 설립되었다. 이 촉진회의 취지는 중국국민당의 대륙정책을 협조하여 관철하고 양안의 문화, 경제무역, 법률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中國統一協進會】 全稱은 《中國自由民主平和統一協進會》이며 1988년 10월 21일에 설립을 선포하였다. 설립 취지는 해안양안이 《자유, 민주,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외와 해협양안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자유, 민주, 진보의 중국을 건설할 방도 등에 대해 토론한다.

【中國統一建設促進會】 1988년 11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취지는 양안 민간조직의 발전에 힘입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 촉진회는 양안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학술연구토론회에 주력하며, 《통일건설기금회》를 발족하였다.

【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라고 약칭하며 해협양안의 민간 교류사무를 처리하는 민간기구이다. 1990년 11월 21일 공식 설립되었다. 이 해기회는 정책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43명의 이사를 두고 기금의 보관과 운용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산하에 비서처, 문화봉사처, 경제무역봉사처, 법률봉사처, 관광봉사처, 종합봉사처 등 6개 처가 있다. 주요임무는 대만당국의 위탁을 받고 양안인민들의 출입국우편물 수취, 경유, 대륙지구의 서류의 증명과 수령, 전달, 양안 범죄자의 송환, 경제무역분쟁의 조정, 학술문화의 교류, 일반 자문서비스, 대만동포의 합법적 권익보장에 대한 협조 등등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해기회는 대만이 대륙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첫 민간중개기구이다.

【反臺獨大聯合】 全稱은 《中華民國知識界臺灣獨立反對大聯合》이며 대만의 각 대학교의 교수 2,000여명이 1991년 10월 공동으로 서명하여 구성하였다. 이 단체는 민진당이 대만독립의 주장을 당 강령에 넣은 것은 언론자유를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대만인민들에게 확연한 침해를 주고있다고 인정하고 대만독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부록 2>

## 중국·대만 관계 연표

□ 1911~2000 □



대 록 (공산당)	일자	대 만 (국민당)
	1911.10.10	同盟會 주도로 武昌봉기 발생. 辛亥革命 시작.
	1912. 1. 1	中華民國 南京 임시정부 수립. 孫中山 임시 大總統 취임. (中華民國 元年)
	1912. 8.25	同盟會와 기타 4개 소수 정당이 연합하여 「國民黨」 결성.
	1914. 7. 8	孫中山, 국민당 당원 일부를 소집하여 일본 동경에서 「中華革命黨」 결성.
	1919. 5. 4	「五四運動」 발생.
	1919.10.10	孫中山, 중화혁명당을 「中國國民黨」으로 개칭하고 總理에 취임.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上海에서 개최. 「中國共產黨」 성립 선포.	1921. 7.23	
중국공산당 제3차 전국대표대회 廣州에서 소집. 전체 共產黨員이 개인명의로 國民黨에 가입하기로 결정.	1923. 6.12 ~ 6.20	
右 同	1924. 1.20 ~ 1.30	제1차 國共合作 형성.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廣州에서 개최. 共產黨員과 社會主義靑年團員이 개인신분으로 국민당에 참가하는 결정을 접수.
	1925. 3.12	孫中山 사망. 廣東 香山 (현 中山)人. 1866년생.
	1926. 1. 1 ~ 1.19	중국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蔣介石을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장 및 국민혁명군 總監으로 임명.
	1927. 4.12	蔣介石의 정변으로 공산당원 진압 시작.
右 同	1927. 7.15	제1차 國共合作의 統一戰線 결렬.

대 록 (공산당)	일자	대 만 (국민당)
南昌봉기 발생으로 공산당의 국민당에 대한 무장항거 시작.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이 날을 인민해방군 建軍節로 지정.	1927. 8.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漢口에서 긴급회의 소집. 토지혁명 및 국민당에 대한 무장투쟁 방침 결정.	1927. 8. 7	
	1930. 10. ~1931.1.3	국민당 군대의 중앙소비에트구에 대한 첫번째 토벌.
	1931. 4. ~5.31	국민당 군대의 중앙소비에트구에 대한 두번째 토벌.
	1931. 7. ~9.15	국민당 군대의 중앙소비에트구에 대한 세번째 토벌.
	1931. 9.18	일본, "9·18事變" 발동.
	1931. 11.7	
공산당이 지도하는 제1기 전국工農代表大會가 瑞金에서 개최. 中華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 성립을 선포하고 毛澤東을 주석으로 임명.		
	1932. 3. 9	滿洲國이 長春에서 성립되어 중화민국과 관계를 끊는다고 선포.
	1932. 6.	국민당 군대의 중앙소비에트구에 대한 네번째 토벌.
	1933. 9.	국민당 군대의 중앙소비에트구에 대한 다섯번째 토벌.
중국 工農紅軍의 長征 시작. 총 노정 2만 5,000里.	1934.10.10 ~1936.10	
중공중앙 遵義회의 개최. 毛澤東을 정치국 상위로 임명하고 黨과 紅軍에서 毛澤東의 지도지위를 확립.	1935. 1.15 ~1.17	
	1936.12.12	張學良, 西安事變 발동.
	1937. 7. 7	盧溝橋事變 발생. 抗日戰爭 시작.

대 륙 (공산당)	일자	대 만 (국민당)
陝甘寧邊區 정부 수립. 林伯渠를 주석, 張國燾를 부주석으로 임명, 수도는 延安.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邊區는 抗日民族統一政策을 집행.	1937. 9. 6	
右 同	1937. 9.23	제2차 國共合作 형성.
	1938. 3.29 ~4. 1	國民黨 임시전국대표대회가 武漢에서 개최. 蔣介石이 총재로 당선.
	1945. 8.14	국민당 정부, 蘇聯과 「중소우호동맹조약」 채택.
	1945. 8.15	일본, 무조건 항복 선언.
右 同	1945. 8.29 ~10. 10	국민당과 공산당이 重慶에서 담판 진행. 「國民政府與中共代表會談紀要」 체결.
右 同	1946. 1.10 ~1.31	국민당·공산당·민주동맹·중국청년당·無黨派 인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重慶에서 개최. 「平和建國綱領」과 정부개편 협의를 통과.
	1946. 3.1 ~3.17	국민당 제6기 二中全會 개최.
東北民主聯軍이 四平保衛戰을 발기하여 동북지역에 國共 대치국면 형성.	1946. 4.18	左 同
중공중앙, 「清算·減租·토지문제에 관한 지시」 하달. 토지개혁운동 시작.	1946. 5. 4	
	1946. 5. 5	重慶 국민당정부, 南京으로 복귀.
	1946. 7	국민당, 「雙十協定」 폐기하고 전면 內戰 시작.
	1947. 1. 1	「중화민국 헌법」 공포.
	1947. 2.28	“2·28 事變” 발생.

중 국	일자	대 만
	1947. 3.31	南京 國民政府, 「대통령 선거파면법」 등 공포. 憲政 실시.
4개월간의 전쟁에서 국민당 군대가 95개 도시를 점령, 해방군이 153개 도시를 점령. 해방군이 防禦作戰에서 局部反攻으로 전환.	1947.3~6	左 同
	1947. 4.22	국민당 정부, “대만행정장관公署”를 취소하고 대만성 정부 설립. 魏道明을 첫 省主席으로 임명.
	1947. 7. 5	南京 國民政府, 전국 총동원을 실시하여 「共匪반란 진압에 관한 명령」 공포.
	1947. 12.8	「中·美 해군협정」 체결.
중공중앙, 「新區土地要點에 관한 규정」 반포하여 新占領區 토지개혁의 9가지 원칙을 제정.	1948. 2.25	
	1949. 1. 1	蔣介石, 陳誠을 臺灣省 주석으로 임명.
	1949. 1.21	蔣介石, 사직 공고 발표.
毛澤東·朱德, 「全國進軍命令」을 하달하여 인민해방군의 전면적 공격을 단행.	1949. 4.21	
인민해방군, 국민당 정부의 수도 南京 점령.	1949. 4.23	
	1949. 5.20	陳誠, 戒嚴令을 발표. 38년간의 戒嚴 시작.
中央人民政府 수립, 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毛澤東이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당선.	1949. 9.30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1949. 10.1	
	1949. 12.7	국민당 정부, 臺北으로 퇴각.



중 국	일자	대 만
「中·蘇 友好同盟相互條約」 체결.	1950. 2.14	左 同
	1950. 3. 1	蔣介石, 대만에서 대통령으로 취임.
	1950. 6.27	미국 대통령, 國共 군사 충돌 방지 위해 미군 제7함대의 대만해협 進駐 명령.
周恩來, “대만의 중국 귀속 사실 불변 및 대만 해방 위해 최후까지 노력” 내용의 성명 발표.	1950. 6.28	
	1950.10.10	蔣介石, 「告同胞書」 발표를 통해 “建設臺灣, 反攻大陸”의 구호를 처음 제기.
	1952.10.10	중국국민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 「反攻抗俄時期工作綱要」, 「대륙지역 對敵鬪爭工作案」 등을 통과.
	1953. 1. 1	蔣介石, 「告軍民同胞書」 발표.
중국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대, 金門과 廈門 사이에서 격렬한 교전.	1954. 9. 3	左 同
周恩來 총리, 유엔에 미국의 대만 침략을 고소.	1954.10.10	
	1954. 11.1	「大陸光復設計研究委員會」 설립.
	1954. 12.2	미국과 대만, 워싱턴에서 「중·미 공동방어조약」 체결.
	1955. 1.26	미국 의회, 「대만결의안」 비준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에서 미국 군대의 사용 권한을 부여.
周恩來 총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인도네시아)에서 「平和共存 5원칙」 제기.	1955. 4.18	
중·미 대사급 회담, 제네바에서 개최.	1955. 8. 1	

중 국	일자	대 만
	1955.10.10	蔣介石, 「雙十節文告」 발표. 中共에 대한 전쟁방식에서 군사보다 정치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기하여 대륙정책의 변화를 시사.
중국인민해방군, 大金門·小金門·大担·二担 등 섬에 포격 시작. (1979.1 중·미 수교시까지 계속)	1958. 8.23	
	1958. 9. 4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 군대가 개입하겠다고 성명.
周恩來 총리, 미국의 대만문제 간섭 관련 성명.	1958. 9. 6	
彭德懷 국방부장, 「告臺灣同胞書」 발표. 대만당국과 담판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의 모색 제의.	1958. 9. 6	
	1958.10.23	蔣介石·杜勒斯, 「聯合公報」를 통해 “反攻大陸”의 구호 포기 발표.
彭德懷 국방부장, 「再告臺灣同胞書」를 통해 홀수날 포격, 짝수날 휴전을 선포.	1958.10.25	
	1959. 1. 1	蔣介石, 「元旦文告」 발표.
	1963.10.25	蔣介石, 「告臺灣省同胞書」 발표.
	1964.11.21	국민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제11차 회의, 「對敵鬪爭과 大陸革命工作 결의문」 통과.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 문화대혁명의 강령적 문건 「5·16通知」 통과.	1966. 5. 4	
	1967. 2. 1	「국가안전 회의조직강령」 반포. 國家安全會議 설립 (2.16)하여 蔣介石이 주임위원으로 취임.

중 국	일자	대 만
중·미 양국, 미국 닉슨 대통령의 1972.5 이전 방중 관련 합의사항 발표.	1971. 7.15	
林彪, 몽골로 도주 중 비행기 폭발사고로 사망.	1971. 9.13	
제26차 유엔대회, 2758호 결의를 통해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권리를 회복하고 대만 대표의 추방을 결정.	1971.10.25	
	1972. 1. 1	蔣介石, 「告軍民同胞書」 발표.
중·미 양국, 상해에서 「聯合公報」 발표.	1972. 2.27	
중·일 「聯合公報」를 통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	1972. 9.29	일본과의 외교관계 단절.
	1974.10.28	포드 미국 대통령, 「臺灣決議案」 폐지.
	1975. 4. 5	蔣介石, 臺北에서 사망. 浙江省 奉化人. 終年 89세.
	1975. 4. 6	嚴家淦, 총통 취임.
	1975. 4.28	蔣經國, 중앙위원회 주석 겸 중앙상무위원회 주석 당선.
周恩來 사망. 1898년 江蘇省 淮安 출생.	1976. 1. 8	
천안문 사건(四·五事件) 발생.	1976. 4. 5	
毛澤東 사망. 1893년 12월 26일 湖南省 湘潭 출생.	1976. 9. 9	
	1976. 9.11	蔣經國, 모택동 사망 관련 「告大陸同胞書」 발표.
“四人幫” 분쇄.	1976. 10.6	
華國鋒, 중공중앙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	1976. 10.7	
	1976.11.12	蔣經國, 대륙과의 “三不政策”(不接觸, 不談判, 不妥協) 제출.

중 국	일자	대 만
	1978. 3.25	蔣經國, 국민대회 제1기 제6차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1978. 5.20	蔣經國, 대통령 취임.
중·미, 「聯合公報」를 통해 수교(1979.1.1) 발표.	1978.12.16	蔣經國, 중·미 수교 관련 비난 성명 발표.
중국 공산당 제11기 三中全會 개최. 개혁개방 시작 및 당중앙에서 鄧小平의 지도 지위 확립.	1978.12.18 ~12.22	
중·미 외교관계 수립. 전인대 상무위원회, 「告臺灣同胞書」를 통해 평화통일과 “三通”을 제의. 徐向前 국방부장, 金門·馬祖 등 섬에 대한 포격 중지 선포.	1979. 1. 1	
	1979. 1. 3	蔣經國, 反共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講話 발표.
鄧小平 부총리, 미국 방문. 중·미관계와 대만문제에 관한 입장과 정책 천명.	1979. 1.28 ~2. 5	
	1979. 4. 4	蔣經國, 내부회의에서 “三不政策”을 정식 제출.
	1979. 4.10	카터 미국 대통령, 「臺灣關係法」 서명.
전인대 제5기 2차회의, “三通(通郵·通航·通商) 四流(경제·과학·문화·체육교류)” 정책 제출.	1979. 6.18	
曾生 교통부장, 대륙·대만간 해운업무의 회복 발전에 관한 제의 발표.	1979. 8.18	
葉劍英, 홍콩·마카오 동포 대표단 접견시 해외동포의 대만·대륙간 연계 교량 역할 강조.	1979. 10.1	
IOC 집행위원회, 중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 결의. 중국은 “중국올림픽위원회”, 대만은 “中國臺北올림픽위원회” 명칭 사용	1979.11.26	좌 동

중 국	일자	대 만
중국올림픽위원회 주석, 臺北올림픽위원회 주석에게 양안간 체육교류 관련 서신 발송.	1979.11.27	
	1979.12.10	高雄사건 발생.
	1980. 6. 9	蔣經國, 三民主義로 중국을 통일한다는 「國家的基本立場與精神」 담화 발표.
중공 11기 六中全會 개최. 중공중앙 주석에 胡耀邦, 군사위원회 주석에 鄧小平 취임.	1981. 6.27	
중공중앙, 「대륙거주 대만 동포정책에 관한 지시」 하달.	1981. 9.28	
葉劍英, 조국평화통일 9개 방침정책 발표.	1981. 9.30	
	1981. 10.2	孫運璿 행정원장, 葉劍英 발표에 대해 三民主義로 중국통일 강조.
彭德清 교통부장, 대만과 통항준비 관련 통지를 沿海항구와 항운기관에 하달.	1981. 10.3	
중국적십자사, 대만적십자사와 협력 관련 제의.	1981. 10.4	
국가의약관리총국, 대만과의 교류 관련 4개항 결정 발표.	1981. 10.5	
外貿部, 대만·대륙간 통상 추진 4개항 건의 제기.	1981. 10.6	
국가氣象局, 대만과의 기상 연락 수립 관련 결정 발표.	1981. 10.7	
胡耀邦 주석, 蔣經國의 대륙 방문 환영 의사 표시.	1981. 10.9	
중국인민은행, 대만 金融·保險界와의 교류 관련 제의.	1981.10.10	蔣經國, “雙十節” 연설에서 三民主義를 통한 중국대륙 광복 역설.
中華全國總工會, 대만과의 교류 관련 공개서신 발송.	1981.10.12	

중 국	일자	대 만
전국대만동포 제1차 대표회의 개최, 「대만父老兄弟姊妹에 대한 致敬信」 통과.	1981.10.22 ~10.29	
문화부, 대만과의 문화교류 관련 6개항 결정	1981.10.24	
臺灣同學會 결성.	1981. 11.3	
중공중앙, 대만이주민의 대륙친족에 관한 정책 제정.	1981.11.26	
「中華全國臺灣同胞聯誼會」 결성.	1981.12.27	
鄧小平,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葉劍英 9개항 정책이 사실상 1국가·2제도”라고 지적.	1982. 1.11	
廖承志 인민상무위원회 부위원장, 蔣經國에 서신 발송. 國共 3차合作 실현 및 민족통일 추진 희망 표시.	1982. 7.24	
중·미 양국,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관련 「8·17 연합공보」 발표.	1982. 8.17	
胡耀邦, 중공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國共 담판의 조속한 진행을 제의.	1982. 9. 1	
	1982.10.22	三民主義統一中國大同盟 결성.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공포.	1982. 12.4	
鄧小平, 중국·대만 평화통일구상 제의. 一國兩制가 대대만 방침의 핵심.	1983. 6.26	
楊尙昆, 34주년 국경절 리셉션에서 세계 각지 대만동포의 대륙방문 희망 피력.	1983. 9.28	
鄧小平, 미국 대표단 회견시 중국통일 후 一國兩制 실시 관련 언급.	1984. 2.22	

중 국	일자	대 만
	1984. 5.22	臺北 올림픽 대표단 부단장, 양안 문화체육교류 四不原則(不回避, 不讓步, 不親近, 不敵對) 제의.
鄧小平, 홍콩 저명인사에게 一國兩制 구상 설명.	1984. 6.23	
	1984. 7. 5	李達海 경제부장, 양안 경제무역 관련 삼불원칙 제의.
중·영 양국,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성명」 가조인, 12월 19일 정식 체결.	1984. 9.26	외교부, 중·영간의 홍콩 문제 협의 관련 불승인 성명.
鄧小平, 一國兩制 및 홍콩문제 관련 講話 발표.	1984.10.22	
「中國統一國際聯誼總會」 결성.	1984. 11.6	
인민일보, 「兩岸合作, 中華振興」 평론기사 게재.	1986. 2. 7	
駐福建지역 중국인민해방군 대변인, 대만과 金馬 등 지역에 宣傳品 배포중지 결정 선포.	1986. 3.21	
	1986. 5. 3	대만 중화항공의 화물비행기 기장, 廣州 공항에서 대륙거주 및 가족상봉 요구.
中國民航과 대만 華航, 홍콩에서 화물비행기 반환 관련 담판 진행.	1986. 5.17	左 同
鄧小平, 一國兩制 구상 관련 담화 발표.	1986. 6.17	
	1986. 9.21	蔣經國 講話集 「中國之統一與世界和平」 출판.
	1986. 9.28	대만 黨外人士, 民主進歩黨 결성.
胡耀邦, 중공중앙 총서기 직무 사직. 趙紫陽 취임.	1987. 1.16	
중국·포르투갈 양국, 「마카오문제에 관한 연합성명」 가조인. 4월 13일 정식 체결.	1987. 3.26	

중 국	일자	대 만
	1987. 5.10	「外省人返鄉探親促進會」결성.
	1987. 6.23	입법원,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통과.
	1987. 7.15	대만지역의 緊急戒嚴令 해제. 38년간의 계엄상태 종식. 國家安全法 실시.
	1987. 7.16	행정원, 홍콩·마카오지역 관광여행 제한 해제 선포.
	1987. 8. 4	행정원 교육부, 「대만의 문화교육 과학기술 인원 국제회의 참석시 유의사항」 발표.
	1987. 9.11	《自立晚報》기자 李永得·徐璣, 도교 경유 대륙 친지 방문·취재.
국무원, 대만당국의 대만 동포 대륙친지방문 허용 관련 담화에 대해 환영 표시.	1987.10.14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대만동포의 대륙 친지방문 허용에 관한 결정 통과. 10월 15일 內政部에서 「대륙 친지방문실시세칙」 선포. 11월 7일부터 실시.
국무원 관공청, 대만동포의 대륙친지방문·여행 접대방법에 관한 통지 발표.	1987.10.16	
中國旅行社總社 총경리, 대만동포의 대륙방문 관련 담화 발표.	1987.10.19	
海關總署, 대만동포 출입국 휴대물품 관리규정 발표.	1987.10.23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대만동포의 대륙 친지방문·여행 출입국수속 간략화 관련 통지.	1987.10.27	
중화전국기자협회, 대만기자의 대륙취재에 관한 규정 반포.	1987. 11.1	
국가여행국, 대만동포의 대륙 친지방문·여행의 접대업무 관련 소개.	1987.11.2	대만당국, 대륙 친지방문 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 대만적십자사, 대륙 친지방문 증명서류 발급 시작.



중 국	일자	대 만
중국은행 總行, 대륙방문 대만동포의 환전 서비스 제 공 관련 통지.	1987. 11.4	
중국적십자사, 대만동포 대륙 친지방문 관련 협조· 편리 제공 표시. 사법부, 대만동포와 대만 동포의 친족에게 법률서비 스 제공 관련 규정 제출.	1987. 11.5	
國家版權局, 홍콩·마카 오·대만 작가 원고료 관련 통지 반포.	1987.11.16	
新華社, 11.1~12.1 기간 중 대륙 입국 대만동포 1만 3,000명 초과 보도.	1987. 12.1	
郵電部, 대만동포의 대륙 방문시 郵電 通信 사용 관 련 규정 발표.	1987. 12.2	
中國專利局, 대만동포의 특허 신청 관련 규정 선포.	1988. 1. 8	
	1988. 1.13	蔣經國 사망. 浙江 奉化人. 79세. 李登輝 부통령, 대통령 취임.
중공당 중앙위원회, 국민 당 중앙위원회에 弔電 발송.	1988. 1.14	
	1988. 2.26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국민당 黨工幹部의 대륙 친 지방문 허용 결정.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 검찰원, 대만인의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이전 범죄행위 不訴追 관련 공고 반포.	1988. 3.14	
王芳 공안부장, 대만동포 의 대륙방문중 안전문제 관 련 기자 질문 답변.	1988. 3.17	
	1988. 3.24	대만지방법원, 自立晚報 社의 기자 2명 대륙 파견 사건 無罪 선고.

중 국	일자	대 만
	1988. 4. 4	中國統一聯盟 결성.
	1988. 4.10	內政部, 公職 인원 대륙 친지방문 제한완화 결정.
제7기 전인대 1차 전체회 의,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 법 기초위원회 설립 결정.	1988. 4.13	행정원, 대만주민의 대륙 친척과 통신시 대만적십자 사를 통한 전달 가능 결정.
國家版權局 국장, 대만동 포 작품 저작권 보호 선포.	1988. 4.20	
	1988. 5. 1	臺灣人返鄉權利促進會 설립.
	1988. 5.18	「中華民國國號推行運動 委員會」 설립. “中華民國”의 칭호 수시 사용 호소.
민정부·사법부, 대만동포 와 대륙 배우자 간의 혼인 문제 처리 관련 통지 반포.	1988. 6.	
국무원, 「대만동포투자 촉진규정」 반포	1988. 7. 3	
공산당 중앙위원회, 李登 輝에게 축전 발송.	1988. 7. 7 ~7. 13	李登輝, 국민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당 주석 당선.
	1988. 7.14	국민당, 「陳立夫提案」 제출.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대륙· 대만 통일 모색.
趙紫陽, 「陳立夫提案」에 대 해 해협양안은 다방면에서 공감대가 많다고 지적.	1988. 7.15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인 민법원의 대만관련 민사사 건 처리 법률문제 천명.	1988. 8. 6	
	1988. 8.13	「中國統一促進會」 설립.
	1988. 8.18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설립.
	1988. 8.24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大陸工作指導小組」 설치 결정 통과.
	1988. 9. 2	대만당국, 대륙주민의 대 만방문 신청 제한조치 완화 결정.

중 국	일자	대 만
	1988. 9.10	제23차 국제과학연합회 참석차 대만대표 3명 북경 도착. 대륙 개최 국제학술 회의에 대만 대표단 첫 참가.
	1988. 9.12	胡秋原 입법위원 및 중국 통일연맹 명예주석, 샌프란 시스코 경유 북경 도착.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一國兩制 평화통일 방침 不變 재천명.	1988. 9.15	
	1988. 9.21	국민당, 黨紀위반으로 胡 秋原의 黨籍 박탈.
中國和平統一促進會 결성	1988. 9.22	
臺灣省籍老兵返鄉探親協 進會 결성.	1988.10.19	
	1988.10.21	統一中國協進會 설립.
國家版權局, 대륙과 대만· 홍콩·마카오 판권 무역계 약 심사방법 통지 반포.	1988. 11.2	
	1988. 11.3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현 단계 대륙동포의 대만문상과 병문안 신청규정 수정안」 반포.
	1988. 11.5	海外經濟合作發展基金會 설립. 주임 陳履安 취임.
	1988. 11.9	대만당국, 대륙주민의 대만 문상과 병문안 신청 접수 시작.
	1988.11.12	中國統一建設促進會 결성.
國學大師 錢穆의 딸 錢 易, 네덜란드 경유 대만 도 착. 대만방문 첫 대륙인.	1988.11.14	
國家新聞出版署, 대만· 홍콩·마카오 작품 출판 규 정 반포.	1988.11.21	

중 국	일자	대 만
미국유학 대륙학생, 대만 첫 방문 .  國家工商局, 해협양안 회 사 등록상표에 대한 무차별 대우 선포.  右 同  “6·4사건” 발생.	1988. 12.1	행정원, 「현단계 국제학 술회의 및 문화·체육 활동 의 대륙 관련 문제 作業要 點」 공포.
	1988. 12.7	工業總工會, 「海峽兩岸經貿 關係委員會」 설립 선포.
	1988.12.20	
	1988.12.29	俞國華 행정원장, ‘하나의 중국’ 원칙하의 彈性外交 진행 발표.
	1989. 2.22	
	1989. 3.28	俞國華, 입법원 施政演說 에서 “一個中國, 兩個政府” 구상에 찬성 표시.
	1989. 4. 3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대 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 잠정조례」 초안 통과.
	1989. 4. 7	대만 중화올림픽위원회 · 대륙올림픽위원회, 대만 체 육단체 · 조직이 “中華臺北” 명의로 대륙 개최 경기 및 회의 참가 선포.
	1989. 4.24	民進黨, 「現段階大陸政策 草案」 통과. “國際主權獨立” 및 “準兩國政府” 주장.
	1989. 6. 1	행정원, 「大陸地區物品管 理辦法」 실시 선포.
1989. 6. 4	李登輝 천안문사건 관련 성명 발표. 국방부 대변인, 경계강화 발표.	
1989. 6.10	대만당국, 對대륙 전화 · 電報 · 우편물 정식 개방.	
1989. 6.12	李煥 행정원장, 「대륙민 주운동지지조치」 반포.	
1989. 6.20	외교부, 해외 대륙유학생 에게 여권 재발급 결정.	

중 국	일자	대 만
중공 제13기 四中全會, 趙紫陽의 모든 직위 해제, 중공중앙 총서기 江澤民 취임.	1989. 6.23 ~6.24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 검찰원, 대만 이주민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후 및 지방인민정권 건립전 역사 罪行에 대한 不訴追 결정.	1989. 9. 9	
駐福建 인민해방군, 「1962년 2개통지」 집행 중지 선포.	1989. 9.11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기자의 대륙 취재시 유의사항 발표.	1989. 9.15	
	1989.10.18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大陸事務密議委員會」가 「大陸工作會報」 小組를 대체하여 대륙정책 관련사무 처리 결정.
중공 제13기 五中全會, 鄧小平,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직무 사직. 江澤民 취임.	1989. 11	
	1989. 11.6	민진당의 대만독립 주장 입법위원 30여명, 「新國家 聯線」 결성. 新國家 건립 및 新헌법 제정 고취.
楊尙昆 주석, 대만 독립 절대 불용 발표.	1989.12.19	
	1990. 1.16	행정원 大陸工作會報 제 40차 회의, 대만 하급 공무원의 대륙 친척방문 및 대륙체류 대만계 인사의 대만 방문 허용 결정.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최. 鄧小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무 사직. 江澤民 취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통과.	1990. 4	
	1990. 5.17	連戰 외교부장, 대륙정책 3원칙 제의. 대등한 지위, 평화적 경쟁, 민주·자유적 통일.

중 국	일자	대 만
<p data-bbox="225 453 588 575">江澤民, 全國統一戰線工作會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3通'의 조속한 실현 강조.</p> <p data-bbox="225 872 588 993">중국적십자사·대만적십자사, 양안 송환인원의 교환 장소로 馬尾-馬祖 및 廈門-金門(특수상황) 지정 발표.</p>	1990. 5.20	李登輝, 대통령 취임.
	1990. 5.23	경제부, 양안 경제 관련 4원칙 제정. 대만회사의 대륙 직접투자 및 기술협력 금지.
	1990. 6.11	
	1990. 6.28 ~7. 4	國是會議 개최, 대통령 민選 및 三不政策 포기 주장.
	1990. 8.31	郝伯村 행정원장, 施政報告에서 "一國兩地區" 개념 제의, "一國兩制" 반대.
	1990. 9.16	대만체육대표단, 아시안 게임 참석차 북경 도착.
	1990. 9.19	左 同
	1990. 10.1	李登輝, 국가통일위원회 위원 명단 확정.
	1990. 10.7	국가통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990.10.18	행정원 「대륙위원회」 설치. 주임 施啓楊, 부주임 馬英九 취임.
	1990. 11.6	대만·니카라과 외교관계 회복.
	1990.11.21	「海峽交流基金會」 설립.
	1991. 1. 3	재정부, 대륙인사의 대만 친척 유산상속 가능 결정.
	1991. 2.20	행정원, 「국제회의 및 활동에서 中共人員 동시 참가 시 유의사항」 발표.

중 국	일자	대 만
	1991. 2.23	국가통일위원회, 「國家統一綱領」 수정 통과.
인민일보, “評臺灣國家統一綱領” 평론기사 발표.	1991. 3.	
	1991. 3.20	民進黨, 「中國大陸政策工作小組」 구성 결정.
	1991. 4.30	李登輝, 動員戡亂時期 5월 1일부터 중지 및 「動員戡亂時期臨時條例」 폐지 선포. 國共 兩黨의 내전상태 종식, 공산당에 대한 적대 입장은 유지.
王兆國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대만 「海峽交流基金會」 방문단 회견.	1991. 5. 3	
	1991. 5.13	陳履安 국방부장, 「金馬地域戒嚴三原則」 선포.
중공중앙 臺灣工作辦公室, 양안관계와 평화통일문제 관련 講話 발표.	1991. 6. 7	
	1991. 6.23	외교부, 대만의 ‘中華民國’ 명의 중앙아메리카개발은행 가입 선포.
	1991. 6.24	행정원, 해협양안 항공등기우편 개방 결정.
	1991. 6.28	邵玉銘 新聞局長, 양안신문·영화의 대등한 발행·상영 동의. 대륙기자의 대만방문시 일정표와 공산당 탈퇴 선고서 기입 규정 폐지.
	1991. 7. 2	행정원·新聞局, 대륙인사의 대만 참관 방문신청 절차 간략화 결정.
	1991. 9. 2	행정원 대륙위원회, 「港澳協調會報」 설립 결정.

중 국	일자	대 만
	1991.11.13	陶百川 國策顧問, 三聯統 一(聯絡, 聯合, 聯邦) 제의.
「海峽兩岸關係協會」 설립.	1991.12.16	馬英九·蕭萬長, 대륙의 「海峽兩岸關係協會」 설립 환영.
국무원, 「中國公民往來臺 灣地區管理辦法」 반포.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	1992. 1. 6	
	1992. 1.29	대만·라트비아 영사관계 수립 성명 체결.
	1992. 7.31	李登輝 총통,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 조례」 서명 및 공포시행 명령. 대 만의 양안관계 처리 법률적 기초 마련.
	1992. 8.22	錢復 외교부장, 중·한 수 교일부터 한국과 외교관계 단절 성명. 9월 15일부터 쌍 방 民航協定 정지.
중국·한국 외교관계 수립.	1992. 8.24	
	1992. 10.5	陸委會, 대륙 黨·政·軍 인사의 대만방문 문화교육 활동 참가 제한조치 완화 관련 성명.
	1992. 10.8	民進黨, 「현단계 양안관 계와 대중국정책」 발표.
江澤民 중공중앙 총서기, 제14기 전인대 회의에서 평화 통일·一國兩制 방침에 따른 조국통일 적극 추진 천명.	1992.10.12	
	1992. 11.6	金門防衛司令官·馬祖防 衛司令官, 1992년 11월 7일 부터 金門과 馬祖지역 戒嚴 해제 선포.
	1992.12.19	대만 제2기 입법위원 선거. 국민당 102석(63.34%), 민진 당 50석(31.05%).



중 국	일자	대 만
海峽兩岸關係協會, 대만 海峽交流基金會에 상시 연 락통로 수립 관련 제의.	1993. 1. 4	
	1993. 1.14	행정원, 「大陸地區人民 在臺灣地區居留數額票」 초 안 통과. 대륙지역 주민의 대만방문 上限 매년 350명 으로 규정.
	1993. 2. 3	內政部 警政署 出入國管 理局, 「대륙지역 주민의 대 만지역 진입 허가방법」 등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관련 4개항 법령 발표.
	1993. 2.18	內政部, 九職等 이하 공무원 의 대륙 부모·자녀·배우 자·형제 방문 개방 결정.
	1993. 3.18	대륙위원회, 「대만지역 주민의 대륙지역 진입 허가 방법」 통과.
唐樹備 海峽兩岸關係協會 常務副會長과 邱進益 海峽 交流基金會 副董事長, 汪辜 會談 관련 논의 진행.	1993. 4. 8	左 同
唐樹備와 邱進益, 싱가포르 에서 예비회담 진행.	1993. 4.23	左 同
「汪辜會談」 싱가포르에서 진행. 「兩岸公證書使用查證 協議」·「양안등기우편물확 인보상협약」·「兩會연락· 회담제도협약」·「汪辜會談 공동협약」 체결.	1993. 4.27 ~4.29	左 同
海峽兩岸關係協會와 海峽 交流基金會, 북경에서 실무 회의.	1993. 8.30	左 同

중 국	일자	대 만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 신문관공실, 대만문제 백서 「대만문제와 중국통일」 발표.	1993. 8.31	대륙위원회 · 국민당, 대륙의 대만문제 백서에 대한 성명 발표. 郭垚君 총통부 신문비서, 대만문제는 없고 중국문제만 있다고 성명.
	1993. 9.16	대륙위원회, 「중공의 ‘대만문제와 중국통일’ 백서에 대한 견해」 발표.
	1993.10.28	新黨 대륙정책 발표. ‘不臺獨 · 不急統 · 不公產’ 주장.
	1993.10.30	대륙위원회, 1994년도 대륙지역주민의 대만지역 定居 數額表 통과.
海峽兩岸關係協會 · 海峽交流基金會, 廈門에서 실무회담 진행.	1993. 11.2 ~ 11.7	左 同
廣州 출발 중국 여객기, 승객에 의해 대만으로 납치.	1993. 11.6	
	1993.11.16	입법원, 행정원에 공중납치범에 대한 사형선고 건의.
	1993.11.18	행정원, ‘人機分離’ 전제하에 대륙 공중납치범 송환 결정.
	1993.12.18 ~ 12.23	海峽兩岸關係協會 · 海峽交流基金會 제3차 실무회의 臺北에서 개최.
右 同	1993.12.27	대륙위원회, 대륙 배우자의 대만거류신청 정원을 내년부터 매년 600명으로 규정.
	1993.12.28	
福建航空의 여객기, 탑승객에 의해 대만으로 납치.	1993.12.28	
	1994. 1. 7	대륙위원회, 「現段階兩岸文化交流指導原則」 제출.

중 국	일자	대 만
	1994. 1.25	駐한국 臺北代表處 설립.
국무원 대만관공실 대변인, 대만 공무원의 개인 및 민간 신분 대륙방문 환영 담화 발표.	1994. 1.29	
海峽兩岸關係協會·海峽交流基金會, 북경에서 회담 개최. 공중납치범 송환, 관련규정 위반 상대방 지역 진입 인원 송환, 漁撈 분규 등 문제 관련 협의.	1994. 2. 1 ~2. 4	左 同
	1994. 2. 9 ~2. 16	李登輝, 인도네시아·태국 방문.
인민일보, 「毛澤東과 臺灣工作」 문장 발표.	1994. 2.27	
	1994. 3. 1	連戰, 「港澳政策 4개항 원칙」 발표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臺灣同胞投資保護法」 통과.	1994. 3. 5	
	1994. 7. 5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륙 정책 백서 「臺海兩岸關係說明書」 발표.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臺海兩岸關係說明書」 관련 담화 발표.	1994. 7.12	
	1994. 7.13	니카라과 등 7개 중앙아메리카 국가 외교부장, 대만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연합성명 발표.
千島湖 강도방화살인 사건 발생. 浙江省 淳安縣 千島湖의 유람선에서 3명의 현지 범죄자가 방화하여 대만동포 24명, 대륙동포 8명을 살해.	1994. 3.31	

중 국	일자	대 만
	1994. 4. 6	連戰 행정원장, 千島湖 사건의 양안관계 악영향 우려 표시.
	1994. 5. 4	李登輝, 중앙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방문.
	1994. 5.25	대륙위원회·海峽交流基金會, 대륙 여행금지 해제 결정.
	1994. 6. 7	連戰, 뉴욕 방문 시작.
海峽兩岸關係協會·海峽交流基金會 관계자, 대북에서 회담. 쌍방 문화·과학기술 교류 확대 합의.	1994. 8. 3 ~8. 6	左 同
	1994. 8. 5	미국 국무원, 「與臺灣關係法」 수정안 통과. 대만 총통 등 공무원의 방미 허용.
	1994.11.21	內政部, 「대만지역 주민의 대륙지역 진입 허가방법」 수정안 심사. 9職等 이하 공무원의 대륙 친지방문 개방 및 일반주민의 대륙지역 진입 신청수속 간략화 결정.
海峽兩岸關係協會·海峽交流基金會 부비서장급 회담, 南京에서 폐막.	1994.11.27	左 同
	1994. 12.3	陳水扁, 臺北시장 당선.
	1994. 12.5	입법원 외교위원회, '하나의 중국' 포기, '一中一臺' 입장 채택 결정.
	1995. 1. 5	행정원, 「亞太營運中心」 방안 통과.
「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 북경에서 설립.	1995. 1.14	

중 국	일자	대 만
江澤民, 「조국통일 大業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 강화 발표를 통해 양안관계와 조국 평화통일 추진 관련 8가지 주장 제출.	1995. 1.30	
公安部 전문회의 개최. 양안동포의 상호방문 편리 보장 및 대륙거주 대만동포의 합법적 권익보호 관련 협의.	1995. 2.21	
	1995. 3.18	민진당 제6기 二中大會 개최. 대만독립 黨綱과 행동강령 유지 결정.
중국은행 뉴욕분점·중국 교통은행 뉴욕분점, 대만은행 뉴욕분점과 업무대리 협의 체결.	1995. 3.31	
	1995. 4. 8	李登輝, 江澤民의 8가지 주장(江八條)에 대응한 '6가지 주장'(李六點) 제의.
唐樹備 海峽兩岸關係協會 상무부회장·焦仁和 海峽交流基金會 副董事長, 臺北에서 제2차 汪辜會談을 위한 제1차 예비협상 진행. 6가지 공동인식 달성.	1995.5.27 ~28	左 同
	1995. 6. 7 ~6. 12	李登輝, 미국 방문.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 李道豫 주미국대사 소환 결정 발표.	1995. 6.17	
	1995. 6.26	행정원 대륙위원회, 9職等 이하 공무원의 대륙 친지방문 개방 결의 통과.

중 국	일자	대 만
북경대학·홍콩중문대학·대만대학, 홍콩중문대학에서 양안간 첫 운동회 개최.	1995. 11.6	左 同
江澤民, 한국 방문 시작.	1995.11.13 ~11.17	
국무원 新聞辦公室, 「중국의 군비통제와 군축」 백서 발표.	1995.11.17	
	1995. 12.2	제3기 입법위원회 선거 실시. 국민당 85석, 민진당 54석, 신당 21석 차지.
	1996. 1. 3	대만·세네갈 수교.
중국·세네갈 단교.	1996. 1. 9	
	1996. 1.10	경제부 투자심사위원회, 전년도 비준 대만상인의 대대륙 투자 총490건, 투자액 10억달러 초과 발표.
중공중앙 臺灣工作辦公室·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담화. 중국으로부터의 대만분열 음모 반드시 실패 지적.	1996. 1.31	
	1996. 2. 4	江丙坤 경제부장, 양안 경제무역의 3가지 문제 지적.
吳基傳 郵電部長, 대만당국에 양안 通郵·通電 관련 5가지 제의.	1996. 2. 5	
	1996. 2. 7	新聞局, 대륙 영화·TV 프로그램의 대만 진입 제한 대폭 완화.
	1996. 2. 8	경제부 투자심사위원회, 대만상인의 대륙투자 제한 재차 완화 결정.

중 국	일자	대 만
신화통신사 공고: 중국인 민해방군, 1996.3.8~15 기간중 동해·남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진행.	1996. 3. 5	
신화통신사 공고: 중국인 민해방군, 1996.3.12~20 기간중 동해·남해에서 實彈 연습 진행.	1996. 3. 9	
	1996. 3.11	외교부, 유엔 참가는 국제사회에서 대만민중의 정상·평등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륙의 위협으로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
신화통신사 공고: 중국인 민해방군, 1996.3.18~25 기간중 대만해협에서 陸海空 연합연습 진행.	1996. 3.15	
	1996. 3.23	대만에서 처음으로 총통·부총통 직접선거 실시, 李登輝·連戰 당선.
	1996. 3.26	경제부, 양안 경제무역 백서 발표.
	1996. 5.20	李登輝 취임연설 발표. 중국대륙 방문하여 중국 최고지도자와 의견교환 희망.
	1996. 6.24	대륙위원회, 「대륙지역 주민의 대만방문 경제무역 활동 허가방법」 수정 초안 통과.
	1996. 7. 3	海峽交流基金會, 대륙 海峽兩岸關係協會에 양 기관 理事의 상호방문을 제의하는 서신 발송.

중 국	일자	대 만
	1996. 7. 4	행정원, 「대륙지역 법률 전문인사의 대만지역 활동 허가방법」 통과.
전인대 외사위원회, 유럽 의회의 「국제조직에서 대만의 역할」 결의안 통과 관련 항의 성명.	1996. 7.25	
	1996. 7.29	행정원 대륙위원회 결의 통과. 市長 이하 지방 首長의 비개인신분 대륙방문 및 문화교육·국제·대륙사무 활동 참가 개방, 대륙기자의 대만 상주 개방.
대만방문 대륙주민의 「大陸居民往來臺灣通行證」 사용 시작.	1996. 8. 1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서신 발송. 태풍 피해 대만동포에 대한 위문 표시.	1996. 8. 2	
	1996. 8.14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공무원의 상호방문 추진 및 적대상태 종식 등 양안관계 발전 4개항 정책 제의.
교통부, 「대만해협 양안간 항운관리방법」 발표.	1996. 8.20	
對外貿易經濟合作部, 「대만해협 양안간 화물운수 대리업 관리방법」 발표.	1996. 8.29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三通의 조속한 개방 촉구.	1996. 8.22	
	1996. 9. 7	대륙위원회, 현단계 대륙 투자 정책 보고 제출.



중 국	일자	대 만
	1996. 9.18	행정원, 「대륙지역 주민의 대만지역 경제무역 활동 허가방법」 발표.
전인대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1996. 10.4 ~10.5	
전인대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1996. 11.1 ~11.2	
	1996. 11.4	대륙위원회, 대륙기자의 대만 상주 규정 통과. 상주 기간 7년으로 제한.
남아프리카 대통령, 1997년 12월말 이전 대만과 단교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선언.	1996.11.27	
	1996.11.28	외교부 성명 발표. 남아프리카의 결정에 대해 유감 표시 및 엄중 항의 제기.
국무원 대만사무 관공실, 「대만기자의 조국대륙 취재에 관한 규정」 발표.	1996. 12.1	
	1996. 12.2	辜振甫, 海峽交流基金會 董事長 연임.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政府推選委員會 제3차 전체회의 개최.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행정장관 董建華 당선.	1996.12.11	
	1996.12.13	內政部, 대륙 배우자의 대만방문 정원 매년 1,800명으로 증가 결정.
국무원 제11차 전체회의 개최.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행정장관 董建華 임명. 1997년 7월 1일 부임.	1996.12.16	입법원,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초안」 통과.

중 국	일자	대 만
	1996.12.17	대륙위원회, 홍콩·마카오 親大陸 매체의 대만방문 제한 완화 입장 표명.
홍콩특별행정구 제1기 政府推選委員會 제4차 전체회의, 深圳에서 개최. 홍콩특별행정구 임시입법회의 60명 의원 선출.	1996.12.21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대만판공실 대변인, 1997년 이후 홍콩·대만간 공중·해상운수 항로를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지역특수항로”로 관리한다고 발표.	1996.12.27	
	1997. 2. 2	교통부, 「開放大陸地區人民組團來臺旅遊案」 통과.
鄧小平 사망.	1997. 2.19	
	1997. 2.20	李登輝·국민당·대만정부, 鄧小平 사망 관련 애도 성명 발표.
	1997. 2.28	경제부 國際貿易局, 1996년 양안 무역액이 222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5.8% 증가했다고 발표.
中國平和統一促進會 제5기 이사회 개최.	1997. 3.13	
	1997. 3.22 ~3.27	달라이라마, 대만 방문.
인민일보 해외판, “대만당국은 달라이라마 대만방문의 막후 黑手” 제하 문장 발표.	1997. 3.28	
해협양안 행정과학 교류 세미나, 북경에서 개최.	1997. 3.29	

중 국	일자	대 만
대륙 화물선 “盛達輪”, 대만 高雄港 접안. 양안 해상 운송 48년만에 해빙.	1997. 4.19	좌 동
중국적십자사, 金門協議에 의거하여 비행기 납치범 劉善忠을 대만측에 송환.	1997. 5.14	
외교부 대변인, 파나마의 대만과 단교 및 중국과 수교 결정 관련 환영 발표.	1997. 5.21	행정원, 「臺·美 관계와 務實外交 설명서」 발표.
중국·파나마 수교 성명.	1997. 5.23	
全國臺灣同胞聯誼會, 북경에서 대만 紅典中華文化交流訪問團 환영연회 개최.	1997. 6.11	左 同
海峽兩岸關係協會·海峽交流基金會, 「홍콩·대만 해상 운수 商談紀要」 확인. 7월 1일 발효.	1997.6.16	
	1997. 7.16	비행기 납치범 黃樹剛·韓鳳黃, 중국적십자사에 송환.
廈門市, 대만주민에게 1차 출입국 유효비자 발급 시작.	1997. 8. 1	경제부, 양안 직접통상의 2단계 추진 방안 작성.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 차드·대만 수교 관련 중국·차드 단교 발표.	1997. 8.15	
남아프리카, 1997년말 중국과 수교 및 대만과 단교 천명.	1997. 8.19	중공중앙, 국민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개최 축전 발송.
	1997. 8.24	
	1997. 8.26	

중 국	일자	대 만
	1997. 9. 6	內政部, 달라이라마 티베트 종교기금회의 대만 설립을 비준.
	1997. 9.11	대륙위원회, 「대륙지역 주민 대만지역 거주 및 교류 허가방법 초안」 통과.
	1997. 9.22	대륙위원회, 「대륙과 교류 확대 및 교류질서 재건초안」 통과.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만 동포 투자 합법 권익보호 관련 통지.	1997.10.15	
중·미 연합성명 발표. 대만문제의 타당한 처리 및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등 천명.	1997.10.29	
	1997. 11.7	海峽交流基金會, 海峽兩岸關係協會에 서신 발송. 辜振甫, 대표단 인솔하여 대륙방문 제의.
臺灣民主自治同盟 설립 50주년 기념회, 북경에서 개최.	1997.11.12 ~11.17	
제6차 전국대만동포대표대회, 북경에서 개최. 회장 楊國慶 당선.	1997.11.20 ~11.24	
국민당 혁명위원회 제9차 전국 대표대회, 북경에서 개최. 중앙주석 何魯麗 당선.	1997.11.29 ~11.30	
	1997.12.11	행정원 「대륙지역에서 상업행위 허가방법」 수정안 통과.
南京-마카오-臺北(高雄) 항공선 개통.	1997.12.29	左 同
중국-남아프리카 수교.	1997.12.30	

중 국	일자	대 만
	1998. 1. 3	張京育, “戒急用忍(조급함을 삼가며 인내하자)” 정책은 양안관계의 각 차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 連戰의 개인휴가 명의 싱가포르 방문 관련 싱가포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촉구.	1998. 1. 5	
	1998. 1.15	許新良 民進黨 주석, 대륙과의 三通 답판을 즉시 개최 주장.
萬國權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북경에서 대만 新 黨 인사를 회견.	1998. 2.13	
	1998. 3. 3	蕭萬長 행정원장, 分治의 사실을 확인해서야 양안이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連戰의 말레이시아 방문 관련 중국과 수교한 나라의 대만과의 정부 왕래 반대 입장 강조.	1988. 3. 5	
	1998. 4. 3	海峽交流基金會, 海峽兩岸關係協會에 서신 발송. 海峽交流基金會 부비서장급 인사의 4월 중순 북경방문 의사 표시.
對外貿易經濟合作部 주최 대대만 경제무역업무 강화 좌담회, 廈門에서 개최.	1998. 4. 9	
	1998. 4.16	달라이기금회, 臺北에서 설립.
중국 언론매체 책임자 방문단 臺北 방문.	1998. 4.17 ~4.26	

중 국	일자	대 만
	1998. 4.22	海峽交流基金會 부비서장 등 8인 북경 방문.
	1998. 5. 7	경제부, 대만상인의 대륙 투자 심사절차 간략화 결정.
	1998. 5.11	내정부 수정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 실시세칙」 시행.
	1998. 5.12	海峽交流基金會, 海峽兩岸關係協會에 서신 발송. 海峽兩岸關係協會 부비서장 5월 하순 대만방문 초청.
대만 工商建設研究會·海峽兩岸關係協會 공동주최 “해협 양안 경제무역 교류 협력 촉진 세미나”, 북경에서 개최.	1998. 5.25	좌 동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대만지역 관련 법원 민사판결 인정에 관한 규정」 공포·실시.	1998. 5.26	
	1998. 6.20	海峽交流基金會, 海峽兩岸關係協會에 서신 발송. 금년 가을 辜振甫의 대륙 방문 제안.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서신 발송. 辜振甫의 9월이나 10월 중순 대륙방문 초청.	1998. 6.25	
클린톤 미국 대통령, 상해에서 대만문제 三不原則 재천명.	1997. 6.30	
대륙 과학기술 방문단 일행 91인 대만 도착. “양안 과학기술 성과 교류 세미나” 참석.	1998. 7.14	
	1998. 7.17	달라이라마,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방문 계획 무기한 연기 성명.

중 국	일자	대 만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서신. 대만 嘉義 지역의 지진사고에 위문 표시.	1998. 7.19	
국무원 新聞辦公室·국방부, 「중국의 국방」 백서 발표.	1998. 7.27	民進黨 高雄市 의원 林滴娟 등 遼寧省 海城市에서 납치되어 29일 피살.
	1998. 7.31	民進黨, 대륙측이 林滴娟 피살사건을 타당하게 처리 못한다면 民進黨의 대륙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劉剛奇 海峽兩岸關係協會 부비서장, 林滴娟의 피살에 유감과 위문을 표시하고, 동 사건이 우연하고 단순한 형 사사건으로 양안관계에 악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지적.	1998. 8. 1	
林滴娟 피살사건의 범죄 혐의자 4명 구속.	1998. 8. 6	
	1998. 8.23	林義雄 민진당 주석, 자신의 이념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피력.
중공중앙 대만공작관공실·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책임자, 양안 정치담판이 이미 일정으로 올랐고 대만 당국이 행동으로 통일 誠意를 보여야 한다고 표명.	1998. 8.24	
	1998. 9. 3	海峽交流基金會, 海峽兩岸關係協會에 辜振甫 부부 북경·상해 방문관련 서신 전달.
	1998. 9.11	제53차 유엔총회, 대만의 유엔참가 제안 대회일정 편입 불지지 결정.

중 국	일자	대 만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서신, 辜振甫 10.14~10.19 북경·상해 방문에 동의.	1998. 9.15	
	1998. 9.28	王志剛 경제부장, 중공이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戒急用忍' 정책이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1998. 10.2	唐飛 참모총장, 辜汪會談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7일과 10월 21일 예정의 海陸空 실탄연습 취소 성명.
寧波-마카오-臺北(高雄) 항공선 개통.	1998.10.11	
辜振甫 海峽交流基金會 董事長 인솔 대표단 상해 도착.	1998.10.14	左 同
제2차 汪辜會談 개최. ① 양안 정치·경제대화 진행 ②海峽交流基金會와 海峽兩岸關係協會간 교류강화 ③ 사건처리시 상호협상 ④汪道涵 부부 적당한 시기 대만 방문 등 4가지 의견일치 달성.	1998.10.15	左 同
海峽交流基金會 대표단 북경 도착.	1998.10.16	左 同
錢基琛 중앙정치국 위원, 辜振甫 일행 회견.	1998.10.18	
공안부, 대만동포의 대륙 투자 편리 위해 대만동포의 출입국 수속 간략화 및 居留期限 완화 결정.	1998.10.27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對臺灣 TMD 편입 및 무기 판매 관련 중·미 3개 연합 성명 원칙 등 준수 촉구.	1999. 1.21	



중 국	일자	대 만
	1999. 1.26	외교부, 국제조직 적극 참가 및 WHO 가입을 금년도 우선 목표로 설정.
	1999. 1.27	대만 첫 인공위성,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 성공.
	1999. 2. 1	章孝嚴 국민당 비서장, 미국 방문.
	1999. 2. 7	마케도니아 新聞부장, 대만 방문.
중국-마케도니아 단교.	1999. 2. 9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서신. 李亞飛 부비서장 3월 17일 대만방문하여 양안 대화와 汪道涵 회장의 訪臺 관련 협의.	1999. 3. 2	
	1999. 3.18	海峽交流基金會 부비서장, 李亞飛 海峽兩岸關係協會 부비서장과 대북에서 회견. 汪道涵 금년 가을 대만방문 관련 협의.
	1999. 3.27	民進黨, 1998년 양안정세 보고서 발표회. 양안 정치·외교·군사·사회·경제정세 관련 보고 및 대만의 TMD 가입 주장.
중공중앙 統一戰線工作部·臺灣事務辦公室, 對臺灣工作情勢政策報告會. 평화통일, 一國兩制 및 江八條 견지, 대만분열·독립세력 활동 억제, 三通·양안 대화 적극 추진.	1999. 3.29	
	1999. 4.12	미 상원, 대만 관련 2개 의안 통과. 대대만 무기판매, 대만의 WTO/WHO 가입에 대한 지지 재천명.

중 국	일자	대 만
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미국 국방부의 국회 제출 「아태 지역 TMD 구축방안」 중 대만의 TMD 가입문제 관련하여 반대입장 표명.	1999. 5. 6	
	1999. 5.27	蕭萬長 행정원장, 파테말라·엘살바도르 등 방문하여 '경제외교' 실시.
중공중앙 臺灣工作辦公室·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李登輝의 '兩國論' 발표 관련 비난	1999. 7.11	
	1999. 8. 1	대륙위원회, 「特殊 國與國關係論에 대한 서면 설명」 발표.
錢其琛 국무원 부총리, 中南海에서 대만 統一聯盟 방문단 접견.	1999. 8.16	
중공중앙 臺灣工作辦公室 책임자 담화 발표. 李登輝 特殊兩國論의 국민당 문건 기재에 대해 비평.	1999. 8.31	
江澤民 주석, 대만 지진에 위문표시 및 지원제공 의사 표명. 중국적십자사 총회, 대만 적십자사에 서신. 10만달러의 구원자금과 50만원 인민폐의 구원물자 제공 표시.	1999. 9.21	대만 일백년 이래 최대 규모 지진 발생.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에 지진 구원 관련 서신.	1999. 9.23	海峽交流基金會, 구원자금은 수용하고 물자와 구원인원 제의는 거절.
朱鎔基 총리, 평화통일·一國兩制 방침 재천명. 대만지진에 관심과 위문표시 및 최대한 지원의사 표시.	1999. 9.30	

중 국	일자	대 만
	1999. 10.7	행정원, 대륙지역주민의 대만거주 數額表 초안 통과. 대륙 배우자의 대만 거주 쿼터 증가.
	1999.10.14	辜振甫 海峽交流基金會 董事長, 汪道涵 海峽兩岸關係協會 회장의 대만방문 환영 표시.
張金成 海峽兩岸關係協會 부회장 겸 비서장, 대만당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 준수해야 兩會의 대화·교류 가능하다고 재천명.	1999.10.15	
	1999. 11.3	미국 상원, 「대만의 WHO 가입 지지 법안」 통과.
	1999.11.18.	입법원, 「대륙지역 주민의 대만거주 數額表」 통과. 대륙 배우자의 대만거주 쿼터 3600명/年으로 증가.
	1999. 12.2.	辜振甫 海峽交流基金會 董事長 연임
朱鎔基 총리,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 실시세칙」 반포·시행.	1999. 12.5.	
	1999.12.27	대륙위원회, 「중국공산당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실시세칙에 대한 입장 설명」 발표.
	2000. 1. 5	宋楚瑜, 「跨世紀 국가정책綱領: 대륙정책」 발표. 양안간 30년 상호불가침 평화협약의 체결 제의.
	2000. 1.20	행정원, 대만거주 신청 대륙 배우자의 대만 근무를 허가.

중 국	일자	대 만
	2000. 1.30	連戰, “臺灣海峽平和區” 설립 제의.
	2000. 2. 1	미국 하원, 「대만안전강 화법」 통과.
외교부 부부장·전인대 의사 위원회·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미국 하원의 「대만 안전강화법」 통과 비난.	2000. 2. 2	
李肇星 주미대사, 미국 하원의 「대만안전강화법」 통과에 대해 분노와 반대 표시.	2000. 2. 3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 문제」 백서 발표.	2000. 2.21	
	2000. 2.22	대륙위원회, 「하나의 중 국원칙과 대만문제」 백서에 관한 성명 발표. 하나의 중 국, 각자 表述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
	2000. 3. 3	행정원, 「대만지역과 대 륙지역 보험업무 왕래 허가 방법」 비준.
	2000. 3. 8	미국 국방부, 대만에 162 개 미사일과 레이더 설비를 판매.
	2000. 6.14	蔡英文, 남북한 정상회담 모델이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
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대 만문제와 남북한문제는 발 생원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 문에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 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2000. 6.27	
	2000. 8.25	親民黨, 「양안관계 기본 정책과 견해」 발표.

중 국	일자	대 만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 설립. 명예주임 汪道涵, 주임 唐樹備.	2000. 9. 6	
국무원 新聞辦公室, 「중국 국방백서」 발표.	2000.10.17	
江澤民 주석, 「아름다운 신세기를 공동으로 만들자」 제하 2001년 신년사를 발표.	2000.12.31	



## 中國의 對臺灣 政策 史料集

---

인 쇄 2005년 10월 10일

발 행 2005년 10월 11일

발행처 통일부 정보분석국 사회문화담당관실

전화 02-720-2142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

<비매품>

